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446-01



농림축산식품부

NH농협손해보험 LIG 손해보험

목 차

I. 가축재해보험 제도	1
1. 『가축재해보험』이란?	3
2. 도입 배경	4
3. 그간 추진경과	4
4. 가축재해보험 운영개요	8
5. 정책보험 운영사례	17
6. 타 보험제도와 비교	19
II. 가축재해보험 추진계획 및 사업시행지침	21
1. 가축재해보험 추진계획	23
(1) 농업재해보험 개요	23
(2) '13년 사업결과 및 '14년 추진계획	25
2.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46
(1) 사업개요	46
(2)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47
(3)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51
III. 가축재해보험 상품 소개	59
1. 상품 개요	62
2. 보험상품별 주요내용	67
3. 보험상품별 인수기준 및 계약	73
4. 가축재해보험 약관 구성 및 주요내용	96
(1) 약관구성	96
(2) 보통약관	97
(3) 특별약관	105

IV. 손해평가 및 보상	111
1. 손해평가 개요	114
2. 보험사고 손해평가 및 지급심사 절차	117
3. 보험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	119
4.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122
5. 보험금 지급·심사	123
6. 보험사기 방지	126
7. 구상권 행사	128
V. 족사 특약	137
1. 보험목적 및 개요	140
2. 손해평가 방법	142
3. 지급보험금 계산	144
VI. 질의 답변 및 용어해설	147
1. 가축재해보험 질의 답변	149
2. 보험용어 해설	154
▣ 부 록	163
〈부록1〉 농어업재해보험법령/167	
〈부록2〉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184	
〈부록3〉 농업재해보험 보험목적물별 보상 병충해 및 질병규정/187	
〈부록4〉 가축전염병예방방법령/189	
〈부록5〉 소 및 쇠고기 이력에 관한 법령/199	
〈부록6〉 가축재해보험 약관/211	
〈부록7〉 가축 이력제 및 도축장 운영 체계도/285	
〈부록8〉 2013년 시·도별 가축사육 현황/288	

I

가축재해보험 제도

I. 가축재해보험 제도

< 요약 >

- ◆ 「가축재해보험」이란
 - ▶ 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 해소, 소득 및 경영안정(정책보험)
- ◆ 연 혁
 - ▶ 1956년 농업은행, 축협 채권보전 일환으로 가축매매 수수료를 재원으로 '농경우 공제사업' 시작, 정부보조(50%)
 - ▶ 1997~1999년 '소' 가축공제 시범사업(축협중앙회)
 - ▶ 2007년 가축공제 경쟁체제 도입, 농협중앙회 및 LIG컨소시엄
 -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정('10.3.2), 보험업법 적용('12.3.2)
- ◆ 운영개요
 - ▶ 1997년, 국고보조 50%, 가축(16종) 및 축산시설물(부대시설 포함)
 - ▶ 자연재해(풍수해), 질병 또는 화재, 시가의 80%~100% 보장
 - ▶ 농림축산식품부(총괄), 보험사업자(운영), 금융감독위원회(감독), 금융감독원(분쟁해결), 농업재해보험심의위원회(심의)
 - ▶ 보험기간(1년), 월단위 가입가능(단기요율)

1 「가축재해보험」이란?

가. 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축산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을 뒷받침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고 농협손해보험(주), LIG컨소시엄 등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나.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축산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 하기 위해 도입된 재해보험

- ▶ 보험계약자¹⁾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²⁾의 일부를 국가 에서 보조

1) 보험계약자 : 보험사업자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지급)하는 사람
 피보험자 : 보험 사고 발생의 개체가 되는 사람,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피보험 이익의 주체, 즉,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

2

도입 배경

- 가. 가축재해보험은 축산업의 규모화·안정화 추세가 점점 확대되어 가면서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과 소득에 대한 불안 요소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 나. 또한, 대규모 자연재해,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규모에 비해 정부 지원은 미미한 수준임.
- 다. 우리나라의 가축재해보험 시작은 가축공제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으며, 1956년부터 농업은행에서 가축공제사업을 수행하면서 부터 시작됨

3

그간 추진경과

가. 가축공제

(1) '가축공제' 시작 (도입기)

(가) 1956년, 농업은행 '가축공제' 사업 수행

- 축협, 채권보전액 일환으로 실시한 '농경우 공제사업', 가축 매매 수수료 재원, 정부 50% 보조

(나) 1961년, 농업은행 → 농협으로 승계

- 임의가입 허용(1963), 젓소 공제(1964)
- 일반가축공제(가축매매수수료), 특수가축공제(가축폐사)

(다) 1981년, 일반가축공제(축협중앙회), 특수가축공제(농협)

2) 보 험 료 :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

보 험 금 :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2) '가축공제(보험) 활성화 (성장기)

(가) 1997년~1999년, '소' 가축공제 시범사업(축협중앙회)

- 축산농가 부담 공제료의 50% 정부 보조지원

(나) 가축공제(보험) 축종 확대

- 2000년 '말·돼지'(2종), 2002년 '닭'(1종)
- 2004년 '오리'(1종), 2005년 '꿩·메추리'(2종)
- 2006년 '칠면조·사슴'(2종), 2007년 '거위·타조'(2종)
- 2008년 '염소(양)'(1종), 2010년 '양봉·토끼'(2종)
- 2010년 '양봉·토끼'(2종), 2011년 '관상조'(1종)
- 2012년 '오소리'(1종)

(다) 2007년, 가축공제(보험) 경쟁체제 도입

-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가축공제의 활성화를 위한 민영보험사 참여 허가('10.)
- 사업시행주체 : 농협중앙회, LIG컨소시엄(LIG·삼성·동부·현대)

나. 가축재해보험

(1) 농어업재해보험법 제정·시행('10. 3. 2)

- ▶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前, 농어업재해보험은 보험업법 등 미적용

(2) '농협경제'와 '농협금융' 분리·시행('12.3.2)으로 실질적인 '가축재해보험' 시행 → '보험업법' 적용

(가) 농협협동조합법 개정('11.3.31)으로 1중앙회-2지주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나) 농협손해보험('12년), LIG컨소시엄('10년) 참여로 가축재해보험은 민영보험사 간 경쟁체제로 전환

(3) 가축재해보험(공제) 현황

구 분	'01	'03	'05	'07	'09	'10	'11	'12	'13	
대상가축	3 (소,말, 돼지)	4 (소, 말, 돼지, 닭)	7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11 (소,말,돼지, 닭,오리,꿩, 메추리,칠면 조,시습거위, 타조)	13 (소, 말,돼지, 닭,오리,꿩, 메추리,칠면 조,시습거위, 타조, 양 별 토끼)	14 (소, 말,돼지, 닭,오리,꿩, 메추리,칠면 조,시습거위, 타조, 양 별 토끼)	15 (소, 말,돼지, 닭,오리,꿩, 메추리,칠면 조,시습거위, 타조,양별, 토끼,관상조, 오소리)	16 (소, 말,돼지, 닭,오리,꿩, 메추리,칠면 조,시습거위, 타조,양별, 토끼,관상조, 오소리)	16 (소, 말,돼지, 닭,오리,꿩, 메추리,칠면 조,시습거위, 타조,양별, 토끼,관상조, 오소리)	
가입두수	2,317	21,375	45,845	57,535	63,393	80,479	95,950	128,806	163,325	
수입보험료 (국고보조금)	9,096 (4,717)	23,264 (11,516)	31,044 (15,020)	47,258 (22,892)	60,000 (29,723)	65,486 (31,675)	79,542 (39,417)	97,883 (52,296)	121,517 (48,126)	
지 급 보험금	건수	3,421	12,807	9,101	15,096	20,007	17,165	13,121	16,480	15,401
	보험금	4,163	20,957	18,460	36,293	44,333	48,116	48,082	69,309	65,743

* 가금 : ('03)닭, ('04)오리, ('05)꿩, 메추리, ('06)칠면조, ('07)거위, 타조 ('11)관상조, ('12)오소리

< 재해보험 특징 >

- ◆ **(의의)** 재해피해 농가에 보험원리를 이용한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조속한 재생산 활동 복귀를 통해 농가의 경영과 소득안정에 기여
- ◆ **(특징)** 정책보험, 수혜자 부담, 물적 손해보험, 단기·소멸성 보험 자기부담금 운영, 안정적 물가유지, 재해지원의 부족부분 보완기능 등

정책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및 보험사의 수요와 공급에 의존해서는 보험시장 형성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재정을 지원하여 정책보험으로 운영 * (국가)재보험 운영, (보험사업자) 운영비와 영업이익 지원 (농어가 보험료 지원)
수혜자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원리를 적용하여 농가도 수혜정도에 따라 일정한 보험료를 부담 (농작물의 경우 '12년 기준 24% 수준 부담)
물적손해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 가축 등 재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자기 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에게 일정분의 부담을 지움으로써 고의적 보험사고를 예방하고 손실발생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 운영 * 농작물 자기부담금(15%, 20%, 30%형), 가축 등 (소손해면책금 운영)
단기·소멸성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기간이 1년이내로 단기이며 보험사고 미발생 시에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는 소멸성 상품
안정적 물가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로 인한 농가의 파산을 막고 재생산활동에 조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 공급자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
재해지원 부족부분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평년수확량 70~80% 수준까지 실손 보상함으로써 사회 구호차원의 농업 재해지원제도와 차이

4 가축재해보험 운영개요

가. 사업 개요

(1) 도입연도 : 1997년

(2) 사업예산(국비) : 528억원(2014년)

지방예산(지방비) : 순보험료의 정부 지원액의 25~30% 부담

※ 2013년도 지자체 보조금 지원현황 (8개 시·도)

(단 위 : 백만원, %)

구분	시·도		시·군·구		전체	
	지원금	비율	지원금	비율	지원금	비율
계	2,593	8.00	5,363.7	17.00	7,956.7	25.00
강원	225	7.5%	525	17.5%	750	25%
경기	350	9.0%	816.7	21.0%	1,166.7	30%
경남	358	10.0%	537	15.0%	895	25%
경북	340	7.5%	780	17.5%	1,120	25%
전남	210	10.0%	315	15.0%	525	25%
전북	750	10.0%	1,250	15.0%	2,000	25%
충남	300	5.0%	900	15.0%	1,200	20%
충북	60	5.0%	240	20.0%	300	25%

(3) 지원금액 : 가축재해보험료의 50%(정부지원), 50%(자부담)

※ 지원 제한사항

- ▶ 축산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정부의 보험료 지원 제외
- ▶ 축사특약은 적법한 건물(시설포함)에 한하여 정부 지원
- ▶ 계열화 업체가 가입자인 경우와 계열화 업체가 소속농가를 대리하여 소속농가의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는 정부지원에서 제외
- ▶ 외국산 경주마는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정부지원 보험료 : 순보험료(위험보험료+손해평가수수료) 50%,
 부가보험료(운영비) 50% 국비 지원

(4) 보험 목적물 : 가축 및 축산시설물(부대시설 포함)

(가) 가축 - 16종 * 전 가축(축산법) 31종의 50%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벌, 토끼, 관상조, 오소리

(나) 축산시설물 :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5) 보험가입 대상 및 형태

구 분	소			돼 지	말	가 금	기타가축	축 사
	I(송아지)	II(큰소)	종모우					
가입대상	생후 2~12개월 미만	한(육)우 12개월~13세미만(젖소는 8세미만)	종모우	제한없음	종빈마, 종모마, 경주마, 육성마, 일반마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토끼, 벌, 오소리	가축사육 건물 및 부속건물
가입형태	대상연령 포괄가입	포괄	개별	포괄	개별	포괄	포괄	포괄

(6) 보상(대상) 재해 : 자연재해(풍수해), 질병 또는 화재

(7) 보장내용 : 축종별 보장내용(시가의 80% ~ 100%까지 지급)

나. 사업 운영

(1) 사업총괄 : 농림축산식품부

(2) 사업운영 :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에게 위탁 운영

※ NH농협손해보험, LIG손해보험 컨소시엄(현대, 삼성, 동부)

(3) 사업감독 : 금융감독위원회

(4) 분쟁해결 : 금융감독원

(5) 심의기구 : 농업재해보험심의위원회

(6) 운영체계

-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재해보험 사업을 관장하면서 국고에서 보험료 (위험 및 부가보험료) 지원
- ▶ (민간 보험사) 보험판매와 손해평가업무 등은 주도적으로 실시

※ 보험대상 및 가입현황

구분	'01	'03	'05	'07	'09	'10	'11	'12
대상	3 (소,말,돼지)	4 (닭)	7 (오리,꿩,메추리)	11 (칠면조,사슴,거위,타조)	13 (양,벌)	14 (토끼)	15 (관상조)	16 (오소리)
두수	2,317	21,375	45,845	57,535	63,393	80,479	95,950	128,805

다. 보험 가입

- (1) 가입대상 및 자격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
- (2) 보험기간 : 1년(원칙), 월단위 가입 가능(단기요율 적용)
- (3) 보험료 납입 : 일시납
- (4) 보험요율 적용 및 할인·할증
 - (가) 보험요율 : 축종별·지역별 요율
 - (나) 할인·할증 : 할인 최대 5%, 할증 최대 50%

※ 계속계약 시 총 보험료의 5% 할인, (소)보험의 경우에 손해율에 따라 할인 10%, 할증 최대 50% 까지 적용

라. 보험료 보조 및 보험가입금액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험료의 일부 지원
- (2) 보험료 구성 * () LIG손보

구분	위험보험료(A) ³⁾	부가보험료(B) ⁴⁾	영업보험료(C=A+B) ⁵⁾
가축	82%(85%)	18%(15%)	100%
축사	82%(85%)	18%(15%)	100%

3) 위험보험료 : 향후 보험금 및 장래 손해 조사비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4) 부가보험료 : 보험사업자의 사업운영비와 사업수수료 개념의 보험료
 5) 영업보험료 : 총보험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의 합

마. 가축재해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

(1) 지급 보험금 산정

(가) 보험대상 품목별 가입유형에 따라 가입금액 범위내 자부담을 제외하고 피해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

보장유형 보험종류	재해피해 손해액 대비 보장 수준
가 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말·사슴·양(80%, * 단 말 경주마는 70%), • 돼지 및 닭·오리 등 가금류 등(95%) <p>* 폭염 특약상품은 자부담 정액을 적용(건당 적용, 돼지 및 가금류 100만원)</p>

(2) 보험금 지급절차

(가)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농가 → 지역·품목농협·축협) → 손해평가 및 지급보험금 결정 (통상 2주) → 보험금 지급 (지급 보험금 결정후 7일 이내)

(나) 재해피해 농가는 보험금 선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보험금 선지급 제도> 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 공통 적용
 * 보험금 결정전이라도 가입농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추정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

바. 보험모집

- (1)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로 보험사업자의 임직원(보험 설계사·대리점·중개사 포함) 뿐만 아니라 농·축협이 있을 경우 그 임직원 등도 가능 (법인 및 GA대리점 소속 유자격자)
- (2)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준수

사. 손해평가

(1) 관련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손해평가)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등)

(가) 손해평가인 위촉 근거 및 손해평가인 자격기준 설정 등

(2) 손해평가인 운영사유

(가) 농업재해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규모로 일시에 발생하여 손해평가 인력이 일시에 많은 인력이 필요

(나) 일반 손해법인(손해평가 참여기준 : 50여개 법인 2,000명 이내 수준 예상)의 손해평가사 인력으로는 동원에 한계

- 대부분의 손사법인은 자동차, 화재,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 등에 치중, 또한 농어업재해부분은 손해평가 환경이 열악하고 업무가 일시적이어서 참여를 기피

(다) 농어업 재해피해에 대한 손해평가는 특수 분야로 목적물에 대한 전문성 요구

(라) 일반 손해평가사는 대부분 농업 외 전공자가 다수

- 일반 손해평가사 최소 66만원/1일당, 손해평가인 선임기준 3만원/1건당 (손해평가인 선임기준 12만원/1일당)

(3) 손해평가인 가용인력 현황

(가) 가축재해보험 : 약 244명(농협손보 위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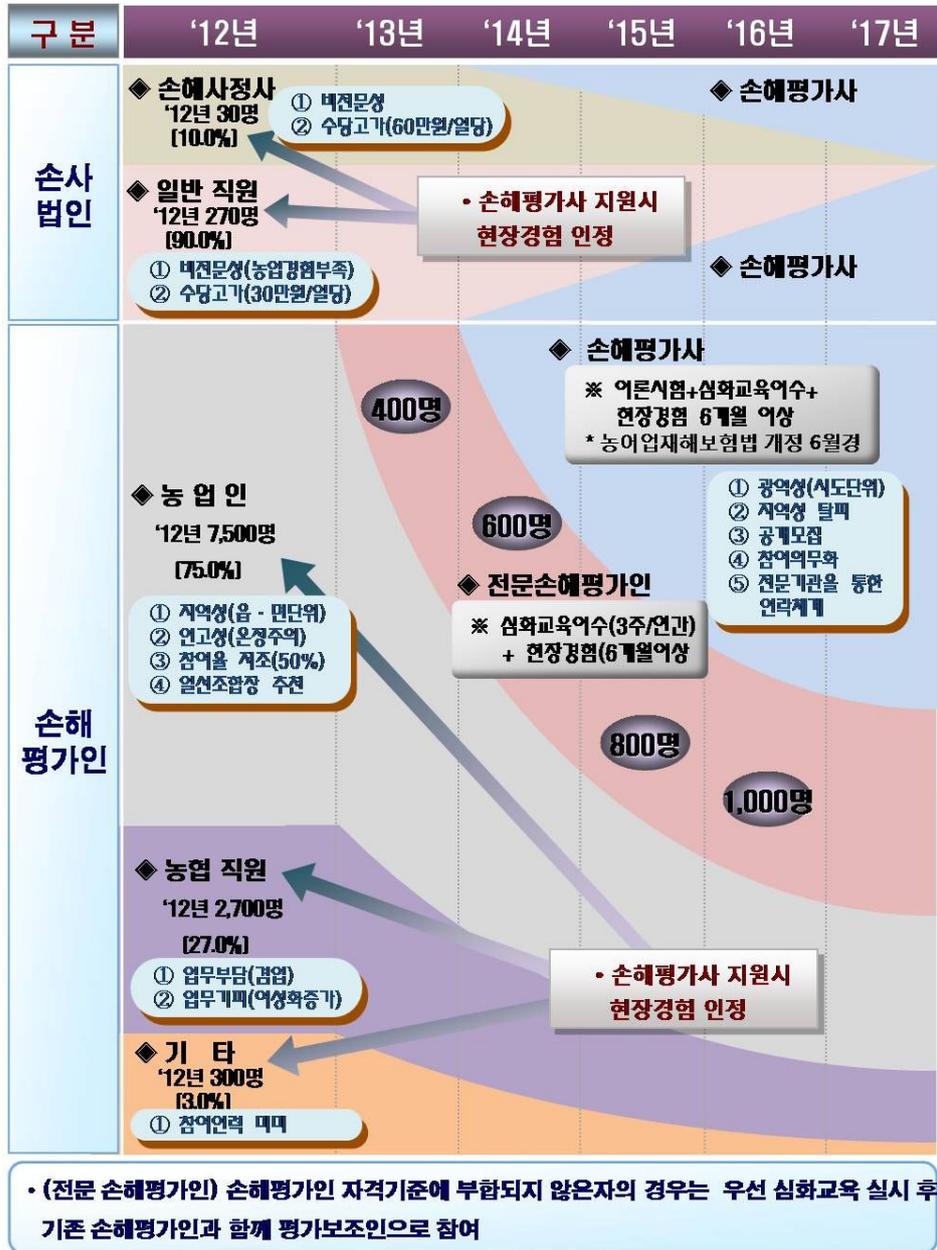
(나) 농협손해보험(2명), 손사법인(27개 회사 120팀, 120명, 1인 1팀, 시·군단위별 구분), 농업인 및 지역농협 직* (122명)

<농업인 및 지역농협 직원 현황>

시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손해평가인수(명)	122	46	2	11	17	20	16	3	5		부산1 서울1

- * 소(牛)에 대해서만 손해평가인 운영, 나머지는 손사법인 활용
- 손해평가인 수당 : 건당 3만원(5-10건/1일당), 이동거리가 시·군간 이어서 넓음
- 손사법인 : 손해 100만원 이하(40만원 미만) → 기본 33만원+일비 3만원(주말 5만원)+교통비(실비) 손해 100만원 이상(80만원 수준) → 기본 66만원+일비 3만원(주말 5만원)+교통비(실비)

(다) 손해평가인 중장기 운영체계



아. 농업재해보험심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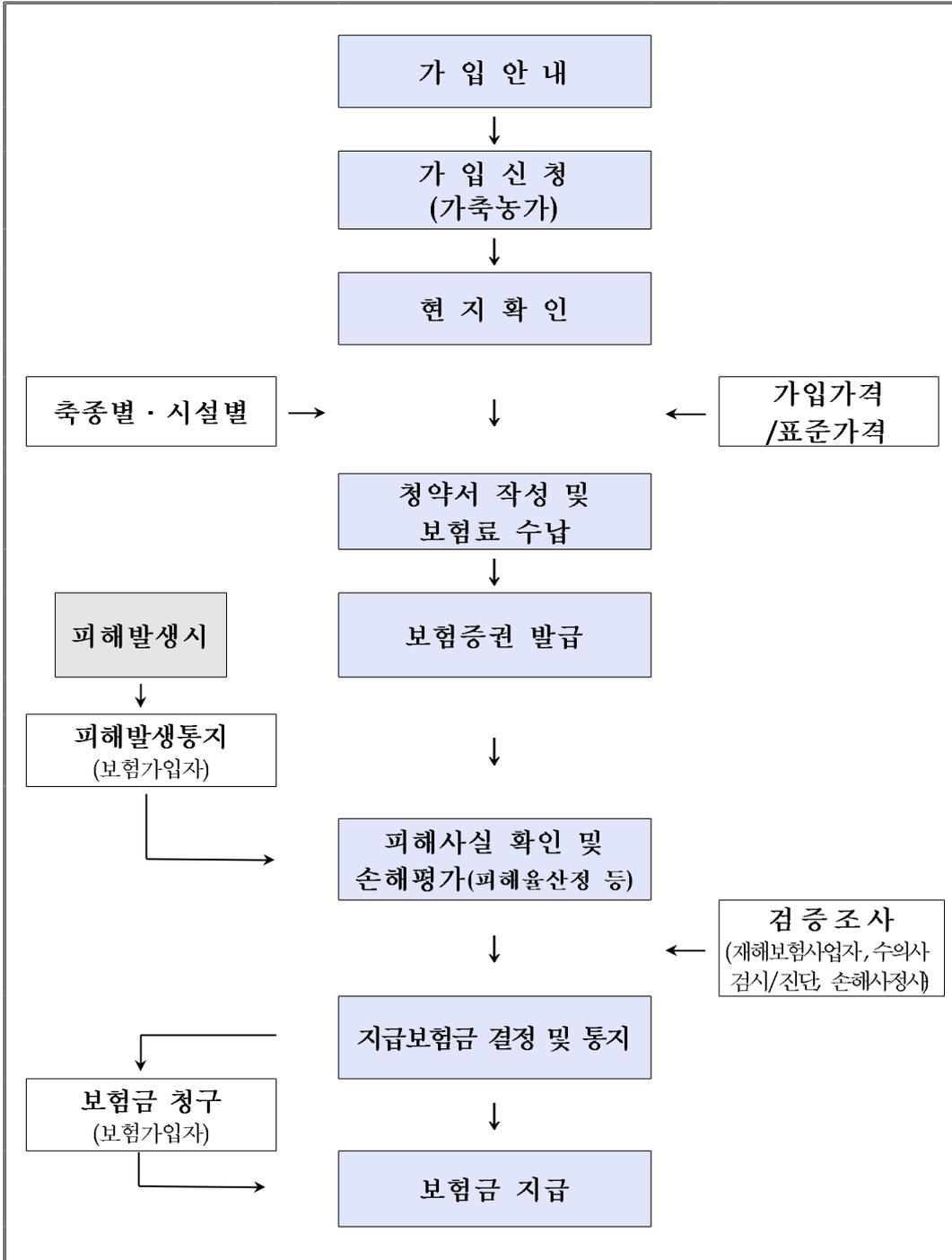
(1)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위원회 설치

◆ 농업재해보험심의위원회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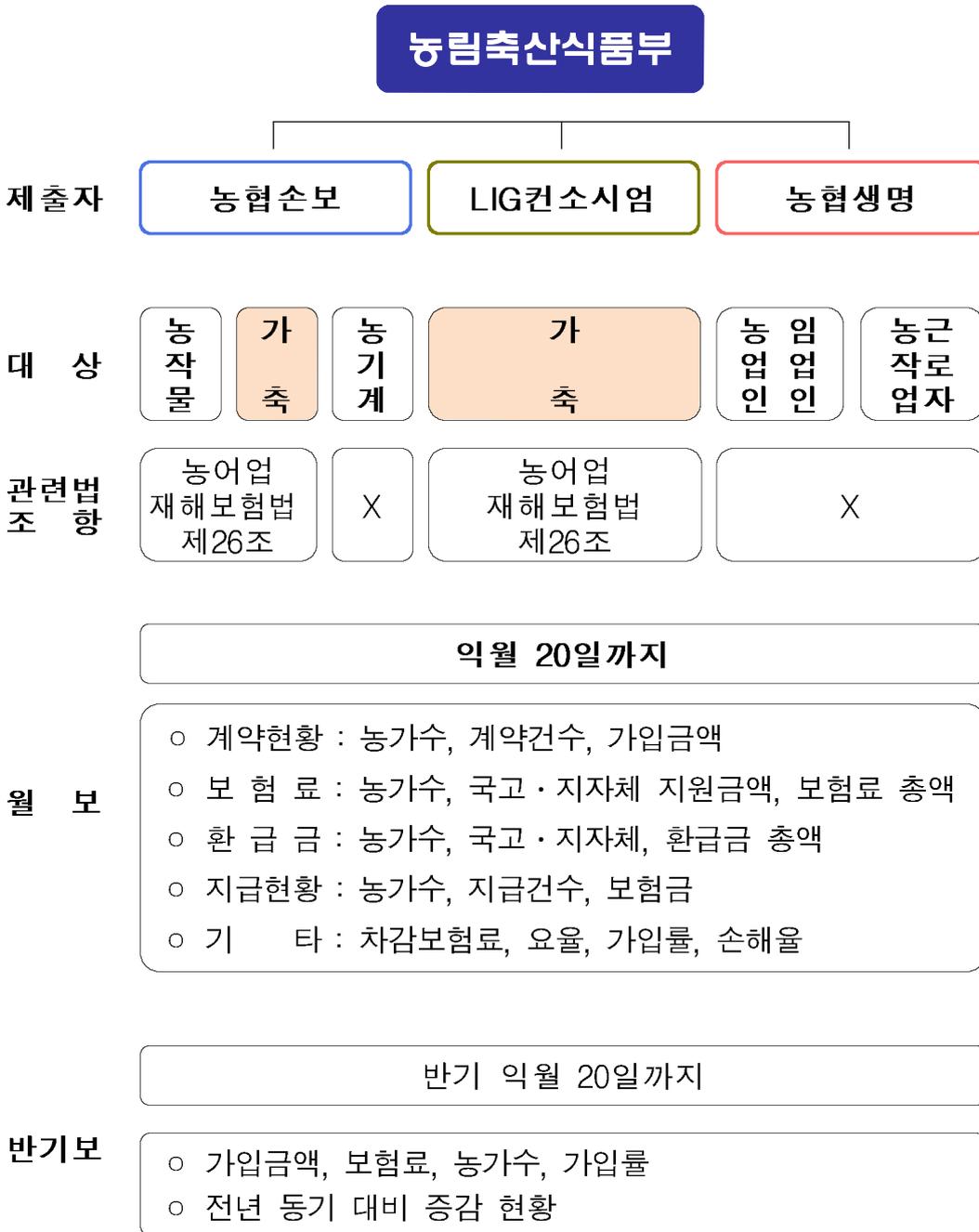
- 설립 목적 및 성격 : 농업재해 정책보험 사업의 재해보험사업 재정 지원 등에 관한 검토와 사업 확대관련 보험목적물·재해 등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
- 구 성 : 관계부처 공무원 및 외부 민간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사업 운영관련 제반사항을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업 운영도모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심의사항
 - 재해보험 목적물 및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 재해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및 손해평가에 관한 사항
 - 재보험사업의 정부책임 범위, 자금의 수입·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
- ※ 재적위원 과반수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의 구성

- 위 원 장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위 원 : 21인 이내(위원장 포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이나 농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보험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자연재해 또는 보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소방방재청·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자. 가축재해보험 추진절차



차. 농업정책보험 통계자료 보고체계



5

정책보험 운영사례

가. 국내사례

구 분	농작물재해보험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재해보험 (농림축산식품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농림축산식품부)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농림축산식품부)	어선재해보상보험 (농림축산식품부)	풍수해보험 (소방방재청)	
보 험 대상물	사과, 배, 단감, 감귤, 뽕은감, 포도, 복숭아, 밤, 참다래, 자두 등 (30개)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등 타조, 거위, 사슴 (16개)	넙치 ⇒우럭, 양식시설 등으로 확대 예정	연근해어선원	연근해 어선 ※ 선체, 기관, 의장품	주택, 온실(비닐 하우스 포함)	
대상 재해	주계약 (필수 가입)	태풍, 우박 (포도, 복숭아, 밤, 참다래, 자두는 전위험 보장)	질병, 수해, 풍해, 설해, 화재	태풍, 폭풍, 해일, 적조	어업활동 관련 부상, 질병, 사망 등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특 약 (선택 가입)	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상	축사	양식시설	어구, 어획물 보상특약 등	주택침수, 노보장특약, 주택소파손해, 노보장특약, 주택침수보험금, 확장특약, 하천고수부지, 비닐하우스 (강풍, 대설만 담보), 단순비닐과손, 보장특약, 지진재해, 노보장특약	
가입방식	임의가입	임의가입	임의가입	의무가입 (5톤 미만 제외)	• 임의가입	임의가입	
보상수준 유 형	70%, 80% ('08~'10 보험무사고 농가에 한해 85%인설)	•가축 : 시가의 80~95% •축사 : 손해액의 100% ※ 가입금액 한도내	70~90%	○부상, 질병, 장해, 사망, 소지품분실	•기본계약 : 어선평가액의 20~100% •그밖의 특약 : 기본계약 가입금액의 10/100~30/100	시설물 기준단가의 70·80·90% (단, 동산특약, 세입자동산은 90%)	
국고 지원	위험보험료	50%	가축 : 50% 축사 : 50%	50%	총톤수에 따라 20% (10~100톤) ~70% (10톤 미만)	총톤수에 따라 60%(10~20톤) ~70%(10톤 미만)	가입금액에 따라 28~35% (지방비 12~15% 포함)
	부가보험료	100%	가축 : 50% 축사 : 50%	70%	70%	70%	90%
	국고지원율 (총계)	65%	가축 : 50% 축사 : 50%	59%	총톤수에 따라 11~70%	총톤수에 따라 14~70%	가입금액에 따라 55~62%
보험운영 기 관	농협손해 (사업운영)	농협손해, LIG (사업운영)	수협중앙회 (사업운영)	수협중앙회 (위탁관리)	수협중앙회 (위탁관리)	동부·현대·삼성, LIG, NH (사업운영)	

나. 해외 사례

(1) 농업재해예방을 위한 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는 미국, 캐나다, 일본, 스페인 등 54개국에서 재해보험을 실시하고 있음

(2) 농업재해보험 해외사례

구 분	미 국	캐나다	일 본	스페인	한 국
도입년도	1938	1939	1949	1954	2001
법적근거	농작물보험법 Crop Insurance Act	농가소득안정법 Farm Income Protection Act(FIPA)	농업재해보상법	복합농업 보험법 Ley de Seguros Agrarios Combinados	농어업 재해보험법
대상작물	밀·콩·보리 등 (100여종)	밀·사과 포도 등 (30여종)	농작물·가축 등 (40여종)	농작물 (28종)	사과, 배 등 (40종)
대상재해	자연재해	자연재해	자연재해	자연재해	자연재해
담보수준	수확량의 50~80%	수확량의 50~90%	수확량의 70~80%	수확량의 65%	수확량의 70~80%
가입방식	임의가입	임의가입	수도작·잠전(의류 기타(임의))	임의가입	임의가입
가입률 (면적)	전체 72.7%(98) 사과 58% (워싱턴주) 배 44% (워싱턴주)	65~70%	수도 90.3%(99) 과수 28.5%(07)	30%	51.0%(13) * 과수5품목
재정지원	보험료 55~67% 운영비 100%	보험료 50%, 운영비 100% (주정부 50, 연방정부 50)	보험료 50% 운영비 연간 535억엔 고정 지원	보험료 53%	보험료 50% 운영비 100%
보험운영 기관	17개 민영 보험사 (정부는 재보험)	주정부가 운영 (연방정부는 재보험)	공제조합이 운영 (정부가 재보험기관)	61개 보험사가 pool운영 (정부는 재보험)	농협손해보험 운영

6

타 보험제도와 비교

보험종목	주요 보상 내용	비 고
가축재해보험의 축사특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의 재해를 기본담보 하며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 축사의 화재, 풍재, 수재로 인한 손해는 특약으로 가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해 보상됨 축사는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
농 작 물 재해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기간(밭아기~수확기) 동안 과일과 같은 농작물이 태풍, 우박, 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작물에 대한 보험
화재보험 풍수재특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통약관에서는 면책, 특약으로 보상 설해는 보상되지 않음
주택상공종합 보험의 위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풍수설해로 건물이 전손(붕괴, 유실)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를 위로금으로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계약상의 위로금 조항 전손인 경우, 10%한도
동산종합보험 풍수재특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재보험 풍수재특약과 동일한 담보내용으로 보험목적물이 각종 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통약관에서는 면책 설해는 보상되지 않음
전 위 험 담보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종합보험(PAR),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과 같은 전위험담보(All Risk)의 증권에서는 특별히 면책조항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풍수해 위험을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대규모 기업성 물건을 위한 상품 설해, 지진을 포함하여 각종 자연재해를 담보
풍수해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발생한 피보험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비용(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



가축재해보험 추진계획 및
사업시행지침

Ⅱ. 가축재해보험 추진계획 및 사업시행지침

< 요약 >

- ◆ 가축재해보험 추진계획 수립(매년)
 - ▶ 가축재해보험 사업개요
 - ▶ 전년도 사업추진결과
 - : 사업실적, 성과분석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 당해년도 사업추진계획
 - : 상품개선 및 사업관리, 홍보교육 등에 관한 사항
- ◆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시달(매년)
 - ▶ 가축재해보험 사업개요
 - : 성과목표, 재정투입계획 등에 관한 사항
 - ▶ 당해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 : 사업대상,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및 형태, 지원기준 및 범위, 자금의 용도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
 -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 사업신청, 사업자 선정,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자금배정 이행점검, 성과측정, 사업평가 및 환류 등에 관한 사항

1 가축재해보험 추진계획

I 농업재해보험 개요

□ [현황] 재해농가에 실질적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보험제도 도입

- 가축재해보험은 '97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은 '0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대상 품목 및 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 양식수산물재해보험('08도입)은 조직개편에 따라 해양수산부로 이관('13.3)

□ **[지원]** 보험료 및 운영비 지원, 국가재보험제도 도입·운영('05~)

-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50%와 운영비를 지원(농작물 100%, 가축 50%)

< 재해관련 주요 정책보험 현황 >

구 분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풍수해보험법
도입년도	2001	1997	2008	2006
'14년 보험대상	사과, 배, 버 등 43개	소, 돼지, 닭 등 16개	넙치, 전복 등 18개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보상 재해	특정 위험 방식	주계약 태풍(강풍), 우박 등	태풍, 해일, 적조, 강풍 등	풍수해, 실해 등 자연재해
	특 약	동상해, 집중호우	축사·풍해, 수해, 화재, 전기장치위험	-
	종합위험방식	자연재해	-	-
보장수준	가입금액의 60~85% 보장	사가의 80%~100%수준	가입금액의 70~90% 보장	복구비 기준액 대비 50~90%
국고지원	보험료 40~60% 운영비 100%	보험료 50% 운영비 50%	보험료 50% 운영비 100%	보험료 40~90% 운영비 100%
'14년 예산(억원)	2,172	529	145	139
보험사업자	농협손보	농협손보·LIG 컨소시엄	수협	삼성, 현대, 농협손보('13~)
소관부처	농식품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

□ **[성과]** 그동안 재해피해 농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

- 재해보험은 일방적 정부지원 방식에서 농가 스스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재해 대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부상

* 13년('01~'13)간 65만여 농가가 1조4,534억원(실부담 3,833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실부담의 약 4배인 1조 5,267억원(19만여 농가)의 보험금을 수령

II 사업결과 및 추진계획(要約)

가 '13년 사업실적

□ (대상축종) 소·돼지·말·닭·오리·사슴 등 16개 축종

- * 본사업 : 소·돼지·말·닭·오리·사슴·벌·칠면조·거위·타조·양·토끼 등 15개 축종
- * 시범사업 : 오소리 1개 축종

□ (사업결과) 13천농가 1억6,333만두 가입 가입률은 77.3%(전년대비 5.9% 증가)

○ 가입률 : ('12) 71.4% → ('13) 77.3 (5.9% 증)

- * 축종별(%) : 돼지 100.0, 닭 83.8, 오리 55.1, 소 7.6, 말 3.3

○ 가입두수 : ('12) 128,805천두 → ('13) 163,326 (26.8% 증)

○ 가입금액 : ('12) 3.6조원 → ('13) 4.7 (27.5% 증)

○ 보험료(위험) : ('12) 801억원 → ('13) 839 (4.7% 증)

○ 농가수 : ('12) 11천호 → ('13) 13 (18.2% 증)

□ (보험금) 폭염 화재 등으로 5,036농가에 657억원의 보험금 지급

○ 화재(197억원), 질병폐사(182억원), 폭염(62억원)이 67.1% 차지

- * 축종별 보험금 : 소 195, 돼지 291, 가금 126, 말 43, 기타 2

<'13년도 가축 보험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두, %, 백만원)

축종	사육 두수	가입현황				사고현황			손해율 (%)
		가입 두수	가입률	가입 금액	보험료	농가수 (호)	건수 (건)	보험금	
소	3,483	265	7.6	504,388	21,572	3,592	13,360	19,479	90.3
돼지	10,955	10,955	100.0	3,432,048	42,818	414	492	29,082	67.9
가금	194,405	152,104	78.2	629,217	15,338	801	918	12,637	82.4
말	30	1	3.3	78,309	4,064	210	224	4,374	107.6
기타	2,298	1	0.0	2,655	133	19	76	170	127.8
계	211,171	163,326	77.3	4,646,617	83,925	5,036	15,070	65,743	78.3

나 사업성과 및 평가

- (성과) 농업재해보험 개편방안 마련, 현장 수요를 반영한 상품개선으로 가입률 제고 및 재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
 - (대상품목) '12년과 동일하게 16개 축종에 대하여 판매, 관상조 1개 품목을 전국사업으로 전환
 - (상품개선) 농가수요를 반영한 특약신설, 자기부담금 하향 등
 - 축사화재시 인접농가 피해도 보상하는 실화대물배상 특약 및 가축(돼지, 가금류) 폐사시 잔존물 처리비용 지원 특약 신설
 - 돼지보험 자기부담금 하향조정 : (기) 300,400,500만원 → (개선) 100,200,300
 - 하립 등 업체가 계열농가에 대한 대리 보험가입 제한
 - * (개선) 계열농가가 직접 가입하고 보험금도 해당 농가가 직접 수령
 - (가입률) 농가 인식개선으로 보험가입률(77.3%), 가입두수(163,326천두), 보험료(839억원) 등 관련 지표가 큰 폭의 성장세 유지
 - * 가입율 : ('09) 48.1% → ('10) 53.1 → ('11) 54.5 → ('12) 71.4 → ('13) 77.3
 - (사업관리) 소 가축재해보험금 부당수령 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보험사업자 및 대리점 등 실태점검(2회)
 - * 1차('13년 7월), 2차('13년 11월), 소 가축재해보험 특별 실태점검('13.12월)
- (평가) 제도개편 추진에 긍정적 평가, 반면 소 가축재해보험금 부당수령 등 부정적 측면 해소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다 '14년 추진계획

◇ 추진목표 : 가입률 ('13) 77.3% → ('14) 80.0%

□ (상품개선) 현장수요를 반영한 지속적인 상품개선 추진

○ 농가수요를 반영하여 돼지 보험 가입시 포유·이유돈을 구분

* (현행) 자돈(가입액 15만원/보험료 800원) ⇒ (개선) 포유돈(젓먹이 돼지, 10만원/500원), 이유돈(젓을 떼 돼지, 15만원/800원) 구분 가입

○ 각종 재해 등으로 폐사된 가축 사체의 도축, 운송비 등 잔존물 처리비용을 주계약에서 추가담보

○ 젓소의 유량감소로 긴급도축을 하여야하는 경우도 보장

* 젓소 유량감소는 유방염, 불임 및 각종 대사성질병으로 인하여 젓소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보상

○ 낙뢰 등 전기적 장치 사고에 따른 보장범위(특약)를 옥내전기시설에서 옥외시설까지 확대를 검토('14년 연구 후 '15년 반영 검토)

□ (보험요율) 사업자별 보험요율 표준화, 보험료 분납제 등 검토

○ 원사업자간(농협손보IC) 공통요율 적용으로 농가부담 경감(요율↓, 보장범위↑)

○ 보험료 분할납부제도 도입을 연구·검토하여 '15년부터 반영 추진

□ (사업관리) '보험사고' 대비 상호협력 및 대응체계 구축

○ 보험사기 「위기관리 신호시스템」 도입·시행(보험사별)

- 「위기관리 점검회의」 개최 : 분기(정기), 경계·심각(필요시)
 - 농가(3회), 법인(5회) 보험금 청구(평균손해율 초과), 조사사고관리 등 논의
- 손해율이 높은 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연중)

□ (지급심사) 전문성 확보 및 보험사고 시 제재 강화

- 손해평가 시 이해관계인 참여 배제, 사고 소(牛) 수의사 진단검안서 작성 시 공수의사(사군배치) 또는 타 지역 수의사 활용
- 보험금 청구서류 및 보험금 지급 전 도축(도축검사증명서, 기립불능확인서) 및 생산이력(등급판정확인서), 현장사진 첨부 등 지급심사 강화
- 보험사고 관련자 등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농가), 대리점 계약취소 또는 수수료 감액 환수 조치(지역조합) 등 제재 강화
 - 보험사기 재발방지를 위한 면허 정지처분 및 관리강화(수의사)
 - * 근거: 수의사법 제32조 제2항, 수의사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 강화(대한수의사회 협조)

□ (교육·홍보) 가입률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홍보

- 가축재해보험 제도개선관련 교육 및 설명회(2~3월)
- 가축재해보험 실무 매뉴얼 제작·보급으로 업무 내실화
- 농업재해보험 홍보강화를 위한 로고 및 캐릭터 개발활용
- 가축재해보험 정책홍보 및 언론대응 강화, 기고 등 실시

III '13년 사업결과 및 '14년 추진계획(안)

1. 가축재해보험 개요

- (그간성과) 가축재해보험은 '97 도입 이후 보험축종 및 보험금 지급 확대 등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
 - 축산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운영비의 일부 지원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 * '13예산 422억, 지원률은 영업보험료(보험료+운영비)의 50%
- (가축공제) '88년 농협중앙회(당시 축협)가 자체적으로 공제사업을 실시한 것이 효시가 되어 '97년부터 정부가 공제료 지원
 - '10년 농작물·양식과 가축을 통합하여 농어업재해보험법 적용을 받았으며, '12년 3월 농협사업구조개편 이후 보험업법 적용
- (가축재해보험) '10년 농작물·양식과 가축을 통합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적용, '12년 3월 농협사업구조개편 이후 보험업법 적용
 - (대상품목)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벌, 토끼, 관상조, 오소리 등 16종
 - (대상재해)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에 대해 축종별 보상
- (사업 관리 체계) 농협손해보험(주), LIG컨소시엄(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참여하는 등 경쟁체제 도입 운영
 - 농림식품부의 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보험사업자(손보사)가 대리점 등 자체사업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 보험사고 시 보험금 지급절차는 사고 신고접수 이후 현장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 지급액을 정하고 지급

2. '13년 사업결과

□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에 의한 경영손실을 보상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97년부터 가축보험사업 실시

- '97~'99년 3개년 동안 “소”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02년부터 대상 축종을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실시
- '07년부터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가축보험 활성화를 위해 민영보험사의 사업 참여

* 사업시행주체 : NH농협손해보험(주), LIG 컨소시엄(LIG·삼성·동부·현대)

□ 가축재해보험의 대상축종 도입 및 예산지원 확대

- 대상축종에 “오소리” 1개 전국사업 ('10:14 → '11:15 → '12: 16)
- 가축재해보험 활성화 및 축산농가 부담경감을 위하여 납입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보조지원(운영비 포함)

* 연도별 예산 : ('10) 294억 → ('11) 351억 → ('12) 437억 → ('13) 422억 → ('14) 528억

□ 축산농가 경영안정 강화를 위한 보장범위 확대 및 개선

- 축사 화재 피해보상을 위한 “실물(화재) 대물배상 특약”
- 돼지 『전기위험담보특약』 및 『폭염특약』 자기부담 하향 조정
- 젓소 가입 시 개체별 사진 촬영 삭제를 통해 절차 간소화
- 소(한우) 폐사 시 보험금 산출 및 지급방식 개선

* kg당 금액 : 350kg 전국산지평균가격 → 350kg 및 600kg 중 높은단가 적용

□ (사업결과) 13천농가 1억6,333만두 가입, 가입률은 77.3%(전년대비 5.9% 증가)

○ 가입률 : ('12) 71.4% → ('13) 77.3 (5.9% 증)

* 축종별(%) : 돼지 100.0, 닭 83.8, 오리 55.1, 소 7.6, 말 3.3

○ 가입두수 : ('12) 128,805천두 → ('13) 163,326 (26.8% 증)

○ 가입금액 : ('12) 3조 6,429억원 → ('13) 4조 6,466 (27.5% 증)

○ 보험료(위협) : ('12) 801억원 → ('13) 839 (4.7% 증)

○ 농가수 : ('12) 11천호 → ('13) 13 (18.2% 증)

□ (보험금) 폭염 화재 등으로 5,036농가에 657억원의 보험금 지급

○ 화재(197억원), 질병폐사(182억원), 폭염(62억원)이 67.1% 차지

* 축종별 보험금 : 소 195, 돼지 291, 가금 126, 말 43, 기타 2

<'13년도 가축 보험사업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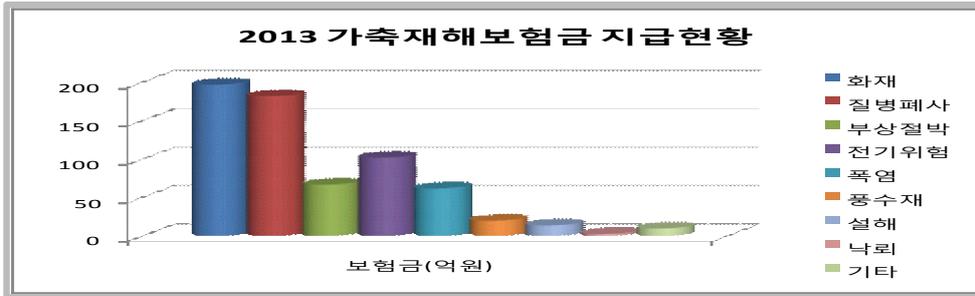
(단위 : 천두, %, 백만원)

축종	사육 두수	가입현황				사고현황			손해율 (%)
		가입 두수	가입률	가입 금액	보험료	농가수 (호)	건수 (건)	보험금	
소	3,483	265	7.6	504,388	21,572	3,592	13,360	19,479	90.3
돼지	10,955	10,955	100.0	3,432,048	42,818	414	492	29,082	67.9
가금	194,405	152,104	78.2	629,217	15,338	801	918	12,637	82.4
말	30	1	3.3	78,309	4,064	210	224	4,374	107.6
기타	2,298	1	0.0	2,655	133	19	76	170	127.8
계	211,171	163,326	77.3	4,646,617	83,925	5,036	15,070	65,743	78.3

3. 평가 및 개선과제

□ (축산업 안정) 자연재해·화재·가축질병 등으로 15천여건에 657억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축산농가 재생산기반 조성기여

- 화재(197), 질병폐사(182), 폭염(62), 전기위험(102), 부상(67), 풍수재(20), 설해(14), 낙뢰(3), 기타(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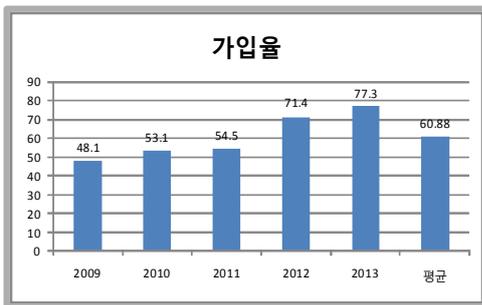
□ (보험 가입률) 전체 가입률은 우수하나, 소·기타 가축 등 축종간 가입률 편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보험가입률(77.3%), 가입두수(163,326천두), 위험보험료(839억원) 등 모든 지표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 추세
- 반면, 소(牛) 등 일부 축종은 여전히 보험가입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 요구

* 축종별 가입률 : 소 7.6%, 돼지 100.0, 가금 78.2, 말 3.3

** 가입율 : ('09) 48.1% → ('10) 53.1 → ('11) 54.5 → ('12) 71.4 → ('13) 77.3

*** 손해율 : ('09) 73.9% → ('10) 73.5 → ('11) 60.4 → ('12) 69.3 → ('13) 78.3



□ (보험금 지급) 5,036농가, 657억원 보험금 지급

○ '13년 손해율은 '12년(73.1%) 대비 78.3%로 사업이후 가장 높은 수준, 보험금 지급은 '12년(663억) 대비 657억원으로 0.9% 감소

○ 축종별로는 소·돼지가금에 보험금 집중 (전체의 93.1%)

* 축종별 보험금 지급 : 소 195, 돼지 291, 가금 126, 말 43, 기타 2

□ (사업관리 강화) 가축재해보험 경쟁체제 도입이후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보험사업자 및 대리점 등 실태점검 실시

○ (상반기) '13. 7. 15(월)~7. 26(금), 농협손보 및 LIG컨소시움

○ (하반기) '13.11. 4(월)~11. 15(금), 수입보험료 5위 이내 농축협

□ (특약 신설) 가축재해보험의 대상 축종 및 보장범위 확대를 위해 보험상품 개선 추진

○ 실화대물배상 및 돼지보험 자기부담금 하향조정 ('13.1)

○ 소 보험금 지급개선 ('13.4), 잔존물처리비용 특약('13.7)

□ (소 가축보험 개선) 소 가축재해보험금 부당수령 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충남도경(광역수사대) 발표('13.12.4)

① 소 재해보험 실태 특별점검 실시 및 정기점검 강화

* 농식품부, 보험사, 손사법인, 수의사회 등 합동 특별 실태점검 실시 및 보험사별 보험사기 특별전담반(SIU) 인력 확대

② 소 손해평가 체계 개편(지역조합 → 보험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

* 소 손해평가 및 지급심사업무를 보험사 주관으로 전문손해사정사가 담당토록 개선

* 보험금 지급서류에 도축확인증명서 및 사고 소 전신촬영사진 제출 의무화, 도축이력·생산이력 사전 조회, 연고 수의사 심사배제 등 지급심사 강화

③ 보험사고 가담한 계약자(가입제한), 대리점(계약취소, 수수료 감액), 수의사(면허정지) 등 제재 강화

④ 정책보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농업정책보험 전담기구 설립 조속 추진

*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이후 농업정책보험공단을 설립, 관리감독 강화

4. '14년 사업계획

◇ 가축재해보험 상품개선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 사고대비 점검·관리강화, 보험 인수·지급심사 강화 등

◇ 축산농가 부담경감 및 보장 강화로 경영안전 도모

* 보험요율 표준화, 보험료 차등·가입절차 개선, 축산농가 보장 다변화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대상축종 및 대상재해

- 대상축종 : 소·말·돼지·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사슴·거위·타조·양·벌·토끼·관상조, 오소리 (16축종)
- 대상재해 : 풍수해·설해 등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 지원대상 : 축산업을 영위하는 모든 농업인 또는 축산관련법인

□ 정부지원

- 보험료 : 순보험료의 50%지원
- 운영비 :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비 100% 지원
- '14 예산 : 52,877백만원
 - 보험료 43,360백만원(82%), 운영비 9,517백만원(18%)

□ 보험판매기간 : 연중

□ 보장기간 : 1년(월 단위 가능)

□ 보험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주), LIG컨소시엄

2 주요 추진계획

◇ 추진목표 : 가입률 ('13) 77.3% → ('14) 80.0%

□ (상품개선) 가축재해보험 상품개선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 재해 등으로 폐사된 가축 사체의 도축, 운송비 등 잔존물 처리 비용을 주계약에서 추가담보

○ 젖소의 유량감소로 긴급도축을 하여야하는 경우도 보장

* 젖소 유량감소는 유방염, 불임 및 각종 대사성질병으로 인하여 젖소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보상

○ 농가수요를 반영하여 돼지보험 가입품목 구체화('14)

- 現 돼지품목 세부구분 없이 자돈으로 일괄 가입하는 것을 포유돈(젓먹이 돼지), 이유돈(젓을 떼 돼지) 구분 가입

* (현행) 자돈(가입액 15만원/보험료 800원) ⇒ (개선) 포유돈(젓먹이 돼지, 10만원/500원), 이유돈(젓을 떼 돼지, 15만원/800원) 구분 가입

○ 낙뢰 등 전기적 사고에 따른 보장범위(특약) 확대

- 낙뢰 등 자연재해로 인해 옥내시설 뿐만 아니라 옥외시설까지 위험담보 범위를 확대 보장 (Off-Premise Power 특약)

* '14년 연구용역, '15년 사업에 반영여부 검토

□ (보험요율) 보험요율 표준화(주계약) 보험료 분납제 등 검토

반영으로 축산농가 부담경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 원사업자간(농협손보·LIG) 공통요율(참조요율) 적용으로 농가부담 경감(요율↓, 보장범위↑)
 - 보험사별로 적용하고 있는 경험요율(농협손보), 협의요율(LIG)을 전문기관의 참조(공통) 요율 개발중(보험개발원)
- 보험료 분할납부 등 도입 검토
 - 분할납부제도 도입으로 부담완화 및 선택범위 확대(2회 이상)
 - * '14년 연구용역, '15년 사업에 반영여부 검토

□ (사업관리) '보험사기' 대비 상호협력 및 대응체계 구축

- 보험사기 대비 관계기관 사고대응 협업체계 확립
 - (점검) 농식품부(재해보험팀)·손보사(정책보험팀), (조사) 손보사(감사·SIU), (수사) 경찰청(지능범죄수사과)·금융감독원(조사국)
 - 보험사기 「위기관리 신호시스템」 도입·시행 (보험사별)
- 「위기관리 점검회의」 개최 : 분기(정기), 경계·심각(필요시)
 - 농가(3회), 법인(5회) 보험금 청구(평균손해율 초과), 조사사고관리 등 논의
 - * 농식품부(재해보험팀), 경찰청(지능범죄수사과), 금감원(조사국), 손보사 등
- 손해율이 높은 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정기점검) 2년 단위 실시, 평균손해율 초과 지역·대리점(매년)
 - (특별점검·조사) 평균손해율 150% 초과 지역·대리점
 - * 농식품부·손보사·손사법인 등 합동점검, 비위사실 발견 시 관련기관에 수사의뢰

□ (지급심사) 전문성 확보 및 보험사고 시 제재 강화

- 손해평가 시 이해관계인 참여 배제, 사고 소(牛) 수의사 진단·검안서 작성 시 공수의사(사군배치) 또는 타 지역 수의사 활용
 - 사고 목적물 진단검안서는 **공수의사 또는 타 지역 수의사 활용**
- 보험금 청구서류 및 보험금 지급 전 도축및 생산이력, 현장 사진 첨부 등 지급심사 강화
 - ‘축산물거래증명일원화(HACCP)’와 연계한 **축산물 정보공유**(축평원)
 - 보험금 지급 청구서에 소 이력 관리(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도축 확인증명서 및 기립불능확인서(도축장), 현장사진 등 **전산발급 첨부 의무화**
 - * 사고 가축사진 증거능력화(앞·측·뒷, 전체)를 위한 사진촬영·첨부
- 보험사고 관련자 등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농가), 대리점 계약취소 또는 수수료 감액 환수 조치(지역조합) 등 제재 강화
 - 보험사기 재발방지를 위한 면허 정지처분 및 관리강화(수의사)
 - * 근거 : 수의사법 제32조 제2항, 수의사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 강화(대한수의사회 협조)

□ (교육홍보) 보험 가입률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한 홍보 추진

- (교육 및 설명회) 가축재해보험 제도개선사항 관련 품목단체, 지자체, 낙·축농협, 수의사협회 설명회(2~3월)
- (홍보물 제작) 가축재해보험 운영관리 실무매뉴얼 제작·배포 (3~4월), 캐릭터 및 로고 개발·홍보(6월), 수시 기고 등 실시
- (언론보도) 정책보험 언론대응, 기획기사 및 기고 검토

3 추진일정

□ 농어업재해보험 심의회 개최(1월)

- '13년 사업실적 및 '14년 사업계획 보고
- '14년 가축재해보험 사기 재발방지대책 보고

□ '14년 세부사업 시행계획 확정 및 실시

- 보험사업자는 연간 보험판매 일정을 수립 농식품부 보고(1월중)

□ 가축재해보험 담보특약 등 상품개선 연구용역('14 상반기)

□ 가축재해보험 운영관리 표준체계 정립 및 교육·홍보 강화

- 보험가입자, 지자체 및 낙축농협, 수의사협회 등 관계자 대상 제도개선 설명회 등 교육·홍보 실시(2~3월중)
- 가축재해보험 운영관리 매뉴얼 등 개발·보급 (3~4월)
- 가축재해보험 로고 및 캐릭터 개발·홍보 (6월)
- 가축재해보험 홍보 및 언론대응, 기고 등 실시 (필요시)

<참고 1>

2013 가축재해보험 가입현황

(단위 : 백만원, %, 천두, 호)

축종	사업주체	가입금액	사육두수 (A)	가입두수 (B)	순보험료	농가수	농가평균		가입률 (B/A)
							가입두수	보험료	
소	농협	504,388	3,483	265	26,307	4,676	57	6.0	7.6
	LIG	-		-	-	-	-	-	
돼지	농협	2,083,631	10,955	7,698	44,449	3,782	2,035	12.0	100
	LIG	1,353,687		3,257	8,139	184	17,701	45.0	
닭	농협	337,482	167,743	135,697	13,289	2,468	54,982	5.4	78.2
오리		22,312	13,287	4,252	1,537	233	18,249	6.6	
평		70	404	7	1	1	7,000	1.0	
메추리		4,151	12,851	4,271	176	33	129,434	5.3	
칠면조		0	19	0	0				
거위		0	15	0	0				
타조		0	1	0	0				
관상조		375	83	4	6	2	2,010	3.1	
소계		364,390	194,405	144,231	15,009	2,737	52,697	5.5	
닭		LIG	132,547	167,743	4,800	1,960	146	32,873	
오리	LIG	127,011	13,287	3,074	1,806	152	20,225	12	
소계	259,557	181,031	7,874	3,766	298	26,419	13.0		
말	농협	18,942	30	0	1,501	264	0	6.0	3.3
	LIG	59,367		1	3,389	592	2	6.0	
기타	농협	2,655	2,298	1	162	72	14	2.0	0
	LIG	-		-	-	-	-	-	
계		4,646,617	211,171	163,327	102,722	12,605	13	8.1	77.3
	농협			152,195	87,428	11,531	13	7.6	72.1
	LIG			11,132	15,294	1,074	10	14.2	5.3

※ 축사특약 가입현황

구분	가입농가	가입건수	가입면적 (㎡)	가입금액 (백만원)	비고
농협손보	2,784	2,784	12,237,474	2,151,266	*축사가입 대상면적은 통계청에서 통계자료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보험가입 대상 모수 활용에 어려움.
LIG권소시움	276	245	364,320	544,175	
계	3,060	3,029	12,601,794	2,695,441	

<참고 2>

2013 가축재해보험 보험금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 천두, 호)

축종	사업 주체	가입금액	사육 두수	가입 두수	위험 보험료 (A)	농가수	지급보험금			손해율 (B/A)
							농가수	건수	금액 (B)	
소	농협	504,388	3,483	265	21,572	4,676	3,592	13,360	19,479	90.3
	LIG	-		-	-	-	-	-	-	
돼지	농협	2,083,631	10,955	7,698	36,448	3,782	408	485	28,537	67.9
	LIG	1,353,687		3,257	6,370	184	6	7	545	
닭	농협	337,482	167,743	135,697	10,897	2,468	622	725	9,923	91.1
	LIG	132,547		4,800	1,568	146	21	22	642	
오리	농협	22,312	13,287	4,252	1,261	233	103	114	1,199	95.1
	LIG	127,011		3,074	1,463	152	51	52	534	
꿩	농협	70	404	7	1	1	-	-	-	0.0
메추리		4,151	12,851	4,271	144	33	4	5	340	236.1
칠면조		-	19	-	-	-	-	-	-	-
거위		-	15	-	-	-	-	-	-	-
타조		-	1	-	-	-	-	-	-	-
관상조		375	83	4	5	2	0	0	0	0.0
말	농협	18,942	30	0	1,230	264	61	66	1,703	107.6
	LIG	59,367		1	2,834	592	149	158	2,671	
기타	농협	2,655	2,298	1	133	72	19	76	170	127.8
	LIG	-		-	-	-	-	-	-	
계		4,646,617	211,171	163,327	83,926	12,605	5,036	15,070	65,743	78.3
농협				152,195	71,691	11,531	4,809	14,831	61,351	85.6
LIG				11,132	12,235	1,074	227	239	4,392	35.9

<참고 3>

가축재해보험의 보상하는 사고·지급범위·적용요율

□ 축종별 특약별 보장내용

구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소	주계약	하우 육우 젖소	가입금액한도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종모우	
	특약	소도체 결합보상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경매시까지 발견된 도체의 결함(근출혈, 수종, 근염, 외상, 근육제거 등)으로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
돼지	주계약	돼지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95%까지 보상
	특약	질병위험보장	가입금액 한도내 손 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한 금액
		축산휴지 위험보장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100%까지 보상
		전기적장치 위험담보	가입금액 한도내 손 해액에서 자기부 담금 차감한 금액
		폭염재해	가입금액 한도내 손 해액에서 자기부 담금 차감한 금액
협정보험 가액	협의평가로 보험 가입한 금액을 시가와 관계없이 가입금액 을 보험가액으로 평가		
말	주계약	경주마 육성마 종빈마 종모마	가입금액한도내 손해 액 80%까지 보상
	특약	말운송위험담보 싸수말번식책담보	단,경주마는 가입금 액 70%까지 보상
가금	주계약	모든 가금	가입금액 한도내 손 해액 95%까지 보상
	특약	전기적장치 위험담보	가입금액 한도내 손 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한 금액
		폭염재해	가입금액 한도내 손 해액에서 자기부 담금 차감한 금액
		협정보험가액	협의평가로 보험 가입한 금액을 시가와 관계없이 가입금액 을 보험가액으로 평가
기타 가축	주계약	사슴,양,꿀벌 토끼,오소리	사슴,양,오소리 :가입 금액 한도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꿀 벌,토끼는 95%)
	특약	사망·긴급도축 확장보장 (사슴,양,오소리)	가입금액한도내 손해 액 80%까지 보상
축사	특약		풍수재, 수재, 설해
	화재대물배상책임특약	축사 화재로 인접농가 피해 시 손해 보상	만원 차감 후 보상

* 농협손해보험(주)의 가축재해보험 상품을 정리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해당 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람.

□ 보험 종목별 보상하는 사고 및 지급(농협보험 기준)

○ 소보험

구분	가입대상	담보 내용	자기부담금 (면책금액)
주계약	한 우 육 우 젖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사고(풍해·수해·설해등 자연재해, 화재)로 인한 폐사 ○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욕마비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이내 긴급도축외 질병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의 20%
	종모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 부상[경추골절, 사지골절 및 탈구(탈골)]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 정액생산 능력 저하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 보험금의 20%
특약	소도체결합 보상특약	○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경매시까지 발견된 도체의 결함(근출혈, 수종, 근염, 외상, 근육제거, 기타 등)으로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	○ 보험금의 20%
	축사특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에 의한 손해 ○ 풍재 · 수재 · 설해에 의한 손해 	○ 풍수재, 수재, 설해: 50만원
	실화대물 배상특약	○ 축사화재로 인해 인접농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돼지보험

구분	가입대상	담보 내용	자기부담금 (면책금액)
주계약	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에 의한 손해 ○ 풍재 · 수재, 설해에 의한 손해 	○ 보험금의 5%
특약	○ 질병위험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GE, PED, Rota virus에 의한 손해 ※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이내 질병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가입금액 20% 또는 250만원중 적은 금액
	○ 축산휴지 위험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휴지손해 - 화재, 풍수재 · 설해 피해로 인한 경영손실 	
	○ 전기적장치 위험보장	○ 전기적장치의 고장에 따른 돼지손해	○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
	- 폭염주기특약	○ 폭염에 의한 가축 피해 보상	· 자기부담금: 100, 200, 300만원
	○ 협정보험기액 특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평가로 보험 가입한 금액 - 시가와 관계없이 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평가 	
	○ 축사특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에 의한 손해 ○ 풍재 · 수재 · 설해에 의한 손해 	○ 풍수재, 수재, 설해 : 50만원
○ 실화대물 배상특약	○ 축사화재로 인해 인접농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가금보험 (닭·오리·꿩·메추리·타조·거위, 관상조)

구분	가입대상	보상하는 사고	자기부담금(면책금액)
주계약	모든 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에 의한 손해 ○ 풍재, 수재, 설해에 의한 손해 	○ 보험금의 5%
특약	○ 전기적장치 위험보장	○ 전기적장치의 고장에 따른 폐지손해	○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 * 자기부담금: 100, 200, 300만원
	- 폭염추기특약	○ 폭염에 의한 가축 피해 보상	
	○ 협정보험가액 특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평가로 보험 가입한 금액 - 시가와 관계없이 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평가 	
	○ 축사특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에 의한 손해 ○ 풍재 · 수재 · 설해에 의한 손해 	○ 풍수재, 수재, 설해: 50만원
	○ 실화대물 배상특약	○ 축사화재로 인해 인접농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말보험

구분	가입대상	보상하는 사고	자기부담금(면책금액)
주계약	경주마 육성마 종빈마 종모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사고(풍해·수해·설해등 자연재해, 화재)로 인한 폐사 ○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욕마비 산통, 경주마의 실명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할 손해 ○ 불임 	○ 보험금의 20% (단, 경주마는 30%)
말운송 담보특약		○ 말운송 중 발생하는 주계약 보상사고	
씨수말 번식 첫해담보 특약	종모마	○ 종모마(수컷)의 번식장애 보상	
축사특약	마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에 의한 손해 ○ 풍재 · 수재 · 설해에 의한 손해 	○ 풍수재, 수재, 설해 : 50만원
	실화대물 배상특약	○ 축사화재로 인해 인접농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기타가축』 보험 (사슴·양(염소포함), 꿀벌, 토끼, 오소리)

구분	가입대상	보상하는 사고	자기부담금(면책금액)
주계약	사슴·양 오소리 꿀벌·토끼	○ 화재에 의한 손해 ○ 풍재, 수재, 설해에 의한 손해	○ 사슴·양, 오소리: 보험금의 20% ○ 꿀벌·토끼:보험금의 5%
사망·긴급 도축확장 보장특약	사슴·양· 오소리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사고(풍해· 수해·설해등 자연재해, 화재)로 인한 폐사 ○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욕마비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내 질병 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의 20%
축사특약	축사	○ 화재에 의한 손해 ○ 풍재·수재·설해에 의한 손해	○ 풍수재, 수재, 설해: 50만원
	실화대물 배상특약	○ 축사화재로 인해 인접농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요율(사업자별 주계약요율 동일, 특약요율 상이할수 있음)**

○ 소보험

(단위 : %)

구분	한우		육우		젖소		종모우		축사특약							
									1지역				2지역			
	송아지	큰소	송아지	큰소	송아지	큰소	한우	젖소	1급	2급	3급	4급	1급	2급	3급	4급
주계약	8.281	3.097	8.281	3.859	8.281	13.033	4.999	5.491	0.809	1.319	1.402	1.491	0.818	1.331	1.412	1.499
소도체결 합특약	0.207		0.558		0.299											

▷ 1지역 :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 2지역 :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상남도, 전라남도,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 돼지보험

(단위 : %)

구분		1지역				2지역			
		1급	2급	3급	4급	1급	2급	3급	4급
주계약		0.598	0.704			0.695	0.767		
특약	전기적장치위험보장 (자기부담금: 100만원)	0.409	0.462			0.409	0.462		
	- 폭염추가특약	0.044	0.054			0.044	0.054		
	축산휴지위험보장	0.708	0.825			0.805	0.901		
	질병위험보장	1.809	2.065			1.809	2.065		
	축사	0.568	0.836	0.98	1.079	0.578	0.847	0.994	1.092

○ 가금보험

(단위 : %)

구분		1지역				2지역			
		1급	2급	3급	4급	1급	2급	3급	4급
주계약		1.317	1.426			1.249	1.366		
특약	전기적장치위험보장 (자기부담금: 100만원)	0.434	0.471			0.434	0.471		
	- 폭염추가특약	0.119	0.132			0.119	0.132		
	축사	1.188	1.635	1.907	2.006	1.208	1.659	1.933	2.033

○ 말보험

(단위 : %)

구분	주계약				가축특약		축사특약							
							1지역				2지역			
	종빈마	경주마 일반마	일반마	종모마	말운송담보	씨수말 번식침해	1급	2급	3급	4급	1급	2급	3급	4급
요율	8.73	13.307	8.434	구득	0.386	구득	0.809	1.319	1.402	1.491	0.818	1.331	1.412	1.499

○ 기타가축보험

(단위 : %)

구분	주계약					축사특약							
						1지역				2지역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1급	2급	3급	4급	1급	2급	3급	4급
요율	13.859	10.237	2.661	1.446	0.231	0.809	1.319	1.402	1.491	0.818	1.331	1.412	1.499

○ 「실화대물배상특약」 보험료

(단위 : 원)

담보	급수	가입금액								
		5,000만원	1억	3억	5억	7억5천	10억	15억	20억	30억
우사 및 기타가축 축사	1급	21,800	29,150	39,710	44,190	48,080	51,710	56,100	59,150	60,160
	2급	35,810	47,880	65,230	72,590	78,970	84,940	92,160	97,160	98,820
	3급	61,120	81,730	111,340	123,890	134,790	144,980	157,300	165,830	168,670
	4급	98,470	131,680	179,390	199,620	217,180	233,600	253,440	267,190	271,770
돈사	1급	39,310	52,570	71,620	79,700	86,710	93,260	101,190	106,680	108,500
	2급	64,210	85,870	116,980	130,170	141,620	152,320	165,260	174,230	177,210
	3급	109,770	146,790	199,980	222,530	242,100	260,400	282,530	297,850	302,950
	4급	186,060	248,810	338,960	377,180	410,360	441,370	478,870	504,840	513,490
가금사	1급	34,230	45,780	62,360	69,400	75,500	81,210	88,110	92,890	94,480
	2급	55,260	73,890	100,670	112,020	121,870	131,090	142,220	149,940	152,510
	3급	94,580	126,470	172,300	191,730	208,590	224,350	243,420	256,620	261,010
	4급	167,000	223,310	304,230	338,530	368,310	396,140	429,800	453,110	460,870

2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팀 장 전한영 사무관 문정호	044-201-1791 044-201-1727

I. 사업개요

1. 목 적

-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4년까지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률을 80%까지 제고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 가축보험 가입률 (주지표)	80.0	54.1	71.4	77.3	매년말	(보험가입두수/보험가입 대상 가축두수)×100
▪ 대상축종 증가수 (부지표)	-	1	1	-	매년말	매년도 가축보험 대상 축종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504,590	71,470	84,390	105,754
보 조	249,588	35,735	42,195	52,877
자부담	255,002	35,735	42,195	52,877

II.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및 LIG컨소시엄)가 판매하는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

2. 지원대상 및 요건

가. 정부지원 대상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
 - 축산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보험료 정부지원 제외
- 축산 계열화사업자(업체)가 가입자인 경우와 계열화사업자가 소속 농가를 대리하여 소속 농가의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 제외
 - ‘축산 계열화사업자’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 5호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법 제30조 의해 시도지사에게 계열화사업자 증명을 받은 자를 말함

나. 세부사업내용

- (1) 보험 목적물 : 소·말·돼지·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사슴·양·벌·토끼·관상조, 오소리(16축종)
- (2) 사업실시지역 : 전국
- (3)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 축종별 보상하는 재해 범위 「별표」
- (4) 보험 목적물 보장유형
 - 축종별 보장 유형 및 범위(주계약, 특약) 「별표」
- (5) 보험기간 : 1년

(6) 보험가입절차

- 보험가입안내(지역축협 등) → 가입신청(농가) → 현지확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가는 가입 신청시 축산업등록증 사본첨부 또는 청약서에 축산업등록 증명번호 기재
- 축사특약은 적법한 건물(시설포함)에 한하여 정부지원 가능. 다만, 가축은 사육시설(건물)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 건물의 적법여부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으로 확인
- 외국산 경주마는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

(7) 보험요율 적용기준 및 할인·할증

○ 보험요율의 적용기준

- 재해보험사업자는 순보험료에 대한 보험요율은 전문기관에서 산출한 요율(참조요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축종에 대한 참조 요율이 없거나 통계자료의 객관성·신뢰성 부족에 의한 경우에는 재해보험사업자 경험요율 또는 재보험사와의 협의요율을 적용할 수 있음.
- 다만, 본 기준은 이미 가축보험 사업약정서 등에 의하여 판매되고 있는 보험 상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보험료의 할인·할증

- (공통) 재해보험사업자는 가축재해보험 보험목적물의 종류, 대상재해의 유형, 부대시설 상태 등을 고려해서 과거 5년간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을 적용 가능함
- (할인) 재해보험사업자는 동일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와 동일한 보험목적물의 위험에 대해 2년 이상 계속계약자를 대상으로 축종별 적용요율의 10% 범위내에서 할인 적용 가능

- (할증) 재해보험사업자는 동일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와 동일한 보험 목적물의 위험에 대해 과거 2년 연속 평균손해율 이상 계속계약자를 대상으로 축종별 적용요율의 50%까지 할증 적용 가능

(8)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료 납입은 보험가입 시 일시납(1회납)을 원칙으로 하되, 축산농업인 부담보험료가 100만원 이상인 계약자에 한하여 분할납부 가능
- 보험료 분납방법

구분	납입시기	납입액
1회	보험가입시	축산농가 부담보험료의 60%
2회	보험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축산농가 부담보험료의 40%

(9) 보험가입금액의 산출

- 보험기간중 가축의 성장률, 거래가격 등을 고려한 최대 보유량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임의 결정

(10) 손해평가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손해평가지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됨

(11)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지급심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해 재해보험 사업자가 직접 심사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청구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청구서류 준비를 대리점 등을 통해 제출받되 심사는 본사가 직접 실시

(12) 보험금 지급

- 보상하는 재해로 자기부담금 이상 피해 발생시 자기부담금 초과 손해액에 대해 보험금 지급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발생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 다만, 보험금 청구는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발급된 서류에 한하며, 수기작성 서류는 불인정

3. 지원대상 및 형태

- 총 보험료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 가입대상 세부 축종 및 가입형태 : 별표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예산 범위내에서 농업인이 납입하는 총보험료의 50% 보조 단, 말의 경우 마리당 가입금액 4,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총 보험료 : 순 보험료 + 부가보험료
- 순 보험료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에 축산농업인 또는 축산업관련 법인의 납입보험료 지원
- 운영비(부가보험료) : 재해보험사업자가 가축재해보험사업 운영에 소요 되는 비용 지원

6.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 재해보험사업자는 축산농업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상품을 개발하여야 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지역대리점 등에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고 가축재해보험 판매·인수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7. 기 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가축재해보험 약관」과 기타 관련 법 규정에 의함
- 기타 위에 정하지 않은 보험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방법서에 따름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 세부사업 추진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수립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통보
 - 재해보험사업자는 매월 말 기준, 익월 20일까지 가축재해보험 가입현황 및 보험료 집행실적 등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재해보험사업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계획 시달 내용을 근거로 지역 대리점, 농협, 낙축협 영업점 등에 사업계획 시달하여 사업대상 축산농업인 등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시달
 - 사업기간, 보조율, 지원조건 등에 관한 사항 지도·시달

2. 사업자 선정단계

재해보험사업자

- 사업대상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중 사업추진
 - 대상가축 : 소(생후 2개월령 이상), 말, 돼지, 가금(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가축[사슴, 양(산양, 면양), 꿀벌, 토끼, 오소리]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가축재해보험 사업의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시행하고, 지역 대리점과 농축협 등 영업점 판매직원에게 대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며, 가입 희망 농업인에 대해 보험계약체결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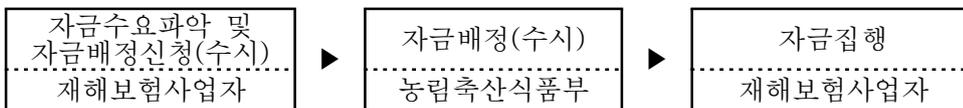
4. 자금배정단계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 가입한 축종별 가입실적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보험사업자의 가축재해보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자금을 배정하고, 가입실적에 따라 자금 집행



- 전년도 사업시행자의 보험 가입율과 세부집행내역 등에 대한 평가결과와 월별 가입현황 및 자금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금 교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함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기 등 보험사고 예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보험사고 위험관리 신호체계」에 의해 관리하여야 함
 - 신호단계(보험금 청구횟수) : 관심단계 1회, 주의단계 2회, 경계단계 3회 (평균손해율 이상), 심각단계 5회(평균손해율 150% 이상)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고 위험관리 신호체계」 중 경계·심각 신호단계의 보험금 청구가 있는 안전에 대해서는 매분기별 또는 필요시 「보험사고 위험관리 점검회의」에 상정 가능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목적물이 부상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심사의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서류에 도축검사증명서 및 기립불능확인서, 생산이력, 현장조사 및 사고목적물 사진(3면 이상) 등을 첨부확인 후 지급심사를 하여야 함
 - 보험금 지급심사 및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수기작성 및 발급을 배제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된 서류 첨부(원칙)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목적물에 대한 수의사 진단 및 검안 시에 자체 수의사 참여를 배제하고, 시·군 공수의사, 타 지역 수의사로 하여금 진단 및 검안 등을 하여야 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의 손해평가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인의 참여 배제 및 손해평가 분야별 행동강령 등을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식품부 고시 제2013-298호)’에 의거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구조 건전성, 정부지원 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험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관리 체계적 운영
 - (점검) 농식품부(재해보험팀)·손보사(정책보험팀), (조사) 손보사(감사·SIU), (수사) 경찰청(지능범죄수사과)·금융감독원(보험조사국)
 - 보험사고 위험관리 단계(기준)

- ▶ 동일 농가(법인) 1회 보험금 청구 → 관심 ●
 - ▶ 동일 농가(법인) 2회 이상 보험금 청구 → 주의 ●
 - ▶ 동일 농가(법인) 3회 이상 보험금 청구(대리점 평균손해율 초과) → 경계(실태점검) ●
 - ▶ 동일 농가(법인) 5회 이상 보험금 청구(대리점 평균손해율 150% 초과) → 심각(실태조사 또는 수사의뢰) ●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험사고 위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험사고 위험관리 점검회의」 개최할 수 있음
 - 개최시기 : 분기별, 필요시 수시 개최
 - 참석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사업시행자, 손해평가법인 등
 - 점검내용 : 보험사고 위험관리 신호가 ‘경계·심각단계’의 보험금 청구 건으로 재해보험사업자가 상정 요구한 안건, 가축재해보험 실태 점검·조사, 보험사고 혐의자 수사의뢰, 가타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
- 재해보험사업자 및 사업자(농업인)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
 - 점검대상 : 보험계약 체결 지역 농·축협 등 사업시행자 영업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필요시 수시 점검
 -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농업인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차년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부지원자금 집행사항 점검항목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 등에 의한 재해보험사업자별 사업 계획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현황 및 보조금 등 자금 집행실적 및 운영상황
 - 순보험료의 농어업재해보험법령, 사업시행지침 등에 의한 국고 보조금(순보험료) 지원의 적합 여부
 - 부가보험료(운영사업비)의 세부사업 항목별 집행실적과 사용내역, 보험사업 목적 외 사용여부 등에 관한 사항

《제재》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지역 농·축협 등 영업점 및 사업대상자(농업인)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하여야 함.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기 등 보험사고 관련 보험계약자(피해보험자)에 대한 보험 가입을 제한하여야 함
 - 보험사고 관련 해당 대리점·영업점과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각각 수수료 감액조치, 계약취소 등의 제재를 실시한 경우에 그 결과를 월별 추진실적 보고 시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자 등의 부당사유가 확인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징계조치 및 해당직원 징계, 해당 계약자(농업인)의 계약 취소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 등에게 통보하여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험사고 목적물에 대한 불법 진단·검진하거나 공모한 수의사 등에 대해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 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의 전년도 경영성과를 평가
 - 주요평가지표 : 축종별 사육두수 및 가입두수
 - 성과지표 측정(12월~익년도 1월) : 축종별 사육두수 대비 사업시행자의 가입두수 실적을 성과지표로 측정

<만족도 조사>

- 정부정책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방문·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사업기간 중
 - 조사대상 : 농업인 및 가축재해보험 관련자
 - 조사방법 : 설문지를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관 : NH농협손해보험, LIG컨소시움 등 가축재해보험사업자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칙

- 가축재해보험 사업계획으로 설정된 가입두수,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고 미흡·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기간 및 평가대상 : 매년 1월중, 재해보험사업자
- 평가기준 : 축종별 사육두수 대비 가입두수, 보조금 집행 현황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사업시행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 (1월중)
- 사업시행자는 매년 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축종별 가입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매년 12월말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월 10일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자의 축종별 사육두수와 가입두수를 제출 받아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부진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환 류》

- 사업시행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가축재해보험 상품 소

Ⅲ. 가축재해보험 상품 소개

< 요약 >

◆ 상품 개요

- ▶ 상품화 연혁, 종목별 가입대상 및 정부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상품별 주요내용

- ▶ 주계약 및 가입가능 특약, 보상하는 손해, 보험계약 시 작성 및 필요서류 등에 관한 사항

◆ 상품별 인수기준 및 계약

- ▶ 소·돼지·말·가금 등 축종별 인수절차
- ▶ 보험요율, 보험 기준가액 및 가입금액(주계약 및 특약, 가입 방식), 인수제한 계약 등에 관한 사항

◆ 가축재해보험 약관구성 및 주요내용

- ▶ 보통약관(일반 및 축종별), 특별약관(축사포함)에 관한 사항

1 ▶ 상품 개요

가. 연혁

- (1) 시범사업 : '97 ~ '99, “소” 보험
- (2) 본사업 : '00 ~

연도 (축종수)	내 용	사업 대상	보험료
2000 (3)	○ 『돼지·말』 보험 판매 ○ 가축공제 재보험 도입	소, 돼지, 말	30억원
2002 (4)	○ 『닭』 보험 판매 ☞ 보장내용 : 풍수재·화재 ○ 『돼지』 보장 확대 ☞ 풍수재·화재 → 설해까지 확대 ☞ 『경영손실보장특약』 신설 ○ "소"가입연령 확대(6개월→2개월)	소, 돼지, 말, 닭	160억원
2004 (5)	○ 『오리』 보험 판매 ☞ 닭공제 → 가금공제로 명칭 변경	소, 돼지, 말, 가금 (닭, 오리)	253억원
2005 (7)	○ 『꿩』, 『메추리』 보험 판매	소, 돼지, 말, 가금(닭, 오리, 꿩, 메추리)	310억원
2006 (9)	○ 『칠면조』, 『사슴』 보험 판매	소, 돼지, 말, 가금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379억원
2007 (11)	○ 『타조』, 『거위』 보험 판매 ○ 『가금』 보장 확대 ☞ 풍수재·화재 → 설해까지 확대 ○ 『축사보험』 판매 - 보장범위 : 풍수재·화재 - 정부지원 : 30%	소, 돼지, 말, 가금(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사슴 및 축사	472억원
2008 (12)	○ 『양』 보험 판매	소, 돼지, 말, 가금(타조, 거위 등), 기타가축(사슴, 양)	542억원
2009 (13)	○ 『꿀벌』 보험 판매 ○ 『축사보험』 보장 확대 - 보장범위 : 설해·풍수재·화재 - 정부지원 : 50%	소, 돼지, 말, 가금 (타조, 거위 등), 기타가축(사슴, 양, 꿀벌)	600억원

연도	내 용	보험종목 및 대상		보험료
		보험종목	가입대상	
2010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재해보험』 상품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정에 따른 상품명 변경 ○ 『축사보험』 보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가액 최저 70%까지로 확대 (구, 보상가액 최저 30%) ○ 『토끼』 보험 판매 	소보험	한우, 육우, 젓소, 종모우	654 억원
		돼지보험	모든 돼지	
		가금보험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말보험	종빈마, 종모마, 경주마, 육성마, 일반마	
		기타가축보험	사슴, 양, 꿀벌, 토끼	
		축사보험	모든 축종의 축사 및 부대시설	
2011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상조』 보험 판매 			795 억원
2012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염재해보장』 판매 ○ 『소도난손해』 판매 ○ 『소도체결함보상특약』 판매 ○ 『전기적장치위험보장』 자기부담금 개선 ○ 『오소리』 보험 판매 			978 억원
2013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대물배상특약』 판매 ○ 돼지보험 자기부담금 개선 ○ 젓소축종 가입 시 사진촬영 삭제 ○ 소 보험 보험금 지급 개선 ○ 계열화사업회사 정부지원 제외 			1,215 억원
2014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가축 『잔존물처리비』 보상 ○ 젓소 유량감소 질병보장 ○ 보험요율 표준화(참조순요율) ○ 보험료 분할납부 기능(2회) ○ 보험사업자 지연이자율 인상 (정기예금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 	소보험	한우, 육우, 젓소, 종모우	1,058 억원 (예상)
		돼지보험	모든 돼지	
		가금보험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말보험	종빈마, 종모마, 경주마, 육성마, 일반마	
		기타가축보험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축사보험	모든 축종의 축사 및 부대시설	

나. 종목별 가입대상 및 정부지원

(1) 종목별 가입대상

구 분	소		돼 지	말	가 금	기타가축	축 사 (공통특약)
	한우·육우·젓소	종모우					
가입대상	○ 한·육우: - 생후 만2개월이상 13세미만 ○ 젓소 - 생후 만2개월이상 8세미만	○ 한우 ○ 젓소	제한없음	○ 중년마 ○ 종모마 ○ 경주마 ○ 육성마 ○ 일반마	○ 닭 ○ 오리 ○ 꿩 ○ 메추리 ○ 타조 ○ 거위 ○ 관상조	○ 시슴양 - 생후2개 월 이상 ○ 꿀벌 ○ 토끼 ○ 오소리	가축사육 건물 및 부속건물
가입형태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지원비율	납입 보험료의 50%						

(2) 정부지원

(가) 지원대상: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사육하는 자

(나) 지원조건: 가축재해보험료의 50% (국고보조 50%, 가입자부담 50%)

단, 말의 경우 마리당 가입금액 4,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

(3) 지원제한사항

(가) 축산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보험료 정부지원 제외

- 가축재해보험사업에 가입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보험가입 신청시 축산업 등록증 사본첨부 또는 청약서에 축산업등록 증명번호 기재

▶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 기준

1. 허가대상 : 소·돼지·닭·오리(4개 축종)
2. 등록대상 : 11개 축종
 - 소·돼지·닭·오리(4개 축종) -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7개 축종)
 - * 사육시설 면적이 15㎡ 미만인 7개 가금은 등록 제외
(7개 가금 : 닭·오리 및 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 가축사육업 허가대상 사육시설 면적 확대(안)

축종 \ 시기	'13.2.23	'14.2.23	'15.2.23	'16.2.23	
	대규모	전업규모	준전업규모	소규모	
소	1,200㎡초과	600㎡초과	300㎡초과	50㎡초과	50㎡이하
돼지	2,000㎡초과	1,000㎡초과	500㎡초과	50㎡초과	50㎡이하
닭	2,500㎡초과	1,400㎡초과	950㎡초과	50㎡초과	50㎡이하
오리	2,500㎡초과	1,300㎡초과	800㎡초과	50㎡초과	50㎡이하

* 기존 등록대상은 허가받은 것으로 보고 1년내 시설·장비 등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함

소, 돼지, 닭, 오리	등록(현행)			
	허가(현행)	< 허가 (계획) >		
	'13.2월 ~	'14.2월 ~	'15.2월 ~	'16.2월 ~

양, 사슴 가금	등록(현행) * 가금(5개) : 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	--------------------------------------

(나) 계열화 업체가 가입자인 경우와 계열화 업체가 소속 농가를 대리하여 소속농가의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제외

(다) 축사특약은 적법한 건물(시설포함)에 한하여 정부지원 가능
 다만, 가축은 사육시설(건물)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건물의 적법여부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으로 확인

(라) 외국산 경주마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정책보험 상품화 기본원칙 >

◆ (기본방향)

- 보험수요(농가), 정책목적(정부), 보험원리(사업자)를 균형있게 적용
-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경영위험이 커지고 있어 조속한 보험 확대를 원하는 농가의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 필요 (농가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보험운영의 기본원리)

- ① (대수의 법칙) 보험대상이 되는 모집단이 충분히 큰 상태에서만 결과 값을 수학적으로 예측하거나 통계 값 적용이 가능
 - 가입경향, 피해정도의 예측이 어렵고 변화폭이 커 안정적 제도 운영 곤란
- ② (공평부담의 원칙) 보험료의 부담에 있어서 각 개인은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및 담보받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 (위험도가 클수록 높은 보험요율 적용 원칙)
 - 표준화가 된 품목은 요율 차별화가 가능하나, 표준화 되지 않거나 기초연구 자료가 없는 품목의 경우 요율 차별화 어려움
- ③ (손해평가의 가능) 피해발생시 그 피해액의 정확한 산정 가능하고, 담보하지 않는 다른 원인에 의한 피해와 정확한 구분 가능
 - 정확한 손해평가가 어려울 경우 가입자가 부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
- ④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방지) 가입농가의 부주의나 고의 등 도덕적 요소에 기인하는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
 -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선의의 가입자에게 전가(보험료 상승)

2 보험상품별 주요내용

가. 주계약(가축) 및 가입가능 특약

구분	주계약 (목적물)	가입가능 특약
소보험	◦ 한우 · 육우 · 젖소, 종모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도체결합보상특약 • 측사특약 • 화재대물배상 특약 * 측사특약 가입자만 가입가능
돼지보험	◦ 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위험보장 특약 • 축산휴지위험보장 특약 • 전기적장치위험보장 특약 • 폭염재해보장 추가특약 * 전기적장치특약 가입자만 가입가능 • 협정보험가액 특약 • 측사 특약 • 화재대물배상 특약 * 측사특약 가입자만 가입가능
가금보험	◦ 닭 · 오리 · 꿩 · 메추리 · 타조 · 거위 · 관상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적장치위험보장 특약 • 폭염재해보장 추가특약 * 전기적장치특약 가입자만 가입가능 • 협정보험가액 특약 • 측사 특약 • 화재대물배상 특약 * 측사특약 가입자만 가입가능
말보험	◦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馬)운송위험확장보장 특약 • 씨수말 번식컷해 선천성 불임 확장보장 특약 • 측사 특약 • 화재대물배상 특약 * 측사특약 가입자만 가입가능
기타가축보험	◦ 사슴, 양(염소포함), 꿀벌, 토끼, 오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긴급도축 확장보장 특약 * 사슴 · 양 · 오소리 만 가입가능하며, 보험료 없이 자동부가 • 측사 특약 • 화재대물배상 특약 * 측사특약 가입자만 가입가능

※ LIG 컨소시엄은 소 도체결합보상특약, 화재대물배상 특약 미도입

나. 보상하는 손해

(1) 소

구 분	가입대상	보상하는 사고	자기부담금 (면책금액)
주계약	한 우 육 우 젖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사고 (풍해·수해·설해등 자연재해, 화재)로 인한 폐사 ◦ 부상(사지골절,경추골절,탈골), 난산, 산욕마비로 급성고창증 및 젖소의 유량감소로 긴급도축 하여야 하는 경우 ※ 젖소유량감소는 유방염, 불임 및 각종 대사성 질병으로 인하여 젖소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이내 긴급도축외 질병 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의 20%
	종모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도난에 의한 손해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 부상(경추골절, 사지골절 및 탈구(탈골))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 정액생산 능력 저하로 인한 경제적 위협으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보험금의 20%
특약	소도체결 합보상특약	◦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경매시까지 발견된 도체의 결함 (근출혈, 수종, 근염, 외상, 근육제거, 기타 등)으로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20%
	축사특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에 의한 손해 ◦ 풍재 · 수재 · 설해에 의한 손해 	풍수재, 수재,설해 : 50만원
	화재대물 배상특약	◦ 축사화재로 인해 인접농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돼 지

구 분		보상하는 사고	자기부담금 (면책금액)
주계약	돼지	◦ 화재에 의한 손해 ◦ 풍재·수재, 설해에 의한 손해	보험금의 5%
특약	질병위험 보장	◦ TGE, PED, Rota virus에 의한 손해 ※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이내 질병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가입금액 20% 또는 250만원 중 적은 금액
	축산휴지 위험보장	◦ 축산휴지손해 -화재,풍수재·설해 피해로 인한 경영손실	
	전기적장치 위험보장	◦ 전기적장치의 고장에 따른 돼지손해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
	폭염추가특약	◦ 폭염에 의한 가축 피해 보상	* 자기부담금 100,200,300만원
	협정보험가액 특약	◦ 협의평가로 보험 가입한 금액 -시가와 관계없이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평가	
	축사특약	◦ 화재에 의한 손해 ◦ 풍재·수재·설해에 의한 손해	풍수재,수재, 설해:50만원
화재대물 배상특약	◦ 축사화재로 인해 인접농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가 금 (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위, 칠면조, 관상조)

구분	가입대상	보상하는 사고	자기부담금 (면책금액)
주계약	모든가금	◦ 화재에 의한 손해 ◦ 풍재,수재, 설해에 의한 손해	보험금의 5%
특약	전기적장치 위험보장	◦ 전기적장치의 고장에 따른 돼지손해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 * 자기부담금: 100,200,300만원
	폭염 추가특약	◦ 폭염에 의한 가축 피해 보상	
	협정보험가액 특약	◦ 협의평가로 보험 가입한 금액 -시가와 관계없이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평가	
	축사특약	◦ 화재에 의한 손해 ◦ 풍재·수재·설해에 의한 손해	풍수재, 수재, 설해 : 50만원
	화재대물 배상특약	◦ 축사화재로 인해 인접농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말

구분	가입대상	보상하는 사고	자기부담금 (면책금액)
주계약	경주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사고 (풍해·수해·설해등 자연재해, 화재)로 인한 폐사 ◦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욕마비, 산통, 경주마의 실명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할 손해 ◦ 불임 	보험금의 20% (단, 경주마는 30%)
	육성마		
	종빈마		
말운송 담보특약	종모마	◦ 말운송 중 발생하는 주계약 보상사고	
씨수말 번식컷해 담보특약	종모마	◦ 종모마(수컷)의 번식장애 보상	
축사특약	마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에 의한 손해 ◦ 풍재·수재·설해에 의한 손해 	풍수재,수재, 설해:50만원
	화재대물 배상특약	◦ 축사화재로 인해 인접농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5) 기타가축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구분	가입대상	보상하는 사고	자기부담금 (면책금액)
주계약	사슴·양 오소리 꿀벌· 토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에 의한 손해 ◦ 풍재, 수재, 설해에 의한 손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슴·양·오소리 :보험금의 20% • 꿀벌·토끼 :보험금의 5%
사망· 긴급도 축확장 보장 특약	사슴· 양· 오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사고 (풍해·수해·설해등 자연재해, 화재)로 인한 폐사 ◦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욕마비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개월이내 질병 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20%
축사특 약	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에 의한 손해 ◦ 풍재·수재·설해에 의한 손해 	풍수재,수재, 설해:50만원
	화재대물 배상특약	◦ 축사화재로 인해 인접농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보험계약 시 작성 및 필요서류

(1) NH농협손보

보험종목	작성 서류	필요 서류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재해보험 청약서 - (별지1) 건물(축사) 배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특약 가입시에 작성 - (별지2) 가축재해보험()목적물 명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생산이력제 『농장별 사육 개체 현황』 이 없는 경우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등록증 사본 • 생산이력제 『농장별 사육 개체 현황』
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재해보험 청약서 - (별지1) 건물(축사) 배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특약 가입시에 작성 ※ 축사특약 미가입시에 건물배치도 그림만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등록증 사본
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재해보험 청약서 - (별지1) 건물(축사) 배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특약 가입시에 작성 ※ 축사특약 미가입시에 건물배치도 그림만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등록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닭, 오리 가입시 첨부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재해보험 청약서 - (별지1) 건물(축사) 배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특약 가입시에 작성 - (별지2) 가축재해보험()목적물 명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 건강진단서 (1두당)
기타 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재해보험 청약서 - (별지1) 건물(축사) 배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특약 가입시에 작성 - (별지2) 가축재해보험()목적물 명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체별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슴 가입시 첨부

(2) LIG 컨소시움

보험종목	필요 서류	비 고
소 (한우 육우 젖소 종모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재해보험 질문서, 청약서, 수의사검진서 건물(축사) 배치도 또는 건축물대장 (가설건물관리 대장) 가축재해보험()목적물 명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사특약 미가입시 생략 쇠고기생산이력제 『농장별 사육 개체현황』이 없을 경우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쇠고기생산이력제 출력물 ※ 목적물(소) 대상이 환축, 연령 제한 등으로 가입제외 할 경우 사유 여백 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체별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젖소 가입시 촬영
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재해보험 질문서, 청약서(질병특약 가입시 수의사 검진서 필요) 건물(축사) 배치도 또는 건축물대장 (가설건물관리 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사특약 미가입시 건물 배치도 그림만 작성
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재해보험 질문서, 청약서 건물(축사) 배치도 또는 건축물대장 (가설건물관리 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사특약 미가입시 건물 배치도 그림만 작성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재해보험 질문서, 청약서 건물(축사) 배치도 가축재해보험()목적물 명세서 (마필이력자료, 생산자 확인서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사특약 미가입시 생략 개체별 질병유무 기재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 수의사 검진서 (1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전문수의사 진단서
기타가축 (사슴·양·꿀벌·토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재해보험 청약서 (별지1) 건물(축사) 배치도 (별지2) 가축재해보험()목적물 명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사특약 미가입시 생략 개체별 질병유무 기재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체별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슴 ※ 양, 꿀벌 등 군(群)별 가입인 경우 생략

3

보험상품별 인수기준 및 계약

가. 인수절차(공통사항)

- (1) 축산농가 가입 청약신청
- (2) 현지 보험목적물(축종 및 축사) 확인
- (3) 『가축재해보험』 가입설계서 작성

※ 첨부서류

- ① 쇠고기생산이력제에 등록된 『농장별사육개체현황』
- ② 축산업 등록증 사본
- ③ 신분증 사본
- ④ 건축물 대장(or 가설건축물 대장)
 ※ 축사특약 가입시 첨부

- (4) 『가축재해보험』 청약서 및 질문서 작성
- (5)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결정·수납

- ▶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보험요율
- ▶ 농가납입보험료 = 보험료 ÷ 2 (50% 정부보조)

- (6) 보험증서 발급 및 교부
- (7) 보험시스템 전산입력·등록관리

나. 소

(1) 인수절차

(가) 축산농가 가입 청약신청

(나) 현지 보험목적물(소 및 축사) 확인



(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설계서 작성

- ① 쇠고기생산이력제에 등록된 『농장별사육개체현황』
- ② 축산업 등록증 사본 ③ 신분증 사본
- ④ 건축물 대장(or 가설건축물 대장)
- ※ 축사특약 가입시 첨부

(라) 청약서 작성, 보험료 납입, 보험증권 발급 및 교부

- ▶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보험요율
- ▶ 농가납입보험료 = 보험료 ÷ 2 (50% 정부보조)

(2) 보험요율 (주계약만 동일, 특약요율 상이)

(가) 기본요율 (2014년 4월 21일 요율개정 반영)

(단위 : %)

구분	한우		육우		젖소		종모우		축사특약								
									1지역				2지역				
	송아지	큰소	송아지	큰소	송아지	큰소	한우	젖소	1급	2급	3급	4급	1급	2급	3급	4급	
주계약	8.281	3.097	8.281	3.859	8.281	13.033											
소도체결 합특약	0.207		0.558		0.299		4.999	5.491	0.809	1.319	1.402	1.491	0.818	1.331	1.412	1.499	

※ 지역구분

- ▶ 1지역 : 서울, 대구, 대전, 경북, 충남, 충북, 전북, 세종
- ▶ 2지역 :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남, 전남, 경기, 강원, 제주

※ 건물에 따른 위험급수 (☞ 측사특약 부문 참조)

(나) 단기요율

- 가축재해보험요율은 1년을 기준으로 한 요율이며, 보험 기간이 1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단기요율 적용
- 단기요율표

보험기간	단기요율	보험기간	단기요율	보험기간	단기요율
15일 까지	15%	4개월 까지	50%	8개월 까지	80%
1개월 까지	20%	5개월 까지	60%	9개월 까지	85%
2개월 까지	30%	6개월 까지	70%	10개월 까지	90%
3개월 까지	40%	7개월 까지	75%	11개월 까지	95%

(다) 계속계약요율

※ LIG손보는 우량할인을 적용

- 동일한 보험자와 동일구내의 위험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험계약을 할 경우에는 적용요율의 5% 할인 적용
- 계속계약 할인율은 보험기간이 1년인 보험계약에 한하며, 계약 만료일 60일전 또는 계약만료 후 30일 이내에 적용
- 계속계약 회차별 할인율

구 분	할인율	비 고
1회차	0%	신규계약
2회차 이상	5%	2년이상 계속계약

(3) 기준가액 및 가입금액 결정

(가) 소 기준가액 산정

- 현 가입우 시세에 향후 시세 및 성장추이 반영 (보험기간이 12개월이므로 향후 6개월령 시세 반영)
 - 예시) 가입월령이 5개월인 경우 6개월을 더한 11개월령 체중으로 가입

(나)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 한 우

- 사망 시점의 연령(월령)을 구함(출생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를 滿으로 계산하며 월미만 일수는 무시)
- 연령(월령)이 2개월이상 6개월이하인 경우
⇒ 보험가액 = 전전월 전국산지평균 송아지 가격

○ 연령(월령)이 7개월 이상인 경우

⇒ 보험가액 = ①(체중) × ②(Kg당 금액)

- ① 체중은 별표 2 『발육표준표』에서 정한 사고소(牛)의 연령(월령)에 해당되는 체중 적용
- ② kg당 금액은 별표 1 『산지가격 적용범위표』에서 사고소(牛)의 축종별, 성별, 월령에 해당되는 사고 전전월 전국산지평균가격을 그 체중으로 나누어 구함
- ③ 한우수컷 월령이 25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655Kg으로, 한우 암컷 월령이 4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470Kg으로 인정
- ④ 월령별 가액이 송아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송아지 가격 적용

○ 젖 소 (암컷)

- 사망 시점의 연령(월령)을 구함(출생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를 滿으로 계산하며 월미만 일수는 무시)
- 위의 월령을 구한 다음 아래에 해당되는 단계에 따라 사고 전전월 전국산지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구함

① 월령 2개월 ~ 7개월까지 : 분유떼기 암컷 가격

② 월령 8개월 ~ 12개월까지

$$: \text{분유떼기 암컷} + \frac{\text{수정단계가격} - \text{분유떼기암컷}}{6} \times N$$

(N : 사고월령 - 7개월)

③ 월령 13개월 ~ 18개월까지 : 수정단계가격

- ④ 월령 19개월 ~ 23개월까지
 : 수정단계가격 + $\frac{\text{초산우가격} - \text{수정단계가격}}{6} \times N$
 (N : 사고월령 - 18개월)
- ⑤ 월령 24개월 ~ 31개월까지 : 초산우가격
- ⑥ 월령 32개월 ~ 39개월까지
 : 다산우가격 + $\frac{\text{노산우가격} - \text{다산우가격}}{12} \times N$
 (N : 사고월령 - 31개월)
- ⑦ 월령 40개월 ~ 55개월까지 : 다산우가격
- ⑧ 월령 56개월 ~ 66개월까지
 : 다산우가격 + $\frac{\text{노산우가격} - \text{다산우가격}}{12} \times N$
 (N : 사고월령 - 55개월)
- ⑨ 월령 67개월 이상 : 노산우가격

○ 육 우

- 사망 시점의 연령(월령)을 구함(출생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를 滿으로 계산하며 월미만 일수는 무시)
- 연령(월령)이 2개월인 경우
 ⇒ 보험가액 = 전전월 전국산지평균 분유떼기 젓소 수컷 가격
- 연령(월령)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보험가액 = ①(체중) × ②(Kg당 금액)
- ① 체중은 별표 2 『발육표준표』에서 정한 사고소(牛)의 연령(월령)에 해당되는 체중 적용
- ② kg당 금액은 전전월 전국도매시장 지육평균 가격에 지육율 58%를 곱한 금액을 kg당 금액으로 함
- ③ 육우 월령이 25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600Kg으로 인정
- ④ 월령별 가액이 분유떼기 젓소 수컷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분유떼기 젓소 수컷 가격 적용

[별표 1] 산지가격 적용범위표

구 분		수 컷	암 컷
한 우	성별 350kg해당 전국 산지평균가격 및 성별 600kg해당 전국 산지평균가격 중 kg당 단가가 높은 금액	생후7개월 이상	생후7개월 이상

[별표 2] 발육표준표

한우 수컷 (거세우 포함)		한우 암컷				육 우	
월 령	체 중(kg)	월 령	체 중(kg)	월 령	체 중(kg)	월 령	체 중(kg)
2	-	2	-	26	385	2	-
3	-	3	-	27	390	3	210
4	-	4	-	28	400	4	220
5	-	5	-	29	410	5	230
6	-	6	-	30	420	6	240
7	230	7	230	31	425	7	250
8	240	8	240	32	430	8	270
9	250	9	250	33	435	9	290
10	260	10	260	34	440	10	310
11	295	11	270	35	445	11	330
12	325	12	280	36	450	12	350
13	360	13	290	37	455	13	370
14	390	14	300	38	460	14	390
15	420	15	305	39	465	15	410
16	450	16	310	40	470	16	430
17	480	17	315			17	450
18	505	18	320			18	470
19	530	19	325			19	490
20	555	20	330			20	500
21	580	21	340			21	520
22	600	22	350			22	540
23	620	23	360			23	560
24	640	24	370			24	580
25	655	25	380			25	600

(4) 인수 제한 계약

(가) 생후 2개월 미만 송아지

☞ 인수불가

(나) 사육장소 내 소가축 중 일부만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 단, 사육장소 내 2개월 미만, 환축, 발육부진 등의 사유로 제외되는 경우 그 개체만을 제외하고 전부 가입하는 경우는 가입가능

(다) 사육장소 내 일부 축사만 가입하는 경우

☞ 가축재해보험은 사육장소 내 모든 축사를 가입하여야 함
단, 축사의 경우 가축이 없는 관리자 및 퇴비사는 가입제외 할 수 있음

(라) 과거 손해율(피보험자기준)에 따른 할증이 150%인 경우

☞ 과거 5년간 손해율이 500% 이상으로 150% 할증이 적용된 계약

※ LIG 손보 미적용

(마) 주계약 및 축사특약의 가입금액이 기준가액 대비 50~150% 이외의 경우

(바) 축사가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한 경우

(사) 보험청약 당시 풍수재가 발생한 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풍수재 발생으로 풍수재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은 지역 목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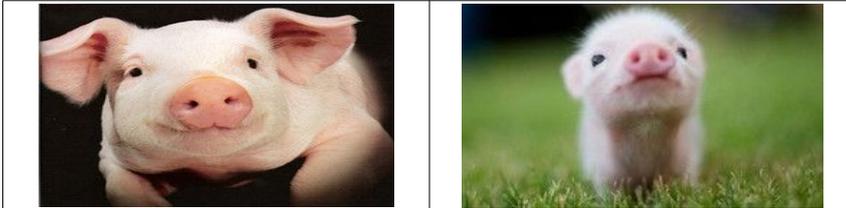
다. 돼지

(1) 인수절차

(가) 양축농가 가입 청약

(나) 현지 보험목적물(돼지 및 축사) 확인

☞ 돼지 종류별 사육두수 파악 (모돈, 옹돈, 육성·비육돈, 자돈 등)



(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설계서 작성

- ① 축산업 등록증 사본 ② 신분증 사본
- ③ 건축물 대장(or 가설건축물 대장)
- ※ 축사특약 가입시 첨부

(라) 청약서 작성, 보험료 납입, 보험증권 발급 및 교부

▶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보험요율
 ▶ 농가납입보험료 = 보험료 ÷ 2 (50% 정부보조)

(2) 보험요율 (주계약만 동일, 특약요율 상이)

(가) 기본요율 (2013년 기준)

(단위 : %)

구 분	1지역				2지역			
	1급	2급	3급	4급	1급	2급	3급	4급
주계약	0.598	0.704			0.695	0.767		
특약	전기적장치위험보장 (자기부담금: 100만원)	0.409	0.462			0.409	0.462	
	- 폭염추가특약	0.044	0.054			0.044	0.054	
	축산휴지위험보장	0.708	0.825			0.805	0.901	
	질병위험보장	1.809	2.065			1.809	2.065	
축사	0.568	0.836	0.98	1.079	0.578	0.847	0.994	1.092

○ 지역구분

- ① 1지역 : 서울, 대구, 대전, 경북, 충남, 충북, 전북, 세종
- ② 2지역 :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남, 전남, 경기, 강원, 제주

○ 건물에 따른 위험급수 (☞ 측사특약 부문 참조)

(나) 단기요율

- 보험요율은 1년을 기준으로 한 요율이며, 보험기간이 1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단기요율 적용

○ 단기요율표

보험기간	단기요율	보험기간	단기요율	보험기간	단기요율
15일 까지	15%	4개월 까지	50%	8개월 까지	80%
1개월 까지	20%	5개월 까지	60%	9개월 까지	85%
2개월 까지	30%	6개월 까지	70%	10개월 까지	90%
3개월 까지	40%	7개월 까지	75%	11개월 까지	95%

(다) 계속계약요율

※ LIG손보는 우량할인율 적용

- 동일한 보험자와 동일구내의 위험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험계약을 할 경우에는 적용요율의 5% 할인 적용
- 계속계약 할인율은 보험기간이 1년인 보험계약에 한하며, 계약 만료일 60일전 또는 계약만료 후 30일 이내에 적용
- 계속계약 회차별 할인율

구 분	할인율	비 고
1회차	0%	신규계약
2회차 이상	5%	2년이상 계속계약

(3) 기준가액 및 가입금액 결정 ※ LIG손보 산정방식 미적용

(가) 주계약

구 분	보험가액 산출식
개별가입 방식 ^{주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돈가액 : $N^{주3)} \times 500,000$원 ○ 용돈가액 : $N \times 600,000$원 ○ 자돈가액 : $N(\text{모돈수} \times 4.5) \times 15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돈은 포유자돈 100,000원, 이유자돈 150,000원 협정보험가액 특약 자동 가입 ○ 육성·비육돈가액 : $N(\text{모돈수} \times 5) \times 331,000$원
일괄가입 방식 ^{주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육두수 $\times 283,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괄사육 : 모돈+ 용돈+ 자돈+ 육성·비육돈 가액 ※ 1,000두(모돈 100두)사육규모일때 가액은 283,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돈은 포유자돈 100,000원, 이유자돈 150,000원 자동 협정보험가액 특약 자동 가입

주1) 개별가입 방식: 모돈/용돈/자돈/육성·비육돈을 각각 평가하여 기준가액 산출

주2) 일괄가입 방식 : 모돈/용돈/자돈/육성·비육돈을 모두 사육하는 농가들의 평균 가액으로 기준가액 산출

주3) N : 해당 돼지 마리수

(나) 질병위험보장 특약 ※ LIG손보 현행 약관기준 보상

- 모돈수를 지표로 기준가액 산정

구 분	산정방식
임신탐아	○ 모돈수 $\times 2.5 \times 100,000$ 원

- 가입금액 한도: 1억원 이하 (한도 초과 시 인수심사대상)

(다) 축산휴지위험보장 특약

- 모돈수를 지표로 기준가액 산정

구 분	산정방식
임신탐아	○ 모돈수 $\times 10 \times 50,000$ 원(산자수 10두)

- 가입금액 한도 : 모든 1두 500,000원 이내
(한도 초과 시 인수심사대상)
- 유의사항 : 모두가 없는 경우 및 협정보험가액 특약을 가입하는 계약자는 축산휴지담보특약 가입 불가

(라) 전기적장치위험보장 특약 및 폭염재해보장 추가특약

- 기준가액 산정: 주계약 산정 방식과 동일

(마) 협정보험가액 특약

- 계약자와 농협손해보험이 협의 평가한 금액을 가입금액으로 가입
- 사고발생 시 보험가액에서 이용물(잔존물)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평가

(4) 인수 제한 계약

(가) 사육장소 내 일부 돼지 또는 축사만 가입하는 경우

- ☞ 가축재해보험은 사육장소 내 모든 돼지 또는 축사를 가입하여야 함.
단, 축사의 경우 가축이 없는 관리사 및 퇴비사는 가입제외 할 수 있음

(나) 돼지 질병 사고가 년 2회 이상 발생한 농가

- ☞ 돼지질병특약만 인수 제한

(다) 과거 손해율(피보험자기준)에 따른 할증이 150%인 경우

- ☞ 과거 5년간 손해율이 500%이상으로 150%할증이 적용 된 계약

(라) 주계약 및 축사특약의 가입금액이 기준가액 대비 50~150% 이외의 경우

(마) 축사가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한 경우

(바) 보험청약 당시 풍수재가 발생한 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풍수재 발생으로 풍수재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은 지역 목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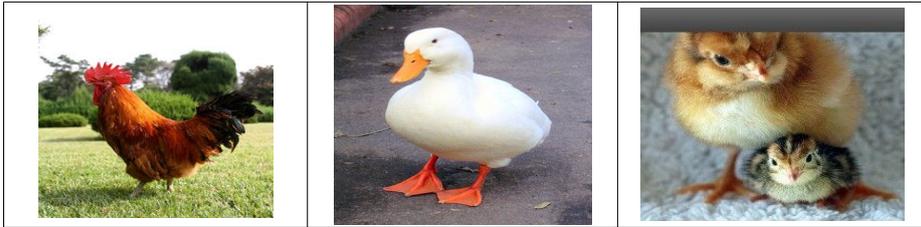
라. 가금

(1) 인수절차

(가) 양축가 가입 청약

(나) 현지 보험목적물(가금 및 축사) 확인

☞ 가금 종류별 사육두수 파악 (산란계, 육계, 오리, 메추리 등)



(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설계서 작성

- ① 축산업 등록증 사본 ② 신분증 사본
- ③ 건축물 대장(or 가설건축물 대장)
- ※ 축사특약 가입시 첨부

(라) 청약서 작성, 보험료 납입, 보험증권 발급 및 교부

- ▶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보험요율
- ▶ 농가납입보험료 = 보험료 ÷ 2 (50% 정부보조)

(2) 보험요율 (주계약만 동일, 특약요율 상이)

(가) 기본요율 (2013년 기준)

(단위 : %)

구 분		1지역				2지역			
		1급	2급	3급	4급	1급	2급	3급	4급
주계약		1.317	1.426			1.249	1.366		
특약	전기적장치위험보장 (자기부담금: 100만원)	0.434	0.471			0.434	0.471		
	- 폭염추가특약	0.119	0.132			0.119	0.132		
	축사	1.188	1.635	1.907	2.006	1.208	1.659	1.933	2.033

○ 지역구분

- ① 1지역 : 서울, 대구, 대전, 경북, 충남, 충북, 전북, 세종
- ② 2지역 :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남, 전남, 경기, 강원, 제주

○ 건물에 따른 위험급수 (☞ 축사특약 부문 참조)

(나) 단기요율

- 가축재해보험요율은 1년을 기준으로 한 요율이며, 보험 기간이 1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단기요율 적용
- 단기요율표

보험기간	단기요율	보험기간	단기요율	보험기간	단기요율
15일 까지	15%	4개월 까지	50%	8개월 까지	80%
1개월 까지	20%	5개월 까지	60%	9개월 까지	85%
2개월 까지	30%	6개월 까지	70%	10개월 까지	90%
3개월 까지	40%	7개월 까지	75%	11개월 까지	95%

(다) 계속계약요율

※ LIG손보는 우량할인을 적용

- 동일한 보험자와 동일구내의 위험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험계약을 할 경우에는 적용요율의 5% 할인 적용
- 계속계약 할인율은 보험기간이 1년인 보험계약에 한하며, 계약 만료일 60일전 또는 계약만료 후 30일 이내에 적용
- 계속계약 회차별 할인율

구 분	할인율	비 고
1회차	0%	신규계약
2회차 이상	5%	2년이상 계속계약

(3) 기준가액 및 가입금액 결정

(가) 주계약

종류	기준가액(마리당)	비고
육계	1500원	-
산란계	4500원	-
토종닭	3500원	-
종계	협정가액	권장협정가액: 10,000원
오리	4500원	-
종오리	협정가액	권장협정가액: 10,000원
메추리	협정가액	권장협정가액: 1,000원
꿩	협정가액	-
타조	협정가액	-
거위	협정가액	-
관상조	협정가액	-
칠면조	협정가액	-

(나) 전기적장치위험보장 특약 및 폭염재해보장 추가특약

- 기준가액 산정은 주계약 산정 방식과 동일

(다) 협정보험가액 특약

- 계약자와 농협손해보험이 협의 평가한 금액을 가입금액으로 가입
- 사고발생 시 보험가액에서 이용물(잔존물)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평가

(4) 인수 제한 계약

(가) 사육장소 내 일부 가금 또는 축사만 가입하는 경우

- ☞ 사육장소 내 모든 돼지 또는 축사를 가입하여야 함. 단, 축사의 경우 가축없는 관리자 및 퇴비사는 가입제외 가능

(나) 과거 손해율(피보험자기준)에 따른 할증이 150%인 경우

- ☞ 과거 5년간 손해율이 500%이상으로 150%할증이 적용 된 계약

※ LIG 손보 미적용

(다) 주계약 및 축사특약의 가입금액이 기준가액 대비 50~150% 이외의 경우

(라) 축사가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한 경우

(마) 보험청약 당시 풍수재가 발생한 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풍수재 발생으로 풍수재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은 지역 목적물

마. 말

(1) 인수절차

(가) 양축가 가입 청약

(나) 현지 보험목적물(말 및 축사) 확인



(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설계서 작성

- ① 말 건강진단서 ② 신분증 사본
- ③ 건축물 대장(or 가설건축물 대장)
- ※ 축사특약 가입시 첨부

(라) 청약서 작성

(마) 보험료 납입, 보험증권 발급 및 교부

- ▶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X 보험요율
- ▶ 농가납입보험료 = • 가입금액 4,000만원 이하는 50%,
•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금액에 해당되는
보험료의 35%만 국고지원
- ※ 외국산 경주마의 경우에는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

(바) 보험증권 발급 및 교부

(2) 보험요율 (주계약만 동일, 특약요율 상이)

(가) 기본요율 (2013년 기준)

(단위 : %)

구분	주계약				가축특약		축사특약							
	종빈마	경주마 일반마	일반마	종모마	말운송담보	씨수말 번식첫해	1지역				2지역			
							1급	2급	3급	4급	1급	2급	3급	4급
요율	8.73	13.307	8.434	구득	0.386	구득	0.809	1.319	1.402	1.491	0.818	1.331	1.412	1.499

○ 지역구분

- ① 1지역 : 서울, 대구, 대전, 경북, 충남, 충북, 전북, 세종
- ② 2지역 :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남, 전남, 경기, 강원, 제주

○ 건물에 따른 위험급수 (☞ 축사특약 부문 참조)

(나) 단기요율

※ LIG손보 미적용

- 가축재해보험요율은 1년을 기준으로 한 요율이며, 보험 기간이 1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단기요율 적용

○ 단기요율표

보험기간	단기요율	보험기간	단기요율	보험기간	단기요율
15일 까지	15%	4개월 까지	50%	8개월 까지	80%
1개월 까지	20%	5개월 까지	60%	9개월 까지	85%
2개월 까지	30%	6개월 까지	70%	10개월 까지	90%
3개월 까지	40%	7개월 까지	75%	11개월 까지	95%

(다) 계속계약요율

※ LIG 손보 미적용

- 동일한 보험자와 동일구내의 위험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험계약을 할 경우에는 적용요율의 5% 할인 적용
- 계속계약 할인율은 보험기간이 1년인 보험계약에 한하며, 계약 만료일 60일전 또는 계약만료 후 30일 이내에 적용

○ 계속계약 회차별 할인율

구 분	할인율	비 고
1회차	0%	신규계약
2회차 이상	5%	2년이상 계속계약

(3) 기준가액 및 가입금액 결정 ※ LIG손보 현행 약관기준 보상

(가) 주계약

① 일반마

구입 방법	내 용	가액 산정	가입한도	
			1,2년차	3년차이상
경매 또는 외산마	○ 만 6개월 이상되고 한국마사회 말 <u>혈통정보에서 용도미정인 말(馬)로서</u> 경매 또는 외산마로 도입된 말	경매 또는 도입 가격	5,000만원	계약불가
개인 거래	○ 만 6개월 이상되고 한국마사회 말 <u>혈통정보에서 용도미정인 말(馬)로서</u> 개인거래로 거래된 말	개별 거래 가격	5,000만원	계약불가
기타	○ 만 6개월 이상되고 한국마사회 말 <u>혈통정보에서 용도미정인 말(馬)로서</u> 경매 또는 개인거래되지 않은 말	농협과 협의한 가격	5,000만원	계약불가

※ 가입한도 초과 금액은 본부 인수심사 후 가입 여부 결정

② 경주마

구입 방법	내 용	가액 산정	가입한도		
			경주마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상
경매 또는 외산마	○ 경주마 등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주마로서 <u>경매로 구입한 말(馬) 또는 외국도입마</u>	경매 또는 도입 가격	5,000만원	5,000만원	인수제한
개인 거래	○ 경주마 등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주마로서 <u>개별거래로 구입한 말(馬)</u>	개별 거래 가격	5,000만원	5,000만원	인수제한
기타	○ 만 16개월 이상된 말로서 경매나 개별거래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주마(馬)	농협과 협의한 가격	5,000만원	5,000만원	인수제한

※ 가입한도 초과 금액은 본부 인수심사 후 가입 여부 결정

③ 종마 [종빈마(씨암말), 종모마(씨수말)]

구 분	내 용	산정 방법	가입 한도	
			3년이내	10년이내
종빈마 (씨암말)	○ 경주마를 생산하기 위해 개인매매 등을 통해 구입한 암말로서 번식 등록일로부터 만 10년 이내 말	개별 구입 가격	2,000만원	1,000만원
	○ 경주마를 생산하기 위해 경매나 외국에서 도입한 암말로서 번식등록일로부터 만 10년 이내 말	도입/ 경매 가격	5,000만원	2,000만원
종모마 (씨수말)	○ 경주마를 생산하는데 쓰기 위해 도입한 수말	도입 가격	한도없음	한도없음 (가입금액초과시 인수제한)

※ 가입한도 초과 및 인수제한 물건은 본부(본사) 인수심사 후 가입 여부 결정

(나) 말운송위험보장특약

- 주계약 가입금액과 동일

(다) 씨수말 번식첫해 선천성 불임 확장보장특약

- 주계약 가입금액과 동일

※ 종모마(씨수말)만 가입 가능

(4) 인수 제한 계약

(가) 경주마 중 경주에 장기간 출주하지 않거나, 요양중인 경우

(나) 최근 경주실적이 부진한 경우

(다) 생후 6개월 미만 자마인 경우

(라) 종빈마(암말)의 경우 가입일 현재 또는 가입일 직전년도에 수정이 안된 경우

(마) 개체별 심사결과 보험에 가입코자 하는 말이 병상,노령, 발육부진, 쇠약, 기형, 악습이 심한 경우

(바) 종빈마로서 가입당시 2년이내에 번식장해 또는 임신이 안된 암말

- (사) 종모마(씨숫말)로서 정액불량, 교미불량, 무정자증 등으로 수정이 안되는 말
- (아) 사육장소 내 일부 축사만 가입하는 경우
 - ☞ 가축재해보험은 사육장소내 모든 축사를 가입하여야 함
 - 단, 축사의 경우 가축이 없는 관리사 및 퇴비사는 가입제외할 수 있음
- (자) 과거 손해율(피보험자기준)에 따른 할증이 150%인 경우
 - ☞ 과거 5년간 손해율이 500%이상으로 150%할증이 적용 된 계약
- (차) 축사가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한 경우
- (카) 보험청약 당시 풍수재가 발생한 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풍수재 발생으로 풍수재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은 지역 목적물

마. 기타가축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1) 인수절차

(가) 양축가 가입 청약

(나) 현지 보험목적물(기타가축 및 축사)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슴」 이표번호 확인 및 개체별 사진촬영 - 환축, 병상, 노령, 발육부전, 쇠약, 기형, 악습이 심한 것은 가입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 사육두수 확인 및 목장 전체 사진촬영 - 환축, 병상, 노령, 발육부전, 쇠약, 기형, 악습이 심한 것은 가입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 사육두수 확인 및 소재지 사진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끼」 사육두수 확인 및 소재지 사진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소리」 사육두수 확인 및 소재지 사진촬영

(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설계서 작성

- ① 개체별 사진 ※ 사슴 가입 시 첨부
- ② 신분증 사본 ③ 건축물 대장(or 가설건축물 대장)
 ※ 축사특약 가입 시 첨부

(라) 청약서 작성, 보험료 납입, 보험증권 발급 및 교부

- ▶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X 보험요율
- ▶ 농가납입보험료 = 보험료 ÷ 2 (50% 정부보조)

(2) 보험요율 (주계약만 동일, 특약요율 상이)

(가) 기본요율 (2013년 기준)

(단위 : %)

구분	주계약					축사특약							
						1지역				2지역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1급	2급	3급	4급	1급	2급	3급	4급
요율	13.859	10.237	2.661	1.446	0.231	0.809	1.319	1.402	1.491	0.818	1.331	1.412	1.499

○ 지역구분

- ① 1지역 : 서울, 대구, 대전, 경북, 충남, 충북, 전북, 세종
- ② 2지역 :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남, 전남, 경기, 강원, 제주

○ 건물에 따른 위험급수 (☞ 축사특약 부문 참조)

(나) 단기요율

○ 가축재해보험요율은 1년을 기준으로 한 요율이며, 보험기간이 1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단기요율 적용

○ 단기요율표

보험기간	단기요율	보험기간	단기요율	보험기간	단기요율
15일 까지	15%	4개월 까지	50%	8개월 까지	80%
1개월 까지	20%	5개월 까지	60%	9개월 까지	85%
2개월 까지	30%	6개월 까지	70%	10개월 까지	90%
3개월 까지	40%	7개월 까지	75%	11개월 까지	95%

- (다) 계속계약요율 ※ LIG손보는 우량할인율 적용
- 동일한 보험자와 동일구내의 위험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험계약을 할 경우에는 적용요율의 5% 할인 적용
 - 계속계약 할인율은 보험기간이 1년인 보험계약에 한하며, 계약 만료일 60일전 또는 계약만료 후 30일 이내에 적용
 - 계속계약 회차별 할인율

구 분	할인율	비 고
1회차	0%	신규계약
2회차 이상	5%	2년이상 계속계약

(3) 기준가액 및 가입금액 결정

(가) 주계약

축종	세부축종	기준가액	비고
사슴	꽃사슴	협정가액	권장협정가액: 500,000원
	레드디어	협정가액	권장협정가액: 1,000,000원
	엘크	협정가액	권장협정가액: 2,000,000원
양	면양	협정가액	권장협정가액: 200,000원
	산양	협정가액	권장협정가액: 500,000원
	꿀벌	협정가액	권장협정가액: 150,000원
	토끼	협정가액	권장협정가액: 10,000원
	오소리	협정가액	권장협정가액: 200,000원

※ 기타가축의 경우는 전 축종 협정가액으로 가입

- (나) 사망·긴급도축확장보장특약 (사슴, 양, 오소리만 자동 추가가입)
- 주계약 가입금액과 동일

(4) 인수 제한 계약

- (가) 사육장소 내 일부 기타가축 또는 축사만 가입하는 경우
- ☞ 가축재해보험은 사육장소 내 모든 가축 또는 축사를 가입하여야 함. 단, 축사의 경우 가축이 없는 관리사 및 퇴비사는 가입제외 할 수 있음

- (나) 축사가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한 경우
- (다) 보험청약 당시 풍수재가 발생한 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풍수재 발생으로 풍수재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은 지역 목적물
- (라) 과거 손해율(피보험자기준)에 따른 할증이 150%인 경우
 - ☞ 과거 5년간 손해율이 500%이상으로 150%할증이 적용 된 계약
- (마) 주계약 및 축사특약의 가입금액이 기준가액 대비 50~150% 이외의 경우

<가축재해보험 계약자별 할인·할증제도 도입방안>

- 현시점에서 각 사업자가 보유한 계약자별 실적을 일괄적으로 집적 관리 조치가 곤란한 상황이므로, 즉시 도입 곤란
 - 계약자 정보가 일괄집적(보험개발원 등)되지 않아 손해율산출 및 제공 곤란
 - 계약자(보험금 수령자 등 포함)로부터 할인·할증 목적으로 개인정보 집적 및 제공 동의가 부재(특히, 개인식별정보)한 상황
- 앞으로, 계약자(보험금 수령자 등 포함)로부터 제공기관에 개인정보 집적 및 제공 동의 받고,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에 최소 3년 이상 통계 집적 및 검증, 계약자별 손해율 산출 후 할인·할증제도 도입 검토

<도입 가능 여부>

- 가축재해보험에서는 보험목적물인 가축(축사 포함)을 '인보험'이 아닌 '재물'보험 성격으로 판단
 - 보험계약자의 위험관리능력에 따라 손해율 관리가 가능하므로 손해율 실적에 따른 할인·할증제도를 보험종목 성격에 따라 도입하고 있음,
 - 반면, 인보험은 질병이나 상해사고 등 담보에 대해 계약자 위험관리 범위 밖으로 판단하여 도입하고 있지 않음
- 타 재물보험(화재보험의 우량물건 할인, 적하, 선박보험)에서 계약자별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단, 상해, 질병보험 등 인보험 등에서는 위험부문이 아닌 사업비부문에 무사고 할인을만 적용하고 있음

4 가축재해보험 약관 구성 및 주요내용

가. 약관구성

(1) 보통약관

(가) 일반조항

- ▶ 계약의 성립, 약관,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보상하는 손해 손해통지 및 조사, 계약의 소멸·시효, 대위권, 분쟁 조정 및 관할법원, 손해배상책임 등

(나) 부문별(축종별) 조항

- ▶ 소, 종모우, 돼지, 가금(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 말, 기타가축(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

(2) 특별약관

(가) 일반조항 특약

- ▶ 축사(畜舍), 화재대물배상책임, 협정보험가액, 공동인수, 지정 대리청구서비스,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나) 부문별(축종별) 조항 특약

- ▶ (소)도체결합보장, (돼지)질병위험보장 및 축사휴지위험보장 (돼지·가금)전기적장치위험보장, 폭염재해보장, (말)췌수말 변식첫해 선천성불임확장보장, 말 운송위험 확장보장, 경주마 부적격 및 보험기간 설정 (기타가축)사망·긴급도축 확장보장 특별약관

나. 보통약관

(1) 일반조항

(가) 보험계약의 성립

- 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성립
- 보험료 전액이나 제1회 보험료 또는 농가부담보험료를 받은 보험회사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을 통지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봄

(나) 약관의 교부

- 계약체결 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
- 보험회사가 약관을 교부·설명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환급하여야 함

(다) 청약의 철회

-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청약철회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함

(라)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 포함)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함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한 의무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 시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알려야 하며, 위반 시에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마)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을 맺은 후에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함.
 -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 수용장소로부터 반경 10km이내 지역에서 가축전염병발생(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질환포함) 또는 원인모를 질병으로 집단폐사가 이루어진 경우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 보험의 목적이 도난 또는 행방불명되었을 경우
 - 보험의 목적이 의외의 재난이나 위험에 의해 구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 보험의 목적의 수가 증가되거나 감소되었을 때
 -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바) 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사) 타인을 위한 계약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 반드시 보험사에게 이를 알려야 함
- 보험사고 시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아) 계약의 무효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 보험료의 환급

-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음
- 보험계약자 측의 책임 없는 사유
 - 무효의 경우 :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환급
 - 효력 상실, 해지의 경우 : 미경과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 보험료의 환급
- 보험계약자 책임있는 사유의 경우, 경과기간에 대해 단기요율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환급. 다만, 보험계약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음

(차) 손해의 통지 및 조사

- 보험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보험계약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함

(2) 부문1: 소(牛)

(가) 보험목적의 범위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계약에서 정한 소(牛)의 소재지에서 사육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牛)
 - (1) 한우, 육우. 다만, 생후 만 2개월 이상 만 13세 미만
 - (2) 젖소. 다만, 생후 만 2개월 이상 만 8세 미만

(나) 보상하는 손해

- 사망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수의학적으로 구할 수 없는 상태)
- 긴급도축 (사육하는 장소에서 부상, 난산, 산욕마비가 발생한 소(牛)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 도난, 행방불명

(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사료공급 및 보호, 피난처제공, 수의사의 검진, 소독 등 사고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당연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 개체표시인 귀표가 오손, 훼손, 멸실되는 등 목적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 외과적 치료행위로 인한 사망 손해. 다만, 보험목적의 생명유지를 위하여 질병, 질환 및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자격 있는 수의사가 확인하고 치료한 경우는 제외
- 정부, 공공기관, 학교 및 영구기관 등에서 학술 또는 연구용으로 공여하여 발생한 손해

(3) 부문2: 돼지(豚)

(가) 보험목적의 범위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계약에서 정한 돼지의 소재지에서 사육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돼지
 - (1) 웅돈 (종모돈) (2) 모돈 (종빈돈)
 - (3) 비육돈 (4) 육성돈 (후보돈 포함)
 - (5) 자돈 (6) 기타돼지

(나) 보상하는 손해

- 보험의 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 및 설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등의 풍재 또는 수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 목적이 사망 또는 맥박, 호흡 그 외 일반증상이 수의학적으로 사망이 확실시 되는 경우 그 손해

(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댐 또는 제방 등의 붕괴로 생긴 손해
-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 움으로써 생긴 손해
- 추위, 서리, 얼음으로 생긴 손해
- 발전기, 여자기,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장치 또는 설비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
- 사료공급 및 보호, 피난처제공, 수의사의 검진, 소독 등 사고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당연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 모돈의 유산으로 인한 태아사망 또는 성장저하로 인한 직·간접 손해
- 보험목적이 도난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4) 부문3: 가금(家禽)

(가) 보험목적의 범위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계약에서 정한 가금의 소재지에서 사육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금
 - (1) 닭 (육계, 산란계, 종계)
 - (2)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

(나) 보상하는 손해

- 보험의 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 및 설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등의 풍재 또는 수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 목적이 사망 또는 맥박, 호흡 그 외 일반증상이 수의학적으로 사망이 확실시 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

(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댐 또는 제방 등의 붕괴로 생긴 손해
-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 옴으로써 생긴 손해
- 추위, 서리, 얼음으로 생긴 손해
- 발전기, 여자기,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장치 또는 설비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
- 사료공급 및 보호, 피난처제공, 수의사의 검진, 소독 등 사고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당연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 성장저하, 산란율 저하로 인한 직·간접 손해
- 보험목적이 도난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5) 부문4: 말(馬)

(가) 보험목적의 범위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계약에서 정한 말(馬)의 소재지에서 사육하는 다음 각호 해당하는 말(馬)
 - (1) 종빈마 (씨암말) (2) 종모마 (씨숫말)
 - (3) 경주마 (4) 육성마

(나) 보상하는 손해

- 사망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수의학적으로 구할 수 없는 상태)
- 긴급도축 (사육하는 장소에서 부상, 난산 산욕마비, 산통, 경주마의 실명이 발생한 말(馬)을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 불임 (종빈마의 생식기관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영구적인 번식장애)

(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사료공급 및 보호, 피난처제공, 수의사의 검진, 소독 등 사고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당연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가축의 번식장애, 경제능력저하 또는 전신쇠약, 성장지체·저하에 의해 도태시키는 경우
- 개체표시인 귀표가 오손, 훼손, 멸실되는 등 목적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 외과적 치료행위로 인한 사망 손해. 다만, 보험목적의 생명유지를 위하여 질병, 질환 및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자격 있는 수의사가 확인하고 치료한 경우는 제외
- 정부, 공공기관, 학교 및 영구기관 등에서 학술 또는 연구용으로 공여하여 발생한 손해
- 보험목적이 도난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5) 부문5: 기타가축

(가) 보험목적의 범위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계약에서 정한 가축의 소재지에서 사육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축
 - (1) 사슴 (꽃사슴, 엘크, 레드디어)
 - (2) 양 (산양, 면양)
 - (3) 꿀벌
 - (4) 토끼
 - (5) 오소리

(나) 보상하는 손해

- 보험의 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 및 설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등의 풍재 또는 수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 목적이 사망 또는 맥박, 호흡 그 외 일반증상이 수의학적으로 사망이 확실시 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

(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댐 또는 제방 등의 붕괴로 생긴 손해
-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 음으로써 생긴 손해
- 추위, 서리, 얼음으로 생긴 손해
- 발전기, 여자기,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장치 또는 설비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
- 벌의 경우 CCD (Colony Collapse Disorder: 벌떼폐사장애), 농약, 밀원수(蜜源樹)의 황화현상, 공사장의 소음, 전자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꿀벌의 손해가 없는 벌통만의 손해
- 보험목적이 도난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다. 특별약관

(1) 돼지 질병위험보장 특별약관 (돼지부문)

(가) 보상하는 손해

- 보험목적이 다음 각 호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에 보험 목적이 사망 또는 맥박, 호흡 그 외 일반증상으로 수의학적으로 구할 수 없는 상태가 확실시 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

- (1) 전염성위장염(Transmissible gastroenteritis, TGE)
- (2) 돼지유행성설사병(Porcine epidemic diarrhea, PED)
- (3) 로타바이러스감염증(Rota virus)

(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국가,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사법기관 등의 결정여부에 관계없이 고의적인 도살
- 질병의 원인이 이 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2) 돼지 축산휴지위험보장 특별약관 (돼지부문)

(가) 보상하는 손해

- 보험기간 동안에 보험증권에 명기된 구내에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영위하는 축산업이 중단 또는 휴지되었을 경우에 생긴 손해액을 보상

(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사용, 건축, 수리 또는 철거를 규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및 이에 준하는 명령

(3) 전기적장치 위험보장 특별약관 (돼지, 가금부문)

(가) 보상하는 손해

- 발전기, 여자기,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장치 또는 설비 중 그 전기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또는 변조되어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

(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자연열화의 손해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
- 전기적장치 고장에 따라 사고발생 때부터 24시간이 지나 나타나는 가축의 폐사, 성장저하, 유산, 산란율저하 등 모든 직·간접 손해
- 전기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 없이 정전, 단전 등 외부적인 원인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한 손해

(4) 폭염재해보장 추가특별약관 (돼지, 가금부문)

(가) 보상하는 손해

- “폭염(暴炎)”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
- 폭염특보 발령 전 24시간 전부터 해제 후 24시간 이내에 폐사되는 보험목적에 한하여 보상.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폭염(暴炎)”이란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내려지는 폭염특보를 말함

1. 폭염주의보: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가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 폭염경보: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가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폭염으로 인하여 전기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또는 변조되어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
- 폭염 해제 24시간 이후에 발생한 가축의 폐사, 성장저하, 유산, 산란을 저하 등 모든 직·간접 손해
- 전기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 없이 정전, 단전 등 외부적인 원인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한 손해

(5) 씨수말 번식컷헤 선천성 불임 확장보장 특별약관 (말 부문)

(가) 보상하는 손해

- 보험목적이 보험기간 중 불임이라고 판단이 된 경우에 보상

(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씨수말 내·외부 생식기의 감염으로 일어난 불임
- 씨암말의 성병으로부터 일어난 불임
- 어떠한 이유로든지 교배시키지 않아서 일어난 불임
- 씨수말의 외상, 질병, 전염병으로부터 유래된 불임

(6) 말(馬)운송위험 확장보장 특별약관 (말 부문)

(가) 보상하는 손해

- 운송 중에 “말(馬) 보통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운송 차량의 덮개 또는 화물의 포장불완전으로 생긴 손해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의 적재중량과 적재용량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으로써 생긴 손해

(7) 축사 특별약관

(가) 보험목적의 범위

-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사육과 관련된 건물로 함
- 보험목적은 아래의 물건을 포함
 - (1) 건물의 부속물: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2) 건물의 부착물: 게시판, 네온싸인, 간판,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 (3) 건물의 부속설비: 전기·가스설비, 급·배수설비, 냉·난방설비, 급이기, 통풍설비, 착유기, 원유냉각기, 분만틀, 가금사의 기계류(케이지, 부화기, 분류기 등) 건물의 주 용도에 적합한 부대시설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보상하는 손해

- 보험의 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 및 풍재 또는 수재, 설해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
 - (1) 화재에 따른 손해
 -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 (3)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입은 손해
 - (4) 설해에 따른 손해
 - (5) 화재 또는 풍수재, 설해에 따른 피난손해
- “보상하는 손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험의 목적에 대한 실제의 잔존물 제거비용을 보상

(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화재 또는 풍수재, 설해 발생 시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 댐 또는 제방 등의 붕괴로 생긴 손해
-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 음으로써 생긴 손해
- 추위, 서리, 얼음으로 생긴 손해
- 발전기, 여자기,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장치 또는 설비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

(라) 가입절차 및 요령

○ 가입 절차

- (1) 가입 하고자 하는 축사 가입 담보 물건에 대한 정보 내역 및 국고지원금 대상여부 확인을 건축물대장 및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제출-> 축산업 허가제 실시에 따른 서류 간소화 제도 요청 필요

*** 축산업 허가제 개요**

- ▶ 가축사육업 허가제 도입시기와 대상
 - 2012년 전업농 x 2 (축종별 규모) 한육우 100두 이상
 - 2013년 전업농 대상
 - 2014년 준전업농 대상
 - 2015년 소규모농가(사육면적 50m² 이상) 한육우 7두이상
- ▶ 향후조치 : 대상농가가 확대되어지는 관계로 축산업 허가제 도입취지와 더불어 소규모농가 축사가입(무허가 축사개념 완화적용) 지원규정을 매년 시행지침 반영(필요)
- ▶ 제출서류 : 축산업허가증, 축산업허가 신청서, 축산업등록증, 건축물대장,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등

- (2) 가입 대상인 경우 가입질문서 및 축사배치도 제출 후 가입 전적 안내
- (3) 가입설계서 안내 및 가입 요청 확인 후 청약서 안내
- (4) 주 계약과 연동하여 보험료 입금 후 증권 발급

(마) 보험가입 금액

- 보험가입금액 산정 시 참고 할 금액은 보험사고 시 보험사가 평가하는 보험가액 기준에 근접한 금액으로 가입할 필요

(8)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가) 보상하는 손해

- 보험증권에 기재된 축사구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 보증보험료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지진,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IV

손해평가 및 보상

IV. 손해평가 및 보상

< 요약 >

◆ 손해평가 개요

- ▶ 정의, 손해평가인의 임무 및 자격조건, 위촉 및 위촉취소

◆ 보험사고 처리절차

- ▶ 사고발생, 사고접수 및 배당, 심사 및 확정, 보험금 지급

◆ 보험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

- ▶ 보험사고 접수 및 처리절차, 보험금 청구서류 및 서류확인
개인정보 관리 등

◆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 ▶ 보험목적물에 수량과 적용가격(단가)를 곱하여 산정, 평가

◆ 보험금 지급·심사

- ▶ 보험금 지급기준 및 심사범위, 심사방법, 유의사항 등

◆ 보험사기 방지

- ▶ 보험사기 정의 및 성립요건, 사기행위자, 보험사기 조치사항
및 방지의무

◆ 구상권 행사

- ▶ 구상권 개요(관련 법규 및 유형), 구상권 행사절차(절차 및
종결, 채권추심 및 수수료)

1

손해평가 개요

가. 용어 정의

- (1) '손해평가'라 함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 (2) '손해평가인'이라 함은 법 제11조제1항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자 중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3) '손해평가보조인'이라 함은 전호에서 정한 손해평가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함

나. 손해평가인의 임무

- (1) 피해사실 확인
- (2)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 (3) 기타 손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다. 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법 제12조제1항)

- (1) 재해보험의 대상 가축을 5년 이상 사육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 (2) 공무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축사육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지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할 경력이 있는 사람
- (3) 교원으로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가축사육 분야 관련 과목을 5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가축사육 관련학을 3년 이상 가르친 경력이 있는 사람

-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영농지원 또는 보험·공제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가축사육 관련학을 전공하고 축산전문연구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7)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술사

라. 손해평가인의 위촉(제11조제1항)

- (1)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거쳐 그 자격을 표시할 수 있는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하여야 함
- (2) 재해보험사업자는 피해 발생 시 원활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농어업재해보험이 실시되는 시·군·자치구별 보험가입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하여야 함
- (3)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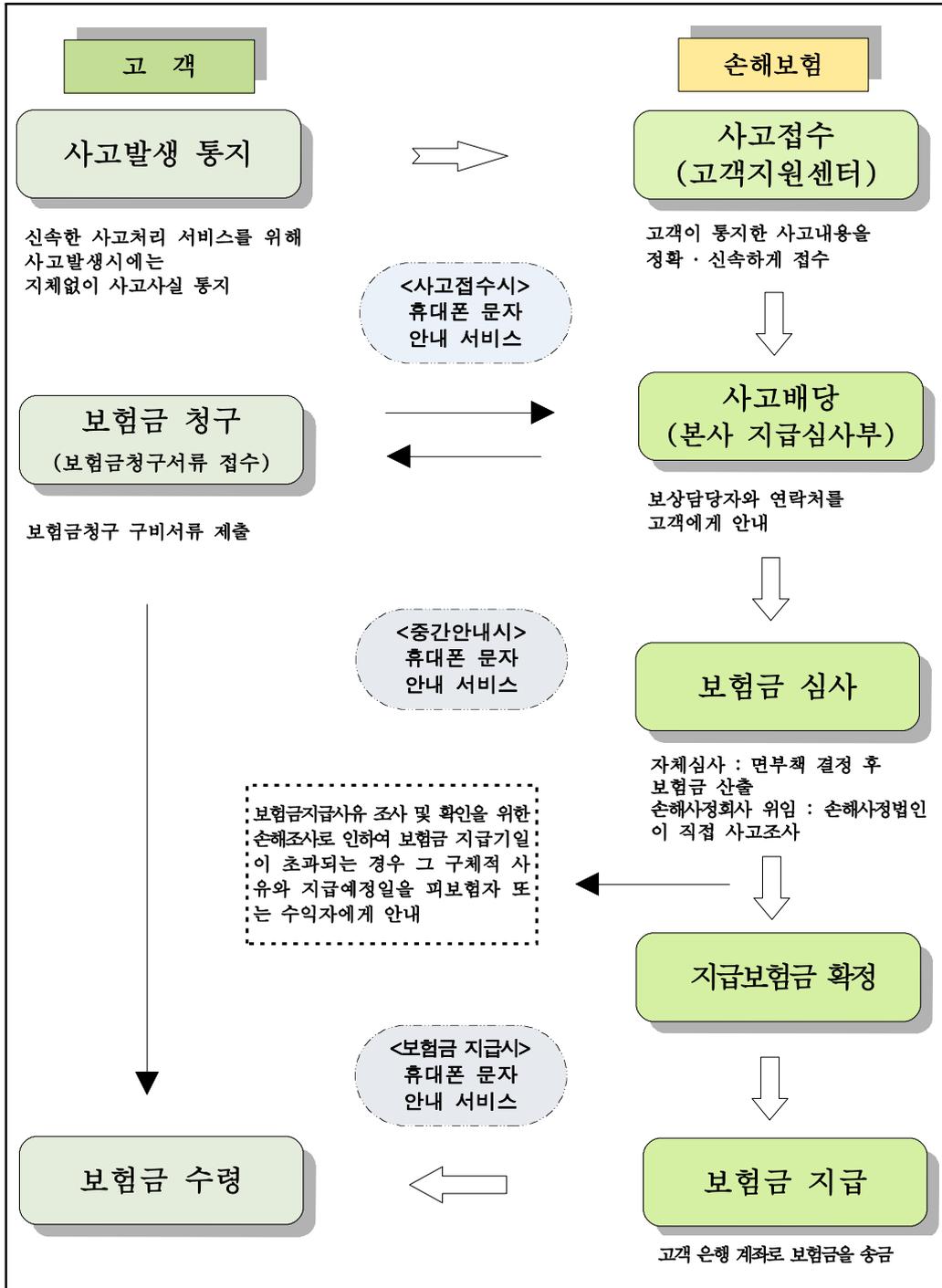
마. 손해평가인의 위촉 및 취소

- (1)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위촉당시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함
 -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 법 제30조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라) 동 조에 따라 위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
- (2)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위축을 해지할 수 있음
- (가) 법 제11조제2항 및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 한 때
 - (나) 법 및 이 요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 (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때
- (3)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손해평가인에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 (4)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해촉하거나 손해평가인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그 뜻을 손해평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2 보험사고 손해평가 및 지급심사 절차

《NH농협손보》



《LIG 손보》

구분	계약자/손해사정인			손해사정팀(보험사)		
순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단계	사고 접수	손해사정인 배정 방문단계	위탁손사 최초보고서 작성 및 피드백	중간보고서 및 손해액평가	지급종결보고 및 보험금지급	보험금 지급 안내 및만족도 피드백
확인 사항	<p>A.우연한 사고발생의 경우(화재, 풍수해, 전기적 사고)의 경우 육성센터 지역관리 팀장 등 보험 모집 인사고경위서 접수</p> <p>B.자연재해 및 기후와 연관된 폭염, 설해 등 빈번한 사고의 경우 LIG 콜센터 접수(1544-0114)</p>	<p>축종별 전문손해사정 업체 분류에 따른 전문 손해사정인을 배정하여 최소 사고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 배정 완료하고, 최소 D+2일 안에 사고 농가 방문</p>	<p>최초 보고서를 D+5일 이내 제출 완료 (초동 조치 완료) 손해사정인 배정과 동시에 관련 계약의 축종별 지역관리 팀장과 동행방문이 가능 하도록 일정 협의 진행 (손해사정인 방문이 늦어질 경우 선 방문 일정 협의 진행)</p> <p>초기 대응 시 영업 담당자 등 고객불만과 사고 접수과정의 불만 관련 내용 검토</p>	<p>A. 손해평가 진행 단계 시, 필요서류 요청과 추정보험금 산정 등의 평가작업을 진행 하고 최소 D+15일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통해 보험금 지급관련 내용을 고객에게 피드백을 준 후 이견이나 서류 미비 등에 대해 업무 피드백을보험사 통보</p> <p>B. 금액 산정 시, 보험목적물 및 재해 유형별,축종별 구분에 의한 관리시스 템을 통해 단가, 시세 등 기준에 대해 보험 약관 기준 산출. 단가산출에 대한 이견 있을경우에 대해서도 업무 피드백을 통해 고객과 사전 협의</p>	<p>업무피드백의 사유가 없는 건에 한해서는 늦어도 D+20일 안에 늦어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위탁 손사는 보험금 지급 관련 지급종결 보고서를 제출 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체한 경우 위탁 손사 평가시 반영.</p> <p>보험금 지급 시 보험금 청구서 작성 및 위임장(질권사항) 확인을 진행하고,관련 보험금 수령 주체가 이상 없는지 최종 확인 후 지급진행.</p>	<p>보험금 수령을 받는 주체인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시 보험금 지급 안내문자 발송을 받으며, 보험금 지급 후 10일 이내 보상처리 만족도에 대한 피드백 설문 실시.</p>
일정	최소발생 후 D+1일 이내 접수 완료	최소 발생 후D+2일 이내 방문 완료	최소 발생 후D+5일 이내 방문 완료	최소 발생 후D+15일 이내 방문 완료	최소 발생 후D+20일 이내 방문 완료	보험금 지급 후D+10일 이내 방문 완료

※ 보험금 지급 시 필요서류 : 보험사고 접수지, 보험증권 자료,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통장 사본 등

3 보험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

가. 보험사고 접수 및 처리(1일)

구분	주요내용
접수대상 및 범위	① 사고보험금 청구 전 건(件) a. 각종 사고(화재, 풍수해, 전기적사고 등) : 사고발생 시 피해대상가능 사고경위서 접수(유선 또는 문서), 피해규모 파악 및 손사 배정(1일) b. 자연재해(폭염, 태풍, 설해 등) : 일정규모 이상 건은 콜센터 접수 및 대응(일정규모 이상), 손사 배정 및 피해가능 방문일정 협의 ② 계약이 체결 사무소와 관계없이 사고보험금 접수업무 처리
업무처리 절차	① 제출서류에 따라 전산접수 입력 및 접수증 교부 ② 사고보험금 처리절차 안내, 청구서류 지급심사부 심사 의뢰
구비서류 확인	① 청구유형별로 사고보험금 구비서류 확인 후 사고보험금 전산접수. 단, 손해사정법인을 통한 신속한 조사 사고는 접수된 내용만 전산접수 가능 ② 구비서류 확인 후 보험금 청구서류를 출력하여 고객에게 제공하여 작성
청구서 작성	①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외 타인 내방시 보험금 청구서류는 작성서류 제출안내 ② 보험계약 및 인적사항, 사고사항 및 보험금 수령 계좌 및 개인 신용정보 이용·수집·제공, 조회동의는 보험금 심사 및 지급 등 중요사항 작성
전산입력 및 안내	① 사고보험금 청구건 처리 (사고접수지 대체 가능) 고객이 작성한 보험금 청구서에 의거 사고일시·시간을 입력, 조회 후 계약목록 체크 및 이미지접수 내역을 저장하는 순으로 진행 ② 고객안내 사항 고객에게 접수증, 개인[신용]정보 처리 및 기초정보 설명서 및 고객보관용 접수증, 고객안내문을 교부하고, 금융감독원 보험금 지급에 관한 모범규준에 있는 아래 사항으로 반드시 이행하도록 함.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 보험금 접수 시 보험금 청구에 관한 기초정보 가. 계약자 지급가능계약, 예상 보험금액, 심사부서 및 연락처 나. 예상 심사기간 및 지급일, 계약사항, 개인정보 처리내용 등 ▶ 실손의료보험이 중복가입된 경우 보험금 청구관련 유의사항 가. 보험금이 비례 분담될 수 있다는 사실, 보험사고 심사 및 조사업무 제3자 위탁할 수 있다는 사실 등 나. 지급지연 시 가지급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 타 보험사 가입내역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 등 </div>

나. 보험금 청구접수 시 받을 서류(신청서류)

소	<p>① 공통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이용·수집 조회 동의 송금계좌번호 포함) 2. 청구인 신분증 사본(쇠고기 개체 식별번호 정보조회에서 피보험자 확인 시 생략가능) 3. 현지사고 조사표 : 손해평가인 및 보험계약자 자필서명 날인 4. 가축목적물 조회표 5. 사고사진 : 이표확인 가능한 사고시점의 두부 및 전신사진 각 1매 포함 6.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정보조회 : 쇠고기 이력시스템에서 폐사 또는 도축출하 등록 확인 후 출력 <p>② 사고유형별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긴급도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진단서 : 수의사 직인 또는 자필서명 확인 나. 매매계약서 또는 도축장 정산서 : 매매업자와 또는 도축장의 자필서명 확인 다. 도축검사증명서, 도축대상 기립불능소 확인서 : 매매계약서 제출건 중 심사자 추가 요청시 2. 폐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검안서 : 수의사 직인 또는 자필서명 확인 나. 소각(랜더링) 또는 매장증명서 다. 도체결합 : 도축장 정산서(사고사진 생략) 															
가축 (소 제외)	<p>① 공통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이용·수집, 조회 동의, 송금계좌번호 포함) 2. 청구인 신분증 사본 (농기계보험 제외)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p>② 기타 서류 관련 궁금한 사항은 손해콜센터(1644-9000)로 문의한다.</p> <p>③ 사고보상 절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STEP 1</th> <th>STEP 2</th> <th>STEP 3</th> <th>STEP 4</th> <th>STEP 5</th> </tr> </thead> <tbody> <tr> <td>사고발생통보 및 보험금 청구</td> <td>보상팀 및 보상담당자 지정</td> <td>손해사정법인 또는 자체심사</td> <td>보험금심사</td> <td>보험금 심사팀</td> </tr> <tr> <td>관련서류 제출</td> <td>보상여부 검토 및 사고확인</td> <td>보험금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손해사정법인에게 업무 위탁할 수 있음</td> <td>지급여부 조사</td> <td>보험금결정 및 결과안내</td> </tr> </tbody> </table>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사고발생통보 및 보험금 청구	보상팀 및 보상담당자 지정	손해사정법인 또는 자체심사	보험금심사	보험금 심사팀	관련서류 제출	보상여부 검토 및 사고확인	보험금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손해사정법인에게 업무 위탁할 수 있음	지급여부 조사	보험금결정 및 결과안내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사고발생통보 및 보험금 청구	보상팀 및 보상담당자 지정	손해사정법인 또는 자체심사	보험금심사	보험금 심사팀												
관련서류 제출	보상여부 검토 및 사고확인	보험금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손해사정법인에게 업무 위탁할 수 있음	지급여부 조사	보험금결정 및 결과안내												

다. 사고보험금 접수 시 확인할 사항

구분	주요내용
수익자 일치여부	① 보험금 청구서 및 송금 요청서의 고객작성란은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대리인이 자필 서명날인, 신분증 본인여부 확인 ② 소액사고 등 심사자의 판단에 따라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사본으로 같음 【 유의사항 】 수익자(보험금을 받을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각 위임자별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 받거나, 수익자 지분별로 각각 접수 및 지급이 가능.
피보험자 일치여부	청약서, 보험가입증서 및 전산 원부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보험 사고자의 일치여부 확인
질권설정 계약여부	보험금 청구시 보험계약의 질권설정 여부를 확인한다. 질권 설정이 되었을 경우 근질권자의 위임장을 징구 첨부
위·변조 여부	청구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았는지 확인
청구서류 기재사항	① 관공서 등에서 발급한 서류는 발급기관(회사), 발급 수의사의 면허번호 성명 및 직인(서명)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 ② 기타 해당서류의 기재사항의 누락여부를 확인.
개인정보 활용동의	① 보험금 청구서 상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의 청구자(동의자) 및 수익자 체크(☑)란 누락 여부를 확인 ② 피보험자 체크(☑) 항목은 필수 기재사항, 대리인 내방시 피보험자 직접 작성서류 제출, 위임받았을 경우에 위임여부 확인

라. 청구서류 및 개인정보 관리

구분	주요내용
청구서류 (농협손보예시)	① 대리점(농·축협) 1. 청구서류는 이미지시스템에 접수, 스캔한 후 원본은 사무소 자체 보관 2. 사고접수 목록을 통해 접수 종결된 것을 확인 후 보관 3. 보험사기 조사 협조요청, 감독기관이나 농협손해의 원본서류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에 정해진 기일내 자료 제출 4. 서류보관 기간은 서류 청구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농협은행의 경우 스캔 후 청구서류 원본을 물류 처리 ③ 타 은행의 경우에는 고객지원센터에서 원본서류를 보관 ④ 고객지원센터 보관
개인정보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예방조치 등 안정성 확보 ② 서류는 절대 보험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외부로 유출은 안됨 ③ 계약자, 피보험자의 사전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 남용 해서는 안됨 ④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⑤ 기타 개인정보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 등 준수

4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 가.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
- 나.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
- 다. 가 및 나의 사고목적물의 적용가격은 보험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에서 시장가격(고시가격) 등을 감안,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 다만, 보험가입 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 보험사업자가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그 방법에 따름
- 라. 손해사정인 배정 및 현장방문

단계	처리내용	소요일
손해사정인 배정 및 현장방문	▶ 축종별 손해사정인 배정(축종별 관리 팀장 동행일정 협의), 필요시 선 방문 ▶ 사고농가 방문 및 최초보고서 제출	D+1일
최초 보고서 및 피드백	▶ 초기대응 고객불만 및 사고접수과정 불만사항 검토	

다. 위탁손사법인 손해평가 및 금액산정, 지급

단계	처리내용	소요일
손해평가 진행	▶ 손해평가 필요한 서류 요청 및 추정 보험금 산정 등 평가 실시 ▶ 중간보고서 작성, 고객 피드백 등 보완	D+15일
보험금액 산정	▶ 재해 및 사고 유형별·축종별 단가, 시세 등 보험약관 기준 산출 ▶ 산출내용 고객 사전협의(업무 피드백)	
보험금액 지급 요청 및 종결	▶ 업무피드백 후 지급 종결보고서 제출 (손사법인), 손사 평가 반영 ▶ 보험금 청구서 작성 및 위임장(질권 사항) 확인 후 보험금 지급	D+20일
지급안내 및 설문조사	▶ 보험사별 피보험자 보험금 지급 안내 ▶ 보험금 지급 보상처리 만족도 조사	지급 후 10일 이내

5 보험금 지급·심사

가. 기준 및 심사범위

구분	주요내용
처리기준	① 본사 지급심사부서에서 전 건 심사, 사고조사 및 승인 ② 청구금액 산정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청구한 사고 기준 ③ 보험종목, 담보목적물, 사고유형 등 보상과 심사방법 상이, 처리과정별 판례, 업계사례, 기존 처리내역 등 참조 심사
업무처리	① 사고보험금 청구 접수 시 받을 서류에 따라 접수 ② 모든 보험계약에 대한 사고보험금 접수가 가능하고, 접수 후에는 신속하게 이미지시스템을 통해 접수 및 관련서류를 스캔 처리.
본사심사 (농협손보)	① 전 종목
청구정보 입력범위 (농협 손보)	① 접수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청구정보 시스템 입력. ② 추가서류가 필요할 경우 고객 또는 접수 추가서류 징구. ③ 사고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고객상담 업무를 담당

나. 심사방법

구분	주요내용
보험금 지급의 면부책 판단	① 보험금 지급의 면부책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르며, 보험금 청구 서류 서면심사 및 손해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보험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지 또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결정. ② 면부책 판단의 요건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 보험기간내에 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사고 인지 여부 ▶ 원인이 되는 사고와 결과적인 손해사이 상당인과관계 여부 ▶ 보험사고가 상법과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조항 해당 여부 ▶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조항 이외에도 알릴의무위반효과에 의거 손해보상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 </div>
손해액 산정	① 손해액이란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 금액을 의미하며, 반드시 지급보험금과 일치하지는 않음 ② 재물보험인 가축재해보험은 보험목적물의 금전상 손실액을 말함
손해보상 방식	①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에 따른 손해보상방식으로는 비례 보상과 실손 보상이 있음.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 비례보상 : 손해보험에서 분손사고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액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손해를 보상하는 것. ▶ 실손보상 : 비례보상과 대비되는 손해보상방식으로, 보험자가 보험 금액을 한도로 하여 실제의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 </div> ② 손해보상방식에 따라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한 경우, 약관에 따라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
보험금 지급	① 산정한 보험금이 맞는지 확인. ② 보험금 수령자가 맞는지 확인. ③ 보험금수령자와 지급처가 동일여부 확인 후 지체없이 기일내 지급. ④ 가축보험금은 가축·축사 등 소유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민원방지	① 재심의 청구 : 고객이 보험금 부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보호실로 재청구 하는 제도 ② 민원예방협의체 : 심사부서내 민원예상건 취합 수시개최 ③ 청약 부지급심의위원회 : 내부통제 규정 및 제규정 준수사항 제 66조 『보험금지급』 의거, 분쟁 발생 방지 및 보험금지급 편의성 제고 등 * 심사자의 부지급 처리건 중 청약관련 민원 또는 분쟁이 야기된 건에 대해 위원회를 소집하여 과거 분조위 결정문과 판례 등 상이한 해석에 대한 최소한의 통일기준을 마련.

다. 유의사항

구분	주요내용
계약체결 정당성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여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본인여부 등을 확인.
고의성, 역선택 여부확인	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 허위사고 여부 확인.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 필요, 보험계약이 역선택에 의한 계약인지 확인
고지의무 위반여부	가축재해보험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15조(계약후 알릴 의무) 등
면책사유	고지의무 위반여부, 보험계약의 무효사유, 보험사고 발생의 고의성 청구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표기, 청구시효 소멸 여부를 확인.
보험금 지급 단계별 고객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험금 청구 상담시 지급심사 적정서류 및 대체가능 간이 서류 제출 안내로 보험금지연방지 및 불필요한 서류준비 등 부담 경감 ② 보험금 청구시 접수증,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 및 개인(신용) 정보처리 및 기초정보 안내장을 제공하면서 보험금 지급절차, 보험금 청구관련 유의사항 등[보험금지급업무 모범규준 금융감독원] ③ 약관에 정한 기일이내 보험금을 지급 못한 경우에 지급기일 이내 보험금 지급지연에 대한 문자메세지 또는 안내서 작성 서면 안내 ④ 보험금지급심사 진행상황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조회서비스 제공. ⑤ 보험금 심사과정 중 손해사정사, 의료심사기관 등 제3자에게 심사 업무를 위탁하여 별도심사가 진행되는 경우 문자 메세지 또는 유선 ⑥ 보험금 정상지급 시에는 보장급부별 산출근거 등 지급내역을 서면,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세지 등 ⑦ 보험금 부지급, 감액지급 또는 계약해지 시 그 사유 및 결과를 서면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세지 등.
기타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별약관을 확인하여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확인. ② 미비된 보험금 청구서류의 보완 지시로 인한 지연지급, 불필요한 민원 방지를 위해 청구서류 중 사고 유무, 손해액 또는 보험금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 일부서류를 생략 및 사고내용에 따라 추가 가능

6 보험사기 방지

구분	주요내용
보험사기 정의	<p>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제도의 원리상으로는 취할 수 없는 보험혜택을 부당하게 얻거나 보험제도를 역이용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수취할 목적으로 고의적이며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로서 형법상 사기죄의 한 유형.</p> <p style="text-align: center;"><형법 제34제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p>
성립요건	<p>①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에게 고의가 있을 것 :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의 고의에 회사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는 고의와 그 착오로 인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2가지가 있음.</p> <p>② 기망행위가 있을 것 : 기망이란 허위진술을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것. 통상 진실이 아닌 사실을 진실이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거나 알려야 할 경우에 침묵, 진실을 은폐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p> <p>③ 상대방인 회사가 착오에 빠지는 것 : 상대방인 회사가 착오에 빠지는 것에 대하여 회사의 과실 유무는 문제되지 않음.</p> <p>④ 상대방인 회사가 착오에 빠져 그 결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 : 착오에 빠진 것과 그로인해 승낙 의사표시 한 것과 인과관계 필요.</p> <p>⑤ 사기가 위법일 것 : 사회생활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기망행위는 보통 위법성이 없다고 해석.</p>
사기 행위자	<p>사기행위에 있어 권유자가 사기를 교사하는 경우도 있으며, 권유자가 개입해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에게도 사기행위가 있다면 고지의무 위반과 달리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계약을 취소 가능</p>
사기증명	<p>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사기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서 사기 사실 및 그로 인한 착오 존재를 증명해야 함.</p>
보험사기 조치	<p>① 청구한 사고보험금 지급을 거절 가능</p> <p>② 약관에 의거하여 해당 계약을 취소 가능</p>

구분	주요내용
보험사기 방지의무	<p>① 제1단계 : 인지 1. 보험금 청구 및 심사과정상 사기의심 건 접수 2. 고객/FC/기타직원을 통한 제보 접수(인터넷, 전화 등)</p> <p>② 제2단계 : 조회 1. 사고전력조회 2. 타 보험사 및 공제기관의 계약조회</p> <p>③ 제3단계 : 자료취합 사고 보험금 관련 서류 일체(사본)</p> <p>④ 제4단계 : 분석 1. 사고유형 분석(사고전력, 동일수법 등) 2. 보험가입현황(가입시기, 가입경위, 월보험료 등)</p> <p>⑤ 제5단계 : 범죄일람표 작성 1. 범죄유형에 따라 범죄일람표 작성 2. 혐의입증에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입원기록대장, 의료분석 등)</p> <p>⑥ 제6단계 : 수사의뢰 및 지원 1. 지역 및 사기혐의건을 고려한 관할경찰서, 검찰청 선정 2. 지정된 수사관 확인 및 수사일정 관련 협의 및 지원</p> <p>⑦ 제7단계 : 사건종결 및 관리 1. 사기관련자 사법처리 및 편취보험금 환입 2. 보험사기 조기경보시스템 자료 집적/데이터 관리</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민법 제 74제1조 부당이득반환 청구채권></p> <p>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p> <p>※ 소멸시효 : 10년</p> </div>

7 구상권 행사

가. 구상권 개요

구분	주요내용
의의	<p>구상권이란 함은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가 제3자(타인)에게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취득하여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한다.</p>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 제682조(보험자 대위)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을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구상권 발생유형	<p>구상권의 발생 유형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차인의 사용공간에서 발생한 화재 2. 방화로 인한 화재 3. 공사업체 작업 중(용접작업 등) 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 4. 생산물(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 5. 중복보험 사고건에 대해 선 보상처리 후 타 보험사 분담금 청구 6.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분담비율 청구 7. 보증보험의 피보증인(주계약), 로또복권 판매사업자의 불법행위 8. 전자금융업자 배상책임의 불법송금계좌 소유자 등

나. 구상권 행사절차

구분	주요내용
절차	<p>구상권 행사절차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다만,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상권의 성립 여부 확인 및 관련서류 입수 ▶ 구상가액을 정하고 피구상자에게 임의변제 요청 ▶ 피구상자가 임의변제를 거부시 채권 추심(채권추심 회사에 의뢰하는 경우 포함) 하되 채권추심은 피구상자의 재산조사 및 채권확보(가압류 조치 등) 후 진행 ▶ 피구상자가 채권추심에 불응시에는 소송(지급명령 포함)을 통하여 강제집행하고 구상금을 회수하여 환입처리
종결	<p>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상권 행사를 종결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상금 전액 환수 ▶ 구상금 감면 및 분할상환 이행 ▶ 소송시 승소 가능성(소송실익이 없는 경우 포함)이 희박한 경우 ▶ 소송비용, 채권추심비용 등을 감안하여 조기 합의가 필요한 경우 구상권 포기 ▶ 구상실익이 없는 경우 전결권자 승인을 받아 구상권을 포기하고 종결한다. 종결 시에 사고보험금 지급심사 승인에 따른 전결권을 준용
채권추심 및 수수료	<p>채권추심수수료 및 재산조사수수료는 위임계약서에 따른 지급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p>

참고 보험금 지급사례

풍수재

- ◇ 전남 나주시 세지면에서 오리(총 33,000수, 축사 9개동)를 사육하는 박○○는 11,669,375원의 보험료(농가부담)을 내고 주계약 15,500만원, 축사특약 61,300만원 총 76,800만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 ◇ '12년 8월 28일 대한민국을 강타한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축사 9개동 중 3개동의 지붕 및 창호와 부대시설이 파손되고 기둥이 휘어지는 손해를 입고 내부에 수용되어 있던 오리 13,000여수가 강풍과 폭우로 인해 폐사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약 285백만원 보험금 지급받았음



- ◇ 전북 남원시 주천면에서 육계(총 40,000수, 축사 2개동)를 사육하는 이○○는 2,929,100원의 보험료(농가부담)을 내고 주계약 6,000만원, 축사특약 20,000만원 총 26,000만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 ◇ '12년 8월 28일 대한민국을 강타한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축사 2개동 중 2개동 모두 지붕 및 창호와 부대시설이 파손되고 기둥이 휘어지는 손해를 입고 내부에 수용되어 있던 37,000여수가 강풍과 폭우로 인해 폐사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약 168백만원 보험금 지급받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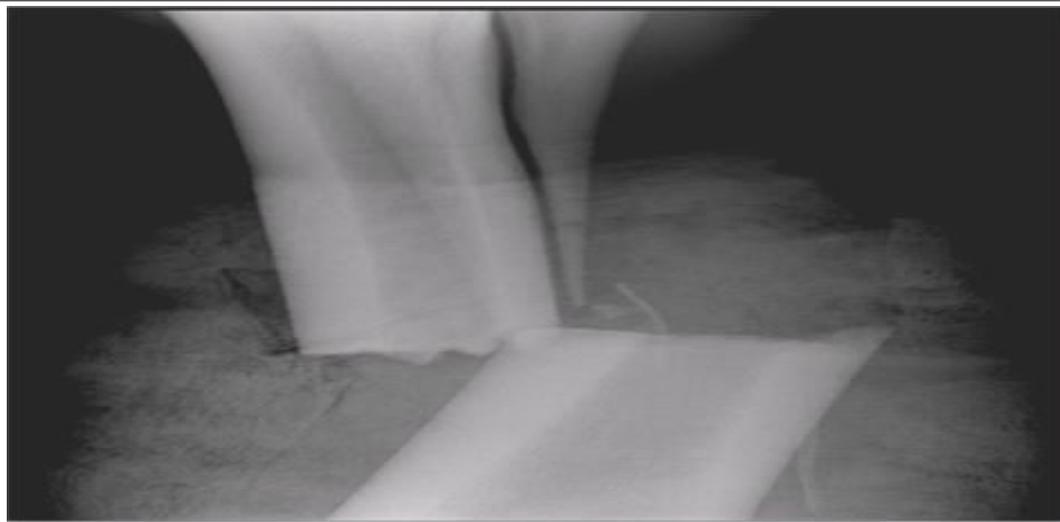
화 재

- ◇ 전남 무안군 현경면에서 돼지(총 25,000두, 축사 30개동)를 사육하는 이○○는 64,856,990원의 보험료(농가부담)을 내고 주계약 70,750만원, 축산휴지위험담보특약 12,500만원 총 83,250만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 ◇ '13년 11월 9일 전기적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축사 13개동 중 3개동 소손되고 내부에 수용되어 있던 돼지 3,554두가 화재로 인해 폐사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약 600백만원 보험금 지급받았음.



질병

- ◇ 제주시 도남동에서 말을 사육하는 송○○는 3,152,520원의 보험료(농가부담)을 내고 주계약 4,800만원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 ◇ '12년 5월 15일 경주마의 다리가 울타리에 끼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경주마로서의 가치가 상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약 34백만원 보험금 지급받았음.



- ◇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서 돼지를 사육(돼지 4,000두, 축사 3개동)하는 김○○는 9,910,030원의 보험료(농가부담)을 내고 주계약 113,200만원, 축사특약 93,500만원, 질병위험담보특약 10,000만원, 총 216,700만원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 ◇ '13년 2월 22일 농장 내에 돼지유행성 설사병(Porcine epidemic diarrhea, PED)가 창궐하여 약 1개월동안 자돈 500여두가 지속적으로 폐사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약 55백만원 보험금 지급받았음



폭 설

- ◇ 강원 양양군 손양면에서 돼지를 사육(돼지 1,700두, 축사 4개동)하는 김○○는 7,650,290원의 보험료(농가부담)을 내고 주계약 48,110만원, 축사특약 60,030만원, 총 108,410만원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 ◇ '14년 2월 7일 시작된 강원지역 폭설로 인하여 축사 4개동 중 2개동의 지붕, 벽체 등이 파손되는 사고를 입어 약 130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음.



- ◇ 강원 양양군 현북면에서 소를 사육(소 32두, 축사 2개동)하는 이○○는 3,012,150원의 보험료(농가부담)을 내고 주계약 9,570만원, 축사특약 38,920만원, 총 48,490만원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 ◇ '14년 2월 7일 시작된 강원지역 폭설로 인하여 축사 2개동 중 2개동의 지붕, 벽체 등이 파손되는 사고를 입어 약 100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음.





축사 특약

V. 측사 특약

< 요약 >

◆ 보험목적 및 개요

- ▶ 보험목적물, 보상하는 손해, 손해방지의무

◆ 손해평가 방법

- ▶ 손해액 조사결정, 평가방법,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출, 측사 내용연수 및 감가율, 수정 잔가율 등

◆ 지급보험금 계산(보상)

- ▶ 지급보험금, 계산방법, 자기부담금, 잔액 보험가입금액 산정

1

보험목적 및 개요

가. 보험목적

- (1)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사육과 관련된 건물
- (2) 보험목적물
 - 1.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2.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게시판, 네온사인, 간판,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 3.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가스설비, 급·배수 설비, 냉·난방설비, 급이기, 통풍설비, 착유기, 원유냉각기, 분만틀, 가금사의 기계류(케이지, 부화기, 분류기 등) 등 건물의 주 용도에 적합한 부대시설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보상하는 손해

- (1)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화재 및 풍재 또는 수재, 설해로 입은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
 - 1. 화재에 따른 손해
 -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 3.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입은 손해
 - 4. 설해에 따른 손해
 - 5. 화재 또는 풍수재, 설해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보험기간내의 5일 동안에 생긴 제1호 내지 제4호의 손해를 포함한다)

(2) 실제 '잔존물 제거비용' 보상

1. 보상한도 : 그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및 차에 실는 비용을 말합니다]을 보상
2. 보상제외 :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 손해방지의무

- (1) 보장근거 :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21조(손해방지의무)에 추가하여 적용
- (2) 보장내용
 1. 보험회사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21조(손해방지의무)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하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하 "보험가입금액")의 보험목적의 가액(이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특별약관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준하여 보상
 2.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지급보험금에 제1호의 손해방지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

2 손해평가 방법

가. 손해액 조사결정

- (1) 보험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장소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
- (2) 보험목적물의 경년감가율은 한국감정원의 “건축물신축 단가표”를 준용, 이 보험목적물이 지속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져 보험목적물의 가치증대가 인정된 경우 잔가율은 보온덮개·쇠파이프조인 축사구조물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그 외 기타 구조물의 경우에는 최대 70%까지로 수정하여 보험가액 평가 가능
- (3) 다만, 보험목적물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6개월이내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아니한 때에는 잔가율이 30%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30%로 수정하여 평가

나. 평가방법

- (1) 보험목적물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 등의 건물을 현재 재건축하는데 필요한 재축가액(신건축비용) 구한 후, 경년 및 사용 소모에 대응하는 감가를 공제하여 현재가액 산출

다.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출

- (1) 현재가액 = 신축가액 - 감가공제액

$$\text{【신축가액} \times (1 - \text{경년감가율} \times \text{경과년수)}\text{】}$$

$$\text{* 감가공제액} = \text{신축가액} \times \text{총감가율}$$

$$\text{* 총 감가율} = \text{경년감가율} \times \text{경과년수}$$

- (2) 다만, 수리비에 의한 손해액이 보험가액의 20%미만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공제하지 아니함

라. 측사 내용연수 및 감가율

건 물 구 조	내용연수	감가율
철골/판넬((무창돈사)	45	1.78%
철골지붕틀/판넬	45	1.78%
경량철골조/판넬(합석)지붕	30	2.67%
블록조/슬레이트 지붕	30	2.67%
파이프조/판넬(합석) 지붕	30	2.67%
파이프조(32mm)/보온덮개 지붕	7	11.43%

마. 측사 수정잔가율

건 물 구 조	내용연수	감가율	
수정 잔가율	외파이프조 보온덮개 (기계장치포함)	건물 총감가율이 70% 이상인 경우 수정잔가율 30% 인정	건물 총감가율이 50% 이상인 경우 수정잔가율은 최대 50% 인정
	기 타 (상기 외)		건물 총감가율이 30% 이상인 경우 수정잔가율은 최대 70%까지 인정

※ 수정잔가율 적용 제외예외 : 측사가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이득금지를 위해 수정잔가율은 30%로 인정

3 지급보험금 계산(보상)

가. (지급보험금)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특별약관 제 규정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보상.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함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비례보상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의 80\% 해당액}}$$

- ▶ 전부보험 : 보험가입금액(보험금액) = 보험가액
- ▶ 초과보험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 일부보험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나. (계산방법) 동일한 계약의 보험목적과 보험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보험계약 및 공제계약을 포함)이 있고, 이들 보험가입금액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 계산방법.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험가입금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다. (자기 부담금) 상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단, 화재로 인한 손해는 제외)에서 정한 풍수재 및 설해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 손해액에서 1사고당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빼고 보상

라. (잔존 보험가입금액 산정) 보험회사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으로 하고,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제1항의 규정을 적용

※ 측사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출(예시)

<p>1. 파이프조/보온덮개인 경우</p> <p>① 신축가액×(100%-감가율×경과년수)-경과년수(가입년도-건축년도)</p> <p>② 신축가액×50%</p> <p>③ 보험가액 및 손해액 : MAX(①, ②) × 면적(m²) * 십만원 미만 절사</p> <p>2. 파이프조/보온덮개 이외인 경우</p> <p>① 신축가액×(100%-감가율×경과년수)-경과년수(가입년도-건축년도)</p> <p>② 신축가액×70%</p> <p>③ 보험가액 및 손해액 : MAX(①, ②) × 면적(m²) * 십만원 미만 절사</p> <p>3. 기계장치/시설(케이지 등)인 경우</p> <p>① (신품 또는 구입가격) × (100%-10.0%×경과년수) - 경과년수(가입년도-건축년도)</p> <p>② (신품 또는 구입가격) × 50%</p> <p>③ 보험가액 및 손해액 : MAX(①, ②) × 면적(m²) * 십만원 미만 절사</p>
--

VI

질의 답변 및 용어해설

VI. 질의 답변 및 용어해설

1 가축재해보험 질의 답변

 1. 가축재해보험은 모두 가입해야 하나요?

가축재해보험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축 16개 축종과 그 가축이 수용된 축사를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을 원하는 분만 가입하는 임의보험입니다. 그러나 농어업재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금액으로는 안정된 경영환경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있는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2. 모든 축종이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나요?

가축재해보험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축 16개 축종과 그 가축이 수용된 축사를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축산환경의 변화에 따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16개 축종 : 소,돼지,닭,오리,말,꿩,메추리,타조,칠면조,거위,관상조,토끼,사슴,양(염소),꿀벌,오소리,

 3. 보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가축재해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기간이 1년인 소멸성 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기간 1년이 지나면 새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 가축재해 보험금은 누가 수령하나요?

원칙적으로 피보험이익이 있는 피보험자(보험목적물 소유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이 있습니다.

다만, 증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는 동 조항에 따라 질권자가 보험금에 대한 우선적 수령권이 있으므로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축재해 보험료는 얼마나 됩니까?

축종별, 축사의 규모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상당부분 정부 보조가 이루어지므로 총보험료의 50% 정도를 가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단, 적법하지 않은 축사와 축산 계열화업체는 정부보조가 되지 않습니다.



6. 가축재해 보험가입금액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가축재해보험은 가입을 원하시는 계약자에게 가입금액을 산정하는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준가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향후 가격상승이나 하락 또는 사육두수 증가나 감소가 예상 될 경우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가액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통상 가입금액 기준 50%~150%한도).

가축에 대한 기준가액 산정을 위해서는 소의 경우는 개체별 축종, 출생일자를 기재하시고, 소 이외의 축종은 축종 및 마리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축사의 경우는 축사용도, 구조물, 면적(m²), 건축년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7. 가축재해보험 자기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자기부담금이란 면책금액이라고도 하며, 사고 발생 시 최종 결정된 지급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현재 가축재해보험 자기부담금은 소, 말, 사슴, 양, 오소리의 경우는 20%(경주마는 30%), 돼지, 가금, 꿀벌, 토끼의 경우는 5%입니다.

특약 내 자기부담금으로는 돼지,가금보험에서 가입가능한 전기적장치위험보장특약 및 폭염추가 특약은 100,200,300만원 중 자기부담금 선택이 가능하며, 축사특약 내 풍수재, 설해로 인한 피해 보상 시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8. 왜 축종별로 보험료가 다른가요?

가축재해보험 요율은 보험개발원에서 축종별 통계를 기초로 산정된 것입니다. 축종별로 요율이 다른 것은 각 축종별로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9. 가축재해 보험가입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축종별로 농협중앙회에서 고시하는 전전월 산지거래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제시하며, 보험가입금액은 기준가격을 참조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축사의 경우는 축사용도, 구조물, 면적(m²), 건축년도를 기준으로 기준가액을 산정합니다.



10. 가축재해보험 계약 해지시 정부지원보험료도 환급되나요?

보험계약자 부담분만 계약자에게 환급되고, 나머지 정부지원 보험료 부분에 대한 환급분은 별도 계산하여 정부와 정산 처리하게 됩니다.



11. 보험목적물의 일부 축종만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축재해보험은 전부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도 전부가입이 원칙입니다. 이는 보험의 목적물을 선택적으로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12. 보험은 언제 가입할 수 있나요?

가축재해보험은 연중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관련 사고는 가입 후 1개월이 지난 후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폭염재해보장특약은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폭염특보가 발령 중 일때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13. 보험료 분납이 가능한가요?

보험기간이 1년이고 정부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 직접 부담 보험료가 () 이상일 경우 2회로 나누어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2회납입 경우 초회 보험료는 계약시 연간 보험료의 ()를 납입하며, 2회 보험료 ()는 보험 시기로 부터 2개월 15일 째 되는 날까지 납입하시면 됩니다.

만일, 이 때까지 납입되지 않을 경우 이로부터 14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이 경과 되면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늦어도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2회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14. 계약체결 전에 구비하여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축산업등록(허가)증 사본^{주1}, 소생산이력제 「농장별 사육 개체현황」^{주2}, 건축물관리대장(가설 건축물 관리 대장)^{주3}, 말 건강진단서(두당), 사슴 개체별 사진을 구비하셔야 하며, 가입 농축협에 비치된 가축재해보험 청약서, 건물(축사) 배치도, 목적물 명세서 등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주1) 소, 돼지, 가금 가입시 필요서류 주2) 소 가입시 필요서류 주3) 축사 가입시 필요서류



15. 가축재해보험의 축사특약은 다른 상품과 어떻게 다른가요?

축사의 경우 일반화재보험에서는 화재만 담보하나, 가축재해보험에서는 화재뿐만 아니라 풍수재, 폭설(설해)까지 담보되어 대부분의 자연재해를 보장합니다. 때문에 보험료는 조금 비싸지만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보조하기 때문에 가축재해보험으로 축사를 가입하는 것이 축산농업인에게는 효과적입니다.



16. 축사특약은 어떤 경우에 가입하는 특약입니까?

가축재해보험 축사특별약관의 보험목적(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사육과 관련된 건물)의 피해를 담보하는 특약입니다. 보험의 목적은 건물의 부속물, 건물의 부착물, 건물의 부속설비 중 약관에 명시된 물건을 포함합니다.

※ 상세는 계약자용 약관 중 “축사특별약관”을 참조



17. 축사특약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요?

축사 특약으로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목적물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및 풍재 또는 수재, 설해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에 따른 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3.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입은 손해
4. 설해에 따른 손해
5. 화재 또는 풍수해, 설해에 따른 피난손해

※ 상세는 계약자용 약관 중 “축사특별약관”을 참조



18. 가금(닭)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데 전기적장치위험보장특약이 무엇인가요?

가축재해보험의 전기적장치위험보장특약은 전기적 장치 고장에 의해 축사 환풍기 정지 등으로 돼지나 가금이 폐사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전기적장치위험보장특약은 주계약(돼지나 가금)의 폐사에 대한 보상이며, 환풍기 정지 등의 기계 장치 수리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돼지나 가금의 폐사는 빈번히 발생하며, 이로 인한 보상은 전기적장치위험 보장특약 가입시에만 보상이 되므로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하고자하는 돼지 및 가금 사육 축산농업 인은 보험가입시 추가적으로 가입하기를 권장하는 특약입니다.



19. 축사특약 가입 시 건축물대장 등재 건물과 미등재 건물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미등재 건물도 가입할 수 있는지요?

축사특약은 건축물대장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축사가 가입가능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고지원(보험료의 50%)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등기 건물이 있는 건물을 가입할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현황도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지 실사하여 청약서 별지의 축사배치도에 건물 위치를 정확히 기재하고 실사 면적 및 구조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20. 돼지나 가금(닭, 오리 등)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데 정확한 마리수 등을 알기 위해서 현지 실사하여 가축을 정확히 세고 가입하여야 하나요?

돼지나 가금 보험 가입 시 사육하는 마리수를 파악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축산농업인이 사육하는 마리수를 파악하여 적정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가액을 제시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현지 출장하여 마리수를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사육하는 마리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가입금액이 적게 된 경우에는 사고발생 시 가입금액이 적어 보험금이 비례보상되기 때문에 마리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가입금액을 낮출 경우는 사육두수는 실제 사육하고 있는 두수로 하고 가입금액만 낮추시기를 바라며, 이 경우에는 사고발생 시 비례보상 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21.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가축과 축사에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현행 복구지원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복구비 기준액의 대 가축은 50%(보조), 30%(용자)을 지원하고, 축사는 35%(보조), 55%(용자) 정도의 재난지원금(피해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난지원금의 합산금액은 최대 5천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22. 가축재해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양,염소,사슴의 폐사 될 경우에 진단서 및 소각 또는 매장증명서 지참, 절박도살 건은 진단서 및 매매계약서 또는 도축장 정산서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여 청구가능 합니다.

돼지, 가금류 및 꿀벌 등의 사고 건은 가까운 지역 대리점에 유선 또는 손해보험 콜센터로 평일, 주말에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전문손해평가인이 연락 후 방문드리며 최대한 현장보존을 하셔야 원활한 손해평가가 가능합니다.

2

보험용어 해설

가. 기본용어

- (1) 농어업재해 : 농작물, 임산물, 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鳥獸害), 질병 또는 화재(이하, 농업재해)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질병 또는 화재(이하, 어업재해)를 말한다.
- (2) 농어업재해보험 :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 (3) 시범사업 :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시설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사업을 말한다.
- (4) 보험계약자 : 보험자와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맺은 계약당사자로서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고지의무(상법 제651조), 보험료 지급의무(상법 650조) 등 각종의 의무를 지며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보험증권교부 청구권 등 각종 권리를 가진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가지는데 특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인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그 지정·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 (5) 피보험자 : 손해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에 대하여 그것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인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에 상응하는 보험계약관계자이다. 당해 보험계약상의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는 피보험자가 되지 못한다.
- (6) 보험료 :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 즉 보험계약에서는 계약의 한쪽의 당사자인 보험자가 위험 부담이라는 급부를 제공하는데 대응해서 다른 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이 보수를 보험료라고 하는 것이다. 손해 보험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가 다른 당사자인 보험자의 위험부담이라는 급부에 대해 지불하는 보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보험금 등의 지급에 충당되는 순보험료와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충당되는 부가보험료의 두가지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 총 보험료 : 국고순보험료 + 지자체보험료(광역시·도+ 시군구)+ 농가보험료
- ▲ 국고순보험료 : 국가에서 보험금 급부금 지급을 위해 지원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 ▲ 국가부가보험료 : 국가에서 보험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원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 ▲ 지방자치단체 보험료 : 광역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 ▲ 농가보험료 : 농가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 ▲ 기타 보험료 : 국고, 지방자치단체 이외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 (7)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자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 (8) 보험료율 :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말한다.
- (9) 보험금 :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즉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손해보험회사로부터 피보험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 (10) 환급금 : 보험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등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 (11)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 시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 중 일정한 비율을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즉 일정비율 이하의 손해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고, 손해액 중 일정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사업자가 보상하게 된다.

▲ 소액손해의 보험처리를 배제함으로써 비합리적인 운영비 지출의 억제, 계약자 보험료 절약, 피보험자의 도덕적 위험 축소 및 방관적 위험의 배제 등의 효과를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해보험에서 대부분 수용

나. 보험 계약(약관)

- (1) 청약서 :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용하는 양식으로써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 담보위험의 종류,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및 세부위험 확인을 위한 질문서 등으로 구성 되어 있고 보험계약자가 작성한다.
- (2) 보험증권 :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험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발행하는 일종의 증거증권이다. 보험계약은 요식계약이 아니고 낙성계약이므로(제638조) 보험증권의 발행은 계약당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계약의 성립요건도 아니고, 또 보험자만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도 아니다. 보험계약의 성립 및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작성해서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 상법상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제640조 1항). 보험증권은 유가증권이 아니고 또한 계약서도 아니다.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에 관한 증거가 되는 효력을 가지는 일종의 증거문서이다. 기재사항의 변경시에는 배서를 하고 분실시에는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재발행하고 있다.
- (3)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보험자가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제시하는 약정서를 말한다.
- (4) 배서 : 보험증권 등의 배(이)면에 첨부하는 특별조항을 말하며 보험자가 보험증권 기재사항의 정정, 추가, 통지(declaration)의 확인 등을 위하여 보험증권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형식이다.
- (5) 가입대상 : 농어업재해보험에서 최소 가입기준 이상의 재배면적, 사육두수, 인원, 농기계수 등을 말한다.
- (6) 가입(자)수 :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인원, 과수원(수) 등을 말한다.
- (7) 가입률 :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대상농가수(면적, 두수, 동) 대비 가입농가수(면적, 두수, 동)를 백분율(100%)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 (8) 보험사고 :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어떤 사실의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약정한 우연한 사고(사건 또는 위험)를 말한다. 이 경우 '우연성'이란 발생할 것인가 아닌가, 발생의 시기, 발생의 상태 또는 그것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불이익의 결과, 어느 것인가가 불확정한 것을 말한다.
- (9) 사고율 :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농가수(농지수) 대비 사고농가수(농지수)를 백분율(100%)로 표시하거나 면적, 과수원수, 면적, 두수, 인원, 대수 기준으로 다양하게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 (10) 손해율(%) :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하며, 경영분석, 보험요율의 산출 등에 있어서 사용된다. 즉 보험료 또는 보험금의 계산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라지지만, 통상은 순수보험금에 손해조사비를 더한 액수의 보험료에 대한 비율이 쓰여진다.
- (12) 축사시설물 :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을 말한다.
- (13) 규격 : 약관상 철제파이프하우스는 “농가표준형비닐하우스설계서” 규격을 따른 시설만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비규격시설은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농가표준형비닐하우스설계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제작배포한 표준설계 지침을 의미합니다.
- (14) 농가표준형 비닐하우스 설계서 : 농촌진흥청의 시설표준설계도 중 철제파이프를 소재로 한 비닐하우스에 대한 표준설계도를 의미합니다.
- (15) 손해평가요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 (16) 이축, 개축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르면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고, “이축”은 기존의 건물이 있는 부지외의 곳에 새로이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손해평가

- (1) 담보위험 :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로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에 정한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풍수재, 설해, 폭염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를 말한다.
- (2) 보험의 목적물 : 보험에 가입한 가축 및 축산시설물을 말한다. 보험의 목적은 관계법령 및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 가축재해보험은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벌, 토끼, 관상조(觀賞鳥) 및 그 축사(부대시설 포함)
- (3) 중복보험 :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가입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각각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보험약관에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 방식)로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 (4) 면책 및 수급권자 : '면책'은 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수급권자'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 (5) 손해평가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6) 손해평가인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자 중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즉, 가축재해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회사가 자격증을 수여한 사람을 말한다.
- (7) 손해의 구분 : 농업재해보험금의 산정기초로서 자연재해(풍수재), 질병 또는 화재(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등)으로 손해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 (8) 피해면적 : 보험의 목적을 시설물별, 동별로 구분하고 피해가 발생한 시설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 (9) 손해액의 산정 : 보험가입자별 및 시설물별로 피해면적에 시설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수에 피해 산출 기준율을 적용하여 지급할 보험금의 기초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 (10) 보험금의 산정 : 보험가입자별 및 시설물별로 피해면적에 시설단가를 곱하여 나온 값에 손해 구분계수를 적용하고 여기에 보험가입비율을 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 가축재해

- (1) 구제역 : 구제역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우제류 동물(소·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의 악성가축전염병(1종법정가축전염병)으로 발굽 및 유두 등에 물집이 생기고, 체온상승과 식욕저하가 수반되는 것이 특징이다.
- (2) AI(조류인플루엔자, Avian Influenza) : AI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 전염병으로 병원의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되며, 고병원성 AI의 경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관리대상질병으로 지정되어 있어 발생 시 OIE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3) 돼지열병 :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으나, 발생국은 돼지 및 돼지고기의 수출이 제한('01년 청정화 이후, '02년 재발되어 예방접종 실시)된다.
- (4) 돼지 MSY(Marketing per Sow per Year) : 어미돼지 1두가 1년간 생산한 돼지 중 출하체중(110kg)이 될 때까지 생존하여 출하한 마리 수를 의미한다.
- (5) 난계대 전염병 : 조류의 특유 병원체가 종란에 감염하여 부화 후 초생주에서 병을 발생시키는 질병(추백리 등)을 말한다.
- (6) 가축계열화 : 가축의 생산이나 사육·사료공급·가공·유통의 기능을 연계한 일체의 통합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 “가축계열화 사업”이란 위하여 농민과 계약(위탁)에 의하여 가축·사료·동물용 의약품·기자재·보수 또는 경영지도 서비스 등을 공급(제공)하고, 당해 농민이 생산한 가축을 도축·가공 또는 유통하는 사업방식

(7) 산란수 : 산란계 한 계군에서 하루 동안에 생산된 알의 수를 의미하며, 산란계 한 마리가 산란을 시작하여 도태시까지 낳는 알의 총수는 산란지수로 표현한다.

(8) 자조금관리위원회 : 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축산업자 및 학계·소비자·관계 공무원 및 유통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이며 품목별로 설치되어 해당 품목의 자조금의 조성 및 지출, 사업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축산자조금(9개 품목) : 한우, 양돈, 낙농, 산란계, 육계, 오리, 양육, 양봉, 육우

(9)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 특허청에 브랜드를 등록하고 회원 농가들과 종축·사료·사양관리 등 생산에 대한 규약을 체결하여 균일한 품질의 고급육을 생산·출하하는 축협조합 및 영농조합법인을 말한다.

(10) 쇠고기 이력제도 : 소의 출생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다.

(11) 수의사 처방제 :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축산물 내 약품잔류 및 항생제 내성문제 등의 예방을 위해 동물 및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토록 하는 제도이다.

마. 보험 및 보험업

- (1)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 방카슈랑스는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을 합성한 프랑스어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와 제휴해 그 대리점이나 중개사 자격을 겸하면서 보험상품도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 * 방카슈랑스를 : 방카슈랑스에 의하여 은행·증권사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창구의 보험 판매 직원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
- (2) **변액보험(變額保險, variable insurance)** :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성과를 나누어 주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 (3) **제3보험** :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거나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는 것을 말하며, 특히 사람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법상 인보험의 범주에 속하며, 손해의 보상을 약속한다는 점에서 손해보험의 범주에도 속한다.
- (4) **보험대리점** :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모집을 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독립된 모집조직을 말한다.
- * 보험대리점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일반보험대리점으로 구분
- (5)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방카슈랑스 규정이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일반보험대리점과 달리 상품 취급에 제약이 존재하는 모집조직을 말한다.

부 록

— < 목 록 > —

- 〈부록1〉 농어업재해보험법령 / 167
- 〈부록2〉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 184
- 〈부록3〉 농업재해보험 보험목적물별 보상 병충해 및 질병규정 / 187
- 〈부록4〉 가축전염병예방방법령 / 189
- 〈부록5〉 소 및 쇠고기 이력에 관한 법령 / 199
- 〈부록6〉 가축재해보험 약관 / 211
- 〈부록7〉 가축 이력제 및 도축장 운영 체계도 / 285
- 〈부록8〉 2013년 시·도별 가축사육 현황 / 288

부록1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법률 제11698호, 2013.3.23., 일부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88호, 2013.3.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3.3.2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업재해"란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병충해·조수해(鳥獸害)·질병 또는 화재(이하 "농업재해"라 한다)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질병 또는 화재(이하 "어업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2.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4.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보험금"이란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시범사업"이란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이하 "재해보험사업"이라 한다)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사업을 말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농어업재해보험법 [법률 제11698호, 2013.3.23.,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88호, 2013.3.23., 일부개정]</p>
<p>제3조(심의회) ① 이 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 및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두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이하 "재보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6. 재보험사업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률에서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3.23></p> <p>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보험이나 농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재해보험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자연재해 또는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소방방재청·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p>⑤ 제4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p> <p>⑥ 심의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조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과위</p>	<p>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3.23></p> <p>②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4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어업재해보험심의회"라 한다)에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p> <p>② 분과위원회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에 따른 심의 사항을 검토·조정하여 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3.3.23></p> <p>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장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해서는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제3항을 준용한다.</p>

<p align="center">농어업재해보험법 [법률 제11698호, 2013.3.23., 일부개정]</p>	<p align="center">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88호, 2013.3.23., 일부개정]</p>
<p>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3.3.23]</p>	
	<p>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 align="center">제2장 재해보험사업</p>	
<p>제4조(재해보험의 종류 등)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 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이 중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장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제목개정 2013.3.23]</p>	
<p>제5조(보험목적물)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1.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1의2. 임산물재해보험: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2. 가축재해보험: 가축 및 축산시설물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p>	<p>제7조(보험목적물의 범위) 법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28, 2012.10.29> 1. 농작물재해보험: 사과·배·포도·단감·감귤·복숭아·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고추·수박·딸기·토마토·오이·참외·옥수수·고구마·마늘·매실·벼 및 그 재배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 1의2. 임산물재해보험: 뽕은감·밤·대추 및 그 재배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 2. 가축재해보험: 소·말·돼지·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사슴·거위·타조·양·별·토끼·관상조(觀賞鳥) 및 그 축사(부대시설을 포함한다)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넙치·전복 및 그 양식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p>

<p align="center">농어업재해보험법 [법률 제11698호, 2013.3.23., 일부개정]</p>	<p align="center">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88호, 2013.3.23., 일부개정]</p>
	<p>제5조(수당 등)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분과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분과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조(보상 범위)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라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p>
	<p>제6조(운영세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7조(보험가입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보험가입자의 기준) 법 제7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작물재해보험: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1의2. 임산물재해보험: 제7조제1호의2에 따른 임산물을 재배하는 자 2. 가축재해보험: 제7조제2호에서 정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7조제3호에서 정한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p>제8조(보험사업자) ①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1.3.31>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2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p>② 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p>제10조(재해보험사업의 약정체결)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사업 약정체결신청서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와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

<p align="center">농어업재해보험법 [법률 제11698호, 2013.3.23., 일부개정]</p>	<p align="center">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88호, 2013.3.23., 일부개정]</p>
<p>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제2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해보험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정관을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p>
<p>제9조(보험요율의 산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재해보험의 보험요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제11조(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행정구역 단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2. 권역 단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구역 단위와는 따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지역 단위</p>
<p>제10조(보험모집) ①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1, 2011.7.25> 1.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규약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수협중앙회장 또는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2의2. 「산림조합법」 제48조(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산림조합중앙회장이나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3.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사용하는 재해보험 안내자료 및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다만, 재해보험사업자가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인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5조제1항제5호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농업협동조합법」,</p>	

<p align="center">농어업재해보험법 [법률 제11698호, 2013.3.23., 일부개정]</p>	<p align="center">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88호, 2013.3.23., 일부개정]</p>
<p>「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상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1, 2011.7.25, 2012.12.18></p>	
<p>제11조(손해평가)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과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④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 및 실무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p> <p>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약관 및 손해평가요령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하여야 한다.</p>
<p>제12조(수급권의 보호)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3조(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p>	
<p>제14조(업무 위탁)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13조(업무 위탁)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p>농어업재해보험법 [법률 제11698호, 2013.3.23., 일부개정]</p>	<p>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88호, 2013.3.23., 일부개정]</p>
	<p>3.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p>
<p>제15조(회계 구분)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p>	
<p>제16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결산기마다 제4조에 따른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이란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20조제2항을 적용한다.</p>
<p>제17조(분쟁조정) 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調停)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8조(「보험업법」의 적용) 이 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8조제1항, 제119조, 제124조, 제127조, 제128조, 제131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34조제1항, 제136조, 제162조, 제176조 및 제181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p>	
<p>제19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③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보험료 및 운영비의 지원)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재해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금액을 결정·지급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려는 경우 재해보험 가입현황서와</p>

<p align="center">농어업재해보험법 [법률 제11698호, 2013.3.23., 일부개정]</p>	<p align="center">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88호, 2013.3.23., 일부개정]</p>
	<p>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의 지원금액을 결정·지급한다. <신설 2011.12.28></p>
	<p>제19조(기금의 결산)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산 개요 2. 수입지출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p align="center">제3장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p>	
<p>제20조(재보험사업) ①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재해보험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내야 할 보험료(이하 "재보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하 "재보험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보험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16조(재보험 약정서)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보험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3.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 재보험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보험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p>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또는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

<p align="center">농어업재해보험법 [법률 제11698호, 2013.3.23., 일부개정]</p>	<p align="center">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88호, 2013.3.23., 일부개정]</p>
	<p align="center">유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의 매입</p>
<p>제21조(기금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3.23></p>	<p>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제2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받은 재보험료 2. 정부,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5. 제2항에 따른 차입금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제2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의 지급 2. 제22조제2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보험사업을 유지·개선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p>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3.3.23></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 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2.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보험료를 납입받는 업무 3.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을

<p align="center">농어업재해보험법 [법률 제11698호, 2013.3.23., 일부개정]</p>	<p align="center">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88호, 2013.3.23., 일부개정]</p>
	<p>지급하는 업무</p> <p>4. 제20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업무</p> <p>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p> <p>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각 호의 사무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p>
<p>제25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p>	
<p align="center">제4장 보험사업의 관리</p>	
<p>제26조(통계의 수집·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대상의 현황, 피해 규모, 피해 원인 등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재해보험 제도 및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조사·연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진흥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21조(통계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28,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요율산

<p align="center">농어업재해보험법</p> <p align="center">[법률 제11698호, 2013.3.23., 일부개정]</p>	<p align="center">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p> <p align="center">[대통령령 제24488호, 2013.3.23., 일부개정]</p>
<p><개정 2013.3.23></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수집·관리, 조사·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출기관 또는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p> <p>5.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p> <p>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제27조(시범사업)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신규 보험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정부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시범사업 실시)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목적물, 사업지역 및 사업기간에 관한 사항 2. 보험상품에 관한 사항 3. 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시범사업이 끝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험계약사항, 보험금 지급 등 전반적인 사업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 2. 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중단·연장 및 확대 등에 관한 사항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를 받으면 그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보험상품의 도입가능성 등을 검토·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농어업재해보험법 [법률 제11698호, 2013.3.23.,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88호, 2013.3.23., 일부개정]</p>
<p>제29조(보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재해보험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제5장 벌칙</p>	
<p>제30조(벌칙) ①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2. 제1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자 <p>③ 제15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2조(과태료) ① 재해보험사업자가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p>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농어업재해보험법 [법률 제11698호, 2013.3.23.,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88호, 2013.3.23., 일부개정]</p>
<p>2. 제18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3. 제18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자</p> <p>2.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p> <p>3. 제29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p> <p>④ 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p>	

[별표 1] <개정 2013.3.23>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제8조 관련)

재해보험의 종류	보험목적물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농작물 재해보험	사과·배·포도·단감·감귤·복숭아·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고추·수박·딸기·토마토·오이·참외·옥수수·고구마·마늘·매실 및 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충해
	위 농작물의 재배시설 (부대시설 포함)	자연재해, 조수해 및 화재
임산물 재해보험	뽕은감·밤 및 대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충해
	위 임산물의 재배시설 (부대시설 포함)	자연재해, 조수해 및 화재
가축 재해보험	소·말·돼지·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사슴·거위·타조·양·벌·토끼 및 관상조(觀賞鳥)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
	위 가축의 축사 (부대시설 포함)	자연재해 및 화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넙치 및 전복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질병
	위 수산물의 양식시설 (부대시설 포함)	자연재해 및 화재

비고: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의 대상재해의 범위에서 다양한 보험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13.3.23>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제12조제1항 관련)

재해보험의 종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농작물재해보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보험의 대상 농작물을 5년 이상 경작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2. 공무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작물재배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지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교원으로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농작물재배 분야 관련 과목을 5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농작물재배 관련학을 3년 이상 가르친 경력이 있는 사람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영농지원 또는 보험·공제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작물재배 관련학을 전공하고 농업전문연구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임산물재해보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보험의 대상 임산물을 5년 이상 경작한 경력이 있는 임업인 2. 공무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산물재배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지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교원으로 임업계 고등학교에서 임산물재배 분야 관련 과목을 5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임산물재배 관련학을 3년 이상 가르친 경력이 있는 사람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산림경영지원 또는 보험·공제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임산물재배 관련학을 전공하고 임업전문연구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p>가축 재해 보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보험의 대상 가축을 5년 이상 사육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2. 공무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축사육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지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할 경력이 있는 사람 3. 교원으로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가축사육 분야 관련 과목을 5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가축사육 관련학을 3년 이상 가르친 경력이 있는 사람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영농지원 또는 보험·공제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할 경력이 있는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가축사육 관련학을 전공하고 축산전문연구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7.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술사
<p>양식 수산 물체 해보 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보험의 대상 양식수산물 5년 이상 양식한 경력이 있는 어업인 2. 공무원으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물양식 분야 또는 수산생명의학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지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할 경력이 있는 사람 3. 교원으로 수산계 고등학교에서 수산물양식 분야 또는 수산생명의학 분야의 관련 과목을 5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수산물양식 관련학 또는 수산생명의학 관련학을 3년 이상 가르친 경력이 있는 사람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수산업지원 또는 보험·공제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할 경력이 있는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산물양식 관련학 또는 수산생명의학 관련학을 전공하고 수산전문연구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7.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양식기술사

[별표 3] <개정 2013.3.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해당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과태료
가. 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	1,000만원
나. 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경우	법 제32조제3항제1호	500만원
다. 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제3항제2호	300만원
라. 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1호	500만원
마. 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법 제18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2호	300만원
바. 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법 제18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3호	200만원
사. 법 제29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2조제3항제3호	300만원

부록2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시행 2013.12.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98호, 2013.11.29,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팀), 044-201-1792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손해평가"라 함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손해평가인"이라 함은 법 제11조제1항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자 중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손해평가보조인"이라 함은 전호에서 정한 손해평가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손해평가인의 임무) ① 손해평가인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피해사실 확인
 2.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3. 그 밖에 손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손해평가인은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가입자("피보험자"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에게 손해평가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손해평가인 위촉)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거쳐 그 자격을 표시할 수 있는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피해 발생 시 원활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농어업재해보험이 실시되는 시·군·자치구별 보험가입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③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다.

제5조(손해평가인 교육)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상품 및 약관, 손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손해평가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에 대하여 재해보험사업자는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및 해지)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위촉당시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 제30조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동 조에 따라 위촉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 및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 한 때
2. 법 및 이 요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때

③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손해평가인에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해촉하거나 손해평가인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 유통 기재한 문서로 그 뜻을 손해평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평가의 업무위탁)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손해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제8조(손해평가반 구성 등)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제2조제1호의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인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로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또는 손해사정사 1인 이상을 포함하여 4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9조(피해사실 확인) ① 보험가입자가 보험책임기간 중에 피해발생 통지를 한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보험목적물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반에게 손해평가를 위탁할 때에는 해당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평가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표를 손해평가반에 배부하고 손해평가시의 주의사항을 숙지시킨 후 손해평가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손해평가반은 현지조사표에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손해평가결과를 작성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손해평가결과 검증) ①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검증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증조사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손해평가 단위) ①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 농지별
2. 가축 : 개별가축별(단, 벌은 벌통 단위)
3. 농업시설물 : 보험가입 목적물별

② 제1항제1호에서 정한 농지라 함은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필지(지번) 등과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하며, 방풍림, 돌담, 도로(농로 제외) 등에 의해 구획된 것 또는 동일한 울타리, 시설 등에 의해 구획된 것을 하나의 농지로 한다. 다만, 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면적이 극히 작은 것은 동일 작업 단위 등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농지에 포함할 수 있다.

제13조(농작물의 보험가액 및 보험금 산정) ① 농작물에 대한 보험가액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은 적과후 착과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종합위험방식 수확감소보장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의 평년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험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면적, 주수, 수령, 품종 등이 가입당시와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다.
 3. 종합위험방식 생산비보장은 작물별로 보험가입 당시 정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보험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면적 등이 가입당시와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다.
 4. 나무손해보장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이 나무인 경우로 최초 보험사고 발생 시의 해당 농지 내에 심어져 있는 과실생산이 가능한 나무 수(피해 나무 수 포함)에 보험가입 당시의 나무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 ② 농작물에 대한 보험금 산정은 [별표1]과 같다.
 ③ 농작물의 손해수량에 대한 품목별·재해별·시기별 조사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14조(가축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①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 ②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가격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시장가격 등을 감안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험가입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제15조(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①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재조달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 ②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원상복구비용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제16조(손해평가업무방법서) 재해보험사업자는 이 요령의 효율적인 운용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손해평가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298호, 2013.11.2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재해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재검토키한) 이 요령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키하여야 한다

부록3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 병충해 및 질병규정

[시행 2013.12.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99호, 2013.12.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팀), 044-201-179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6조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로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하는 질병 및 병충해) 시행령 제8조에서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충해 및 질병"이란 별표와 같다.

부칙 <제2013-299호, 2013.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제2조 관련)

보험종류	보험목적물	구분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비고
농작물재해보험	벼	병해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충해	벼멸구	
가축재해보험	소·사슴·양 및 말	질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다만, 질병에는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등)·난산·산욕마비(말의 경우 산통 포함), 씨수말 번식 첫해 선천성불임, 정액생산용수소의 정액생산능력저하로 인하여 폐사 또는 즉시 도살하는 경우 등도 포함)
	돼지	질병	TGE, PED, Rota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요율의 적정성, 손해평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 재해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보험상품을 운영할 수 있으며, 기본계약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 특약으로 보험상품을 구성할 수 있음.

부록4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보상 및 지원 사항)

<p>가축전염병예방법 [법률 제12048호, 2013.8.13., 일부개정]</p>	<p>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p>
<p>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한 물건의 소유자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한 자 중에서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제27조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 <p>② 제21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가축이나 물건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2011.7.25, 2013.8.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3항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p>제11조(보상금 등) ① 법 제4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1.31></p> <p>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③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3.3.23></p> <p>④ 법 제4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80 이상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신설 2011.7.22></p>

<p style="text-align: center;">가축전염병예방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2048호, 2013.8.13.,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p>
<p>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p> <p>3.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p> <p>4.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p> <p>5.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p> <p>[전문개정 2010.4.12]</p>	
<p>제49조(생계안정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p> <p>② 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0.4.12]</p>	<p>제12조(생계안정비용 등)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우역·우폐역·구제역·돼지열병·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8.1.31, 2009.9.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의 소유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가축을 발견하고도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3.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4. 해당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법 제19조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p>②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가계비의 6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고, 살처분 가축의 종류별·두수별 지원액 그 밖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가족전염병예방법 [법률 제12048호, 2013.8.13., 일부개정]</p>	<p>가족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p>
	<p>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6.30, 2007.10.23, 2008.1.31, 2008.2.29, 2013.3.23></p> <p>③ 생계안정비용은 해당 비용의 10분의 7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개정 2009.9.3></p>
<p>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 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및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p> <p>2. 제20조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p> <p>3.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p> <p>4. 그 밖에 자원봉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p> <p>② 제1항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 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전담의료기관은 치료를 하여야 한다.</p> <p>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⑤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치료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치료 요청의 절차 및 방법, 비용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1.1.24]</p>	<p>제12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① 법 제49조의2 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자원봉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자원봉사자 및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소각·매몰한 사람으로서 법 제4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p> <p>②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축의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에 참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p> <p>③ 제2항에 따라 치료신청을 받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진료기관에 치료 요청을 하고, 치료 신청자에게 해당 진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8.22></p> <p>④ 제3항에 따라 치료 요청을 받은 진료기관은 치료 신청자에게 전문가를 배정하여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담한 전문가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치료 신청자에게 해당 진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p> <p>⑤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치료는 전문가 상담치료와 상담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물치료 등 추가적인 치료로 하되, 치료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전문가 상담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국가가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p> <p>2. 추가적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치료 대상자가 부담</p> <p>⑥ 제5항에 따른 상담치료와 추가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제4항에 따라 상담치료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6개월로 한다.</p> <p>[본조신설 2011.7.22]</p>

<p style="text-align: center;">가축전염병예방법 [법률 제12048호, 2013.8.13.,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p>
<p>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 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소각·매몰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2012.2.22></p> <p>② 국가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역 및 미발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4></p> <p>③ 제15조제3항에 따라 축산관련단체가 공동으로 가축방역을 하는 경우에 그 축산관련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4> [전문개정 2010.4.12]</p>	<p>제13조(비용의 지원)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31, 2011.7.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록 또는 투약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에 소요되는 비용 및 법 제25조에 따른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 : 해당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2. 법 제20조, 법 제22조제2항·제3항 및 법 제23조제1항·제3항에 따른 살처분의 실시나 가축의 사체 또는 오염물의 소각·매몰 및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p> <p>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는 비용은 구제역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신설 2011.7.22></p> <p>제14조(수수료) ①축산관련단체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동가축방역의 실시에 대하여 소유자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7.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주사·약물목록 또는 투약 등에 소요되는 주사기 및 약품 등의 재료구입비 2. 검사·주사·약물목록 또는 투약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p>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활한 공동가축방역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최고 한도액을 정하는 등 수수료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3.3.23></p>

가축전염병예방법 [법률 제12048호, 2013.8.13., 일부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p>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축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3.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 	<p>제8조(사체의 재활용 등)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사체를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료제조시설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열처리 시설 또는 발효처리 시설에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 또는 발효처리하여 동물(소·양 등 반추류 가축은 제외한다)의 사료, 비료의 원료 또는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만 해당된다. 다만,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2,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브루셀라병 2. 돼지오제스키병 3. 결핵병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p>[전문개정 2008.1.31]</p> <p>제12조(생계안정비용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우역·우폐역·구제역·돼지열병·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p>	<p>제23조(살처분명령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2008.3.3, 2009.8.21, 2010.12.30,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종가축전염병 : 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2. 제2종가축전염병 : 브루셀라병·결핵병·돼지오제스키병·돼지인플루엔자·광견병·사슴만성소모성질병·스크라피(양해면상뇌증)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 또는 제2종가축전염병 <p>② 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5></p> <p>③ 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당해 가축을 사살·전살(電殺)·타격·약물사용 등의 방법으로 즉시 살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병성감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과 격리장소를 정하여 살처분의 연기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8.2.5></p>

가축전염병예방법 [법률 제12048호, 2013.8.13., 일부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p>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아니한 개, 고양이 등이 건물 밖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p>	<p>2005.6.30, 2008.1.31, 2009.9.3></p> <p>1. 가축의 소유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p> <p>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가축을 발견하고도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p> <p>3.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p> <p>4. 해당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법 제19조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p> <p>② 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가계비의 6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고, 살처분 가축의 종류별·두수별 지원액 그 밖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6.30, 2007.10.23, 2008.1.31, 2008.2.29, 2013.3.23></p> <p>③ 생계안정비용은 해당 비용의 10분의 7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개정 2009.9.3></p>	<p>1. 브루셀라병에 걸린 가축 : 70일</p> <p>2. 결핵병에 걸린 소: 70일</p> <p>3. 그 밖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7일</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광견병 예방주사를 받지 아니한 개·고양이에 대하여 억류·살처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해당 조치의 1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지역 3. 기간 4. 방법 5. 그 밖에 억류·살처분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개·고양이를 억류한 때에는 억류의 일시와 장소, 품종, 외모, 억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5></p> <p>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공고한 후 억류기간이 경과하여도 개·고양이의 소유자등으로부터 반환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를 직접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8.2.5></p>

[별표 1] <개정 2013.3.23>

보상금의 지급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보상금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주사·약물복용 또는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죽은 가축과 사산 또는 유산된 가축의 태아의 경우: 검사 등의 실시 당시의 해당 가축 및 가축의 태아의 평가액의 100분의 80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주사·약물복용 또는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부상당한 가축: 부상당한 가축의 진료비 또는 부상당한 가축과 정상적인 가축의 출하가격의 차액(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도축장에 출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살처분 당시의 살처분한 가축평가액(이하 “가축평가액”이라 한다)의 전액. 다만, 병성감정 결과 브루셀라병(소에만 해당한다)·돼지열병·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감염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결핵병(사슴에만 해당한다) 감염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또는 나타나기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

가) 해당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복용·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

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 협조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

라)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따른 가축의 격리·역류 또는 이동제한과 가축의 소유자등, 그 동거 가족 및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한 이동제한 또는 소독

마)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소만 해당한다)

2)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

가) 해당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록·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

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 협조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

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격리·역류 및 이동제한과 가축의 소유자등, 그 동거 가축 및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한 이동제한 또는 소독

마)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소만 해당한다)

라.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목 보상금 상당액에서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 금액

1)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의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거나, 다목 1)의 조치 중 4개[소는 다목 1)의 바)를 포함한 5개]의 조치를 이행한 경우

2)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과 관련하여 다목 2)의 조치 중 4개[소는 다목 2)의 바)를 포함한 5개]의 조치를 이행한 경우

마.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목 보상금 상당액에서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 금액

1)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 지난 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거나, 다목 1)의 조치 중 3개[소는 다목 1)의 바)를 포함한 4개]의 조치를 이행한 경우

2)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과 관련하여 다목 2)의 조치 중 3개[소는 다목 2)의 바)를 포함한 4개]의 조치를 이행한 경우

바.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중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목 보상금 상당액에서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 금액

- 1)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가축방역관이 해당 가축의 가축전염병 발생사실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였거나, 다목 1)의 조치 중 2개[소는 다목 1)의 바)를 포함한 3개 이하]의 조치만을 이행하거나 모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과 관련하여 다목 2)의 조치 중 2개[소는 다목 2)의 바)를 포함한 3개 이하]의 조치만을 이행하거나 모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 법 제21조(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의 권고를 받은 가축의 소유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도태의 권고대상 가축이 해당 가축전염병에 걸리게 되어 살처분한 경우

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와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이 공개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이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라 한다)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고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 항구나 공항에서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그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사육시설 안에 있는 물건 중 법 제23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의 경우: 병성감정 결과 감염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소각 또는 매몰한 당시의 해당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40, 병성감정 결과 감염축이 발견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소각 또는 매몰한 당시의 해당 물건평가액의 전액

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집유장·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축산물보관장 및 축산물판매업소와 「축산법」에 따른 계란집하장 및 부화장 등에 있는 가축의 생산물 중 법 제23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의 경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만 해당한다): 소각 또는 매몰한 당시의 해당 물건평가액의 전액

차.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이 격리·역류되는 기간동안 생산된 가축의 생산물을 법 제23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경우: 소각 또는 매몰한 당시의 해당 생산물의 평가액의 전액

카.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자. 다만,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1) 수의사인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나목 전문계약직공무원의 마급 상한액을 기준으로 이동제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한 금액.

2) 그 밖의 축산 관계 종사자인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나목 전문계약직공무원의 마급 상한액을 기준으로 이동제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한 금액

타.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된 도축장(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도축장과 법 제48조제1항제5호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위반한 도축장은 제외한다): 도축장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일수 × (최근 1년간 1일 평균도축두수 -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기간 중 1일 평균도축두수) × 해당 도축장의 최근 1년 평균 두당 도축수수료 × 70%(도축장운영경비 중 고정비용 비율)

2. 보상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사체를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제1호에 따른 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록5

소 및 쇠고기 이력에 관한 법령 (등록 및 처분사항)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장 총칙		
<p>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력관리"란 소의 출생·수입 및 쇠고기의 생산(수입 쇠고기인 경우에는 수입을 말한다)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소와 쇠고기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체식별번호"란 소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3.~9. (생략) 10. "귀표"란 이력관리를 위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인식을 포함한다)로 기재하여 귀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를 말한다. 11. "수입유통식별표"란 수입 쇠고기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수입유통식별번호 및 수입 쇠고기 관련 정보를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인식을 포함한다)로 기재하여 수입 쇠고기의 포장박스 등 포장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를 말한다. 12. "개체식별쇠고기"란 소의 개체식별대장(이하 "개체식별대장"이라 한다)에 기록되어 있는 소를 도살 처리하여 얻은 쇠고기 		<p>제2조(부산물물의 범위)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3></p> <p>제3조(위해쇠고기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쇠고기"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쇠고기를 말한다. <개정 2013.3.23></p>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지육(枝肉)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13.~15. (생략)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축산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소 및 쇠고기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소 및 개체식별쇠고기의 이력관리		
제4조(출생 등의 신고) ① 소의 소유자들은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해당 소를 수입·수출, 양도·양수(도축을 위한 출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도축업자가 소를 도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쇠고기를 포장 처리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절차, 기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조(쇠고기의 포장 처리 신고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작업장 시설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결(連接)한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2.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평균(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연간 기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신규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규	제4조(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① 소의 소유자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출생·폐사, 수입·수출 또는 양도·양수한 소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의 출생 등 신고서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출생 등 신고를 받은 위탁기관의 장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개체식별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제6조(포장 처리 신고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지정) ①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모나 사업계획 물량 등을 고려한 연간 예상 평균으로 산정한다)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 3. 그 밖에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신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1. 영업 허가증 사본 2. 인력·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의 전산처리능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통지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한 때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그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제7조(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의 도축처리 결과 등 신고) ① 도축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축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귀표의 부착,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및 개체식별대장의 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축처리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포장 처리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p>제5조(귀표의 부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출생 및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해당 소의 양쪽 귀에 그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귀 없는 기형 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목줄을 이용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소의 소유자등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가 없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동일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귀표의 규격과 부착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제9조(귀표의 부착기한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기한 전에 소가 사육지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 이동 전에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생 신고된 소: 출생 신고 후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 이내 2. 수입 신고된 소: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p>② 출생 신고된 소의 소유자등은 고령(高齡) 등 귀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귀표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 제주도 본도를 제외한 도서지역은 90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p> <p>제10조(목줄을 이용한 귀표의 부착)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귀 없는 기형 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가 태어날 때부터 귀가 없는 경우 2. 소의 귀 질환이나 외상 등으로 인하여 귀표의 부착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귀표의 부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제11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귀표의 규격과 부착방법 및</p>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에 따른다.
		제5조(출생 등 신고의 기한) 제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 의 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제 1호·제3호의 경우 기한 전에 해 당 소가 사육지에서 이동하는 경우 에는 그 이동 전에 하여야 한다. 1. 출생·폐사 신고: 출생·폐사한 날부터 5일 이내 2. 수입·수출 신고: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3. 양도·양수 신고: 양도·양수한 날부터 5일 이내
제6조(귀표의 위조·변조 및 훼손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제5조에 따라 소의 귀에 부착된 귀표를 위조·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개체 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가 부착되 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개체 식별이 곤란한 소에 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양수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3조(귀표 부착 등의 예외)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	
제7조(개체식별대장의 작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 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한 경 우에는 소 한 마리마다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개체식별대장에 기록하 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개체식별번호 2. 출생 또는 수입연월일 3. 암수 구분 4. 수입된 소는 원산지(국가명), 수출국, 수출한 자의 성명(법인 의 경우에는 명칭) 및 수입한 자	제4조(개체식별대장의 기록사 항 보존기간) 법 제7조제4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12조(개체식별대장의 작성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 정 2013.3.23> 1. 소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 및 수입소로 구분한다) 2. 부모(父母) 소의 개체식별번호 3. 양도·양수 및 폐사 내역 4.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이 도축업자 로부터 도축검사 신청을 받고 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성명) 5. 소의 사육을 위한 시설의 소재지 및 해당 사육시설에서의 사육개시일자 6. 소의 소유자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성명) 7. 그 밖에 축산정책상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대장은 그 전부를 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처리방식(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필요한 사항을 확실하게 기록하여 둘 수 있는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출생 등의 신고에 기초하여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을 소의 도축일, 가공일, 폐사일 또는 수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그 밖에 개체식별대장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인한 해당 소의 도축검사 결과 합격 여부 5. 「축산법」 제37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가 확인한 해당 도체의 등급판정 결과 6.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7. 위해쇠고기 해당 여부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의 종류 중 한우에 해당하는지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한 기준에 따른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의 소유자등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게 신고한 경우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개체식별대장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조(변경신고) 소의 소유자등은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개체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소의 소유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관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변경신고 사유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개체식별대장의 기록 누락이나 오류의 수정을 요구하려는 소의 소유자등은 기록 누락이나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8조(도축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신고기한)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1. 도축업자: 도축검사가 완료된 날. 다만, 전산처리능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축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3일 이내로 한다. 2. 식육포장처리업자: 쇠고기를 포장 처리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제9조(개체식별대장 기록 누락 시의 조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으면 소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이나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소의 소유자등은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3조(개체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소의 소유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관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변경신고 사유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개체식별대장의 기록 누락이나 오류의 수정을 요구하려는 소의 소유자등은 기록 누락이나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해당 사항을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p>제10조(도축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도축업자는 도축한 소에서 얻은 개체식별쇠고기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도축업자는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및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하거나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축하여서는 아니 되며,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에 대한 도축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의 검사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을 확인하고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을 수정하여야 한다.</p> <p>제14조(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 등의 처리) 법 제1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가 떨어지거나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되어 개체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제15조(도축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축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5에 따른다.</p>
<p>제11조(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의 경우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하나의 개체식별쇠고기에 대하여 하나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p>		<p>제16조(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등은 별표 6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묶음번호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7에 따른다. <p>제17조(개체식별쇠고기의 거래명세서 등 교부 대상자) 법 제11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p>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묶음번호(다수의 개체식별번호이거나 개체식별번호 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가 개체식별쇠고기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축산법」 제40조에 따른 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식육포장처리업자 2. 식육판매업자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4.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5. 개체식별번호를 요구하는 구매자
제6장 벌칙		
제32조(벌칙) ①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귀표를 위조·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거짓으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신청한 자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 유통식별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유통식별표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6.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 유통식별표를 위조·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7.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 신고 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 8.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소를 양도·양수 또는 수출한 자 4.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 식별이 곤란하거나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를 도축한 자 5.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6.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체 식별번호를 명시한 거래명세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7.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 유통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8.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 유통식별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 식별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9.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 유통식별표가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식별이 곤란하거나 수입유통 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 쇠고기를 양도·양수 또는 수출한 자 10.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 신고 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하지 아니한 자 11.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1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3.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 유통식별번호를 명시한 거래명세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14.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15.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증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p>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p> <p>16. 제25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규정에 정한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p>		

부록6

가축재해보험 약관(보통/특별)

보 통 약 관

- ◆ 일반조항
- ◆ (부문1) 소(牛)
- ◆ (부문2) 돼지(豚)
- ◆ (부문3) 가금(家禽)
- ◆ (부문4) 말(馬)
- ◆ (부문5) 종모우(種牡牛)
- ◆ (부문6) 기타 가축(家畜)
- ◆ (추가)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추가약관

특 별 약 관

(일반조항)

- ◆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 ◆ 공동인수 특별약관
- ◆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 ◆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 ◆ 축사(畜舍) 특별약관
- ◆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부문별 조항)

- ◆ 소(牛)도체결함보장 특별약관
- ◆ 돼지 질병위험보장 특별약관
- ◆ 돼지 축산휴지위험보장 특별약관
- ◆ 전기적장치위험보장 특별약관
- ◆ 폭염재해보장 추가특별약관
- ◆ 씨수말 번식컷해 선천성 불임 확장보장 특별약관
- ◆ 말(馬) 운송위험 확장보장 특별약관
- ◆ 말(馬) 운송위험 확장보장 특별약관
- ◆ 경주마 부적격 특별약관
- ◆ 경주마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특별약관
- ◆ 사망·긴급도축 확장보장 특별약관

가축재해보험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계약자부담 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리는 것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송부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신한 때에 당해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2.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3.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드리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계약자부담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 (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계약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재정지원) 또는 제10조(보험모집)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문1(소), 부문4(말), 부문5(종모우) 및 부문6(기타가축) 사망·긴급도축 확장보장 특별약관의 긴급도축과 화재·풍수재에 의한 직접손해 이외의 질병 등에 의한 사망보장과 돼지 질병위험보장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날의 다음월 응당일(다음월 응당일이 없는 경우는 다음월 마지막날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하며,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가 보험목적에 추가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다만, 회사가 정하는 기간내에 1년 이상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계약의 해지), 제18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⑥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⑦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4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5조 (청약의 철회)

- ① 가계성 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계약자부담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1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

-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그 기간의 말일(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최초의 평일)에 끝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1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1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제16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6조(계약의 해지)가 적용됩니다.

제9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6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경과하여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보험목적의 수용장소와 사용)

- ① 보험목적은 보험기간동안 언제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지역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재해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험목적의 수용장소를 변경한 경우와 회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보험 목적을 양도 또는 매각하기 위해 보험목적의 수용장소가 변경된 이후 다시 본래의 사육장소로 되돌아온 경우에는 가족이 수용장소에 도착한 때 원상복귀 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보험목적은 보험기간동안 언제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보험 목적의 관리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목적을 사육, 관리, 보호함에 있어서 그 보험목적 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목적에 대하여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운동, 휴식, 수면 등이 보장되도록 적절한 사육관리를 할 것
 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목적에 대하여 예방접종, 정기검진, 기생충 구제 등을 실시할 것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목적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신속하게 치료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용어정의

랜더링(rendering) : 사체를 고온·고압 처리하여 기름과 고형분으로 분리함으로써 유지(사료·공업용) 및 육분·육골분(사료·비료용)을 생산하는 공정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조치를 요구하거나 또는 계약자를 대신하여 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이 입은 손해를 이 약관의 일반조항 및 각 부문별 제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1. 잔존물처리비용 : 보험목적물이 사망한 경우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견인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 및 랜더링 처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2.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11조(보험 목적의 관리의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제외합니다.
 - 3.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4.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30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 5.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③ 위 제2항의 잔존물 처리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④ 위 제2항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또한 제5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제1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

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도살 및 위탁도살에 의한 가축사망으로 인한 손해
3. 가축전염예방법 제2조(정의)에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한 손해 및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살처분 또는 도태권고로 발생한 손해
4. 보험목적이 유실 또는 매몰되어 보험목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손해. 다만, 풍수해 사고로 인한 직접손해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② 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이 약관의 각 부문별 제 규정을 따릅니다.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용어풀이>

계약전 알릴의무는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에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3.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 수용장소로부터 반경 10km이내 지역에서 가축전염병발생(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질환 포함) 또는 원인 모를 질병으로 집단폐사가 이루어진 경우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6.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7.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8. 보험의 목적이 도난 또는 행방불명되었을 경우
 9. 보험의 목적이 의외의 재난이나 위험에 의해 구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10. 보험의 목적의 수가 증가되거나 감소되었을 때
 11.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제1항 각호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행하는 보험목적의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회피,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

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1조(보험 목적의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 (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9조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초일(첫째날)부터 1년간, 차년도(둘째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초일(첫째날)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계약자부담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계약자부담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계약자부담 보험료에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계약자부담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계약자부담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0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22조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이 약관의 각 부문별 제 규정에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제23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이 약관 각 부문별 제 규정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와 같이 비례보상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

- ② 동일한 계약의 보험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보험계약 및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이 약관 각 부문별 제 규정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여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험가입금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24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가축 긴급도축 사고시 : 진단서, 도축장발행정산서(또는 매매증명서), 기립불능확인서, 기타 증거사진
4. 가축 질병사망 사고시 : 검안서, 소각(매장)증명서, 기타 증거사진
5. 가축 화재 사고시 : 화재증명서(소방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6. 기타 행정기관 확인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② 제1항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급적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5조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19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에 의하여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27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용어풀이>

소멸시효는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30조 (잔존물)

회사가 제12조(보상하는 손해)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31조 (보험목적물의 사망 처리)

- ① 보험목적물을 소각 또는 매몰하여야 할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 ② 잔존물을 처리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제12조(보상하는 손해)의 “잔존물처리 비용”을 따릅니다.
- ③ 사망한 보험목적물을 사료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지정장소에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가축방역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32조 (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

용),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체결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34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37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8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9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19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0조 (예금보험기법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1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부문1 : 소(牛)

제1조 (보험목적의 범위)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계약에서 정한 소(牛)의 수용장소(소재지)에서 사육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牛)는 모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귀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1. 한우, 육우. 다만, 생후 만 2개월 이상 만 13세 미만
 2. 젖소. 다만, 생후 만 2개월 이상 만 8세 미만
- ② 젖소 수컷은 육우로, 젖소 불임우(프리마틴 등)는 암컷으로, 거세우는 수컷으로 분류합니다.
- ③ 회사는 소(牛)가 제1항에서 정한 보험목적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계약(보험계약 및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있거나, 과거병력, 발육부진 또는 발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목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의거 제외된 가축 및 보험기간 중 가축증가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가축에 대하여는 보험목적에서 제외합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망
 2. 긴급도축
 3. 도난, 행방불명. 다만 도난손해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관장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불법침입자,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손해(가축의 상해, 사망을 포함합니다. 이하 『도난손해』라 합니다)에 한합니다.
- ② 회사가 인정하는 제1항 제1호의 사망은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에 의하여 수의학적으로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맥박, 호흡, 그외 일반증상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한 때로 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의 긴급도축의 범위는 “사육하는 장소에서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및 젖소의 유량감소가 발생한 소(牛)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 범위는 경추골절, 사지골절 및 탈구(탈골)에 한하며, 젖소의 유량감소는 유방염, 불임 및 각종 대사성질병으로 인하여 수의학적으로 유량감소가 예견되어 젖소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⑤ 제1항 제3호의 사고발생시 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가족, 감수인(監守人) 또는 당직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경찰서와 회사에 알려야 하며, 보험금 청구시 관할경찰서의 도난신고(접수)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일반조항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사료공급 및 보호, 피난처제공, 수의사의 검진, 소독 등 사고의 예방 및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당연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가축의 번식장애, 경제능력저하 또는 전신 쇠약, 성장지체·저하에 의해 도태시키는 경우. 다만,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4항의 원인으로 인한 유량감소에 따른 도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3. 개체표시인 귀표가 오손, 훼손, 멸실되는 등 목적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 4. 외과적 치료행위로 인한 사망 손해. 다만, 보험목적의 생명유지를 위하여 질병, 질환 및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자격 있는 수의사가 확인하고 치료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5. 독극물의 투약에 의한 사망 손해
 - 6. 정부, 공공기관,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술 또는 연구용으로 공여하여 발생한 손해. 다만, 회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7. 이 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사고로 회사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긴급 출하지시를 통보(구두, 유선 및 문서 등)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육 또는 치료하다 발생한 손해 및 자격 있는 수의사가 도살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이를 방지하여 발생한 손해
- ② 회사는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손해
 - 2.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피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監守人) 또는 당직

- 자가 일으킨 행위 또는 이들이 가담하거나 이들의 묵인하에 생긴 도난손해
3. 지진, 분화, 풍수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손해
 4. 화재, 폭발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손해
 5. 절도, 강도행위로 발생한 화재 및 폭발손해
 6. 보관장소 또는 작업장내에서 일어난 줌도둑으로 인한 손해
 7. 채고조사시 발견된 손해
 8. 망실 또는 분실 손해
 9.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10. 도난손해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
 11. 보관장소를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12. 보험의 목적이 보관장소를 벗어나 보관되는 동안에 생긴 도난 손해

용어풀이

1. 도난행위

도난행위라 함은 완력이나 기타 물리력을 사용하여 보험의 목적을 훔치거나 강탈하거나 무단으로 장소를 이동시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외부로부터 침입시에는 침입한 흔적 또는 도구, 폭발물, 완력, 기타의 물리력을 사용한 흔적이 뚜렷하여야 합니다.

2.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민법 제 779조 및 제77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의 업무종사자와 법정 대리인의 가족, 친족도 포함합니다.)

3. 망실, 분실

망실(忘失)이라 함은 보관하는 자 또는 관리하는 자가 보험의 목적을 보관 또는 관리하던 장소 및 시간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지 못하여 보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며, 분실(紛失)이라 함은 보관하는 자 또는 관리하는 자가 보관·관리에 일상적인 주의를 태만히 하여 보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계약 후 알릴의무)

일반조항 제15조(계약 후 알릴의무) 제1항에 추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개체표시가 떨어지거나 오손, 훼손, 멸실되어 새로운 개체표시를 부착하는 경우
2. 거세, 제각, 단미 등 외과적 수술을 할 경우
3. 품평회, 경진회, 박람회, 소싸움대회, 소등타기대회 등에 출전할 경우

제5조 (계약의 해지)

회사는 이 약관 제1조(보험목적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를 보험에 가입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일반조항 제16조(계약의 해지) 제3항에 추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계약의 무효)

회사는 일반조항 제18조(계약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보험목적물의 일부가 무효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만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손해액의 조사결정)

- ①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에 회사가 정하는 [별표 1]의 “소(牛)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가액 결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으로 합니다. 다만, 고기, 가죽 등 이용물 처분액 및 보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이용물 처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이용물 처분액 = Min[도축장발행 정산자료의 지육금액, (중량×지육가격)]×75%
 - 가. 중량은 도축장발행 사고소의 도체(지육)중량(원/kg)
 - 나. 지육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고시하는 사고일 기준 사고소의 등급에 해당하는 전국평균가격(원/kg)
- ③ 이용물 처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8조 (자기부담금)

회사는 일반조항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합니다.

제9조 (도난물 발견후의 처분)

- ①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이 발견된 때에는 아래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사가 손해를 보상하기 전에 보험의 목적이 발견, 회수된 때에는 그 회수물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2.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후에 보험의 목적이 발견, 회수된 때에는 그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를 타당한 값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이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상한 금액과 회수 또는 매각에 소요된 필요비용을 합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피보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손해보상 후 1년 이내에 보험의 목적이 발견, 회수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금을 회사에 돌려주고 그 목적의 소유권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 ② 위 제1항제2호의 단서의 경우 보험의 목적에 생긴 훼손, 망가짐 또는 파손 손해 및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의 회수에 쓰인 필요비용(이하 “필요비용”이라 합니다)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일반조항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일반조항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지급보험금에 위 제2항의 필요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 하더라도 이를 지급합니다.

[별표 1]

소(牛)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가액 결정

1. 한우(암컷, 수컷(거세우 포함) 공통)

사망 시점의 연령(월령)을 구합니다(출생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를 滿으로 계산하며 월미만 일수는 무시합니다).

1. 연령(월령)이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인 경우

- 보험가액 = 전전월 전국산지평균 송아지 가격

2. 연령(월령)이 7개월 이상인 경우

- 보험가액 = ①(체중) × ②(Kg당 금액)

① 체중은 [별표 3] 『발육표준표』에서 정한 사고소(牛)의 연령(월령)에 해당되는 체중을 적용합니다.

② kg당 금액은 [별표 2] 『산지가격 적용범위표』에서 사고소(牛)의 축종별, 성별, 월령에 해당되는 사고 전전월 전국산지평균가격을 그 체중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③ 한우수컷 월령이 25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655Kg으로, 한우 암컷 월령이 4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470Kg으로 인정합니다.

④ 월령별 가액이 위 1.의 송아지 가격보다 낮은 경우 위 1.의 송아지 가격을 적용합니다.

2. 젖소(암컷)

1. 사망 시점의 연령(월령)을 구합니다(출생일로부터 사고발생 일까지를 滿으로 계산하며 월미만 일수는 무시합니다).

2. 위 1.의 월령을 구한 다음 아래에 해당되는 단계에 따라 사고 전전월 전국산지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구합니다.

① 월령 2개월 ~ 7개월까지 : 분유떼기 암컷 가격

② 월령 8개월 ~ 12개월까지 :

$$\text{분유떼기 암컷가액} + \frac{\text{수정단계가격} - \text{분유떼기 암컷가액}}{6} \times (\text{사고월령} - 7\text{개월})$$

③ 월령 13개월 ~ 18개월까지 : 수정단계가격

④ 월령 19개월 ~ 23개월까지 :

$$\text{수정단계가격} + \frac{\text{초산우가격} - \text{수정단계가격}}{6} \times (\text{사고월령} - 18\text{개월})$$

⑤ 월령 24개월 ~ 31개월까지 : 초산우가격

⑥ 월령 32개월 ~ 39개월까지 :

$$\text{초산우가격} + \frac{\text{다산우가격} - \text{초산우가격}}{9} \times (\text{사고월령} - 31\text{개월})$$

⑦ 월령 40개월 ~ 55개월까지 : 다산우가격

⑧ 월령 56개월 ~ 66개월까지 :

$$\text{다산우가격} + \frac{\text{노산우가격} - \text{다산우가격}}{12} \times (\text{사고월령} - 55\text{개월})$$

⑨ 월령 67개월 이상 : 노산우가격

3. 육우

사망 시점의 연령(월령)을 구합니다(출생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를 滿으로 계산하며 월미만 일수는 무시합니다).

1. 연령(월령)이 2개월인 경우

- 보험가액 = 전전월 전국산지평균 분유떼기 젓소 수컷 가격

2. 연령(월령)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보험가액 = ①(체중) × ②(Kg당 금액)

① 체중은 [별표 3] 『발육표준표』에서 정한 사고소(牛)의 연령(월령)에 해당되는 체중을 적용합니다.

② kg당 금액은 [별표 2] 『산지가격 적용범위표』에서 사고소(牛)의 축종별, 성별, 월령에 해당되는 사고 전전월 전국산지평균가격을 그 체중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단, 전국산지평균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월 전국도매시장 지육평균가격에 지육율 58%를 곱한 가액을 kg당 금액으로 합니다.

③ 육우 월령이 25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600Kg으로 인정합니다.

④ 월령별 가액이 위 1.의 분유떼기 젓소 수컷 가격보다 낮은 경우 위 1.의 분유떼기 젓소 수컷 가격을 적용합니다.

[별표 2]

산지가격 적용범위표

구 분		수 컷	암 컷
한우	성별 350kg 해당 전국 산지평균가격 및 성별 600kg 해당 전국 산지평균가격 중 kg당 가격이 높은 금액	생후 7개월 이상	생후 7개월 이상
육우	젖소 수컷 500kg 해당 전국 산지평균가격	생후 3개월 이상	생후 3개월 이상

[별표 3]

발육표준표

한우 수컷 (거세우 포함)		한우 암컷				육우	
월령	체중(kg)	월령	체중(kg)	월령	체중(kg)	월령	체중(kg)
2	-	2	-	26	385	2	-
3	-	3	-	27	390	3	210
4	-	4	-	28	400	4	220
5	-	5	-	29	410	5	230
6	-	6	-	30	420	6	240
7	230	7	230	31	425	7	250
8	240	8	240	32	430	8	270
9	250	9	250	33	435	9	290
10	260	10	260	34	440	10	310
11	295	11	270	35	445	11	330
12	325	12	280	36	450	12	350
13	360	13	290	37	455	13	370
14	390	14	300	38	460	14	390
15	420	15	305	39	465	15	410
16	450	16	310	40	470	16	430
17	480	17	315			17	450
18	505	18	320			18	470
19	530	19	325			19	490
20	555	20	330			20	500
21	580	21	340			21	520
22	600	22	350			22	540
23	620	23	360			23	560
24	640	24	370			24	580
25	655	25	380			25	600

부문2 : 돼지(豚)

제1조 (보험목적의 범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계약에서 정한 돼지의 수용장소(소재지)에서 사육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돼지는 모두 보험의 목적으로 합니다.

1. 종모돈(種牡豚)
2. 종빈돈(種牝豚)
3. 비육돈(肥育豚)
4. 육성돈(후보돈 포함)
5. 자돈(仔豚)
6. 기타 돼지

제2조 (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및 **설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등의 **풍재** 또는 **수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목적이 사망 또는 맥박, 호흡 그외 일반증상이 수의학적으로 사망이 확실시 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방재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손해는 사고발생 때부터 120시간(5일) 이내에 폐사되는 보험목적(돼지)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일반조항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댐 또는 제방 등의 붕괴로 생긴 손해. 다만, 붕괴가 이 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위험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 움으로써 생긴 손해. 다만,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이 설해, 풍재,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추위, 서리, 얼음으로 생긴 손해
4.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장치 또는 설비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이 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긴급피난 시 피난처에서 사료공급, 보호, 환기, 수의사의 검진, 소독 등 사고의 예방 및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당연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6. 모돈의 유산으로 인한 태아사망 또는 성장저하로 인한 직·간접 손해
7. 보험목적이 도난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제4조 (손해액의 조사결정)

- ①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에 회사가 정하는 [별표 4]의 “돼지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가액 결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으로 합니다. 다만, 고기, 가죽 등 이용물 처분액 및 보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제1항의 이용물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회사의 입회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피보험자가 회사의 입회 없이 이용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에는 회사가 인정 평가하여 손해액을 차감합니다.
- ③ 제1항의 보험가액 산정 시 보험목적물이 임신상태인 경우 임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합니다.
- ④ 이용물 처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5조 (자기부담금)

회사는 일반조항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5%를 자기부담금으로 합니다.

제6조 (잔존보험가입금액)

- ① 회사가 이 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 ②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별표 4]

돼지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가액 결정

1. 종모돈의 보험가액

종모돈은 종빈돈의 평가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2. 종빈돈의 보험가액

종빈돈의 보험가액은 회사가 정하는 전국 도매시장 비육돈 평균지육단가(박피)에 의하여 아래 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 종빈돈 보험가액 = 비육돈 지육단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종빈돈 가격

비육돈 지육단가(원/kg)	종빈돈가격(원/두당)	비육돈 지육단가(원/kg)	종빈돈 가격(원/두당)
1,949 이하	350,000	2,650 ~ 2,749	430,000
1,950 ~ 2,049	360,000	2,750 ~ 2,849	440,000
2,050 ~ 2,149	370,000	2,850 ~ 2,949	450,000
2,150 ~ 2,249	380,000	2,950 ~ 3,049	460,000
2,250 ~ 2,349	390,000	3,050 ~ 3,149	470,000
2,350 ~ 2,449	400,000	3,150 ~ 3,249	480,000
2,450 ~ 2,549	410,000	3,250 ~ 3,349	490,000
2,550 ~ 2,649	420,000	3,350 이상	500,000

3. 비육돈의 보험가액

보험가액 산출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대상범위(적용체중) : 육성돈(31kg초과 ~ 110kg 미만(출하대기 규격돈 포함)까지 10kg 단위구간의 중간 생체중량)

단위구간(kg)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100	101~110 미만
적용체중(kg)	35	45	55	65	75	85	95	105

주) 1. 단위구간은 사고돼지의 실측중량(kg/1두) 임

2. 110kg이상은 110kg으로 한다.

- ② 110kg비육돈 수취가격 = 사고당일 포함 직전 5영업일 평균돈육대표가격
(전체, 박피) × 110kg × 지급(육)율(68.8%)
- ③ 보험가액 = 자돈가격(30kg기준) + (적용체중 - 30kg) × [110kg 비
육돈 수취가격 - 자돈가격(30kg기준)] / 80
- ④ 위 ②의 돈육대표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고시하는 가격(원/kg) 적용

4. 육성돈 및 후보돈의 보험가액

비육돈의 산출방식과 같습니다.

5. 자돈의 보험가액

자돈은 포유돈(젖먹이 돼지)과 이유돈(젖을 뎀 돼지)으로 구분하여 회사와 계약
당시 협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6. 기타 돼지의 보험가액

회사와 계약 당시 협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부문3 : 가금(家禽)

제1조 (보험목적의 범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계약에서 정한 가금(家禽)의 수용장소(소재지)에서 사육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금(家禽)은 모두 보험의 목적으로 합니다.

1. 닭(종계(種鷄), 육계(肉鷄), 산란계(産卵鷄) 및 그 연관 닭)
2.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가금(家禽)

제2조 (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및 **설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등의 **풍재** 또는 **수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목적이 사망 또는 맥박, 호흡 그 외 일반증상이 수의학적으로 사망이 확실시 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방재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도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손해는 사고발생 때부터 120시간(5일) 이내에 폐사되는 보험목적(가금)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일반조항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댐 또는 제방 등의 붕괴로 생긴 손해. 다만, 붕괴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위험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 움으로써 생긴 손해. 다만,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이 설해, 풍재,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추위, 서리, 얼음으로 생긴 손해
4.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장치 또는 설비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이 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긴급피난 시 피난처에서 사료공급, 보호, 환기, 수의사의 검진, 소독 등 사고의 예방 및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당연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6. 성장저하, 산란율 저하로 인한 직·간접 손해
7. 보험목적이 도난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제4조 (손해액의 조사결정)

- ①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에 회사가 정하는 [별표 5]의 “가금(家禽)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가액 결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으로 합니다. 다만, 고기, 가죽 등 이용물 처분액 및 보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제1항의 이용물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회사의 입회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피보험자가 회사의 입회 없이 이용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에는 회사가 인정 평가하여 손해액을 차감합니다.
- ③ 이용물 처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5조 (자기부담금)

회사는 일반조항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5%를 자기부담금으로 합니다.

제6조(잔존보험가입금액)

- ① 회사가 이 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 ②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별표 5]

가금(家禽)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가액 결정

1. 닭의 보험가액

□ 종계의 보험가액

구 분		해당 주령	보험가액 산정방법
육계종계	병아리	생후 1주 미만	보험사고 발생한 날이 속한 1주일의 산란계 병아리 평균가격
	성계	생후 1주 이상	회사와 계약당시 협정한 가액
산란계종계	병아리	생후 1주 미만	보험사고 발생한 날이 속한 1주일의 산란계 병아리 평균가격
	성계	생후 1주 이상	회사와 계약당시 협정한 가액

□ 산란계의 보험가액

구 분	해당 주령	보험가액 산정방법
산란계 병아리	생후 1주 이하	보험사고 발생한 날이 속한 1주일의 산란계 병아리 평균가격
	생후 2주~9주	$\text{산란계병아리가격} + \frac{10\text{주 중추가격} - \text{산란계 병아리가격}}{9} \times N$ (N : 사고주령 - 1주령)
중 추	생후 10주~15주	보험사고 발생한 날이 속한 1주일의 중추(산란계) 평균가격
	생후 16주~19주	$\text{중추가격} + \frac{20\text{주 산란계가격} - \text{중추가격}}{5} \times N$ (N : 사고주령 - 15주령)
산란계	생후 20주~70주	(550일 - 사고일령) × 70% × (사고당시 계란(대란) 1개의 1주일 평균가격 - 계란 1개의 생산비)
산란노계	생후 71주 이상	보험사고 발생한 날이 속한 1주일의 산란노계 평균가격

※ 이 약관에서 정하는 산란계의 계란 1개의 생산비는 77원으로 하며, (사고당시 계란 1개(대란)의 1주일 평균가격-계란 1개의 생산비)가 10원 이하인 경우 10원으로 합니다.

□ 육계의 보험가액

구 분	해당 주령	보험가액 산정방법
육용실용계병아리	생후 1주미만	보험사고 발생한 날이 속한 1주일의 육용실용계 병아리 평균가격
육용실용계	생후 1주이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이 속한 1주일의 원/kg 평균 가격에 사고 육계의 생체중량을 곱한 금액

2.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의 보험가액

구분	해당주령	보험가액 산정방법
새끼가금	생후 1주 미만	보험사고 발생한 날이 속한 1주일의 새끼가금 평균가격
육용가금	생후 1주 이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이 속한 1주일의 원/kg 평균가격에 사고 육용가금의 생체중량을 곱한 금액

3. 기타 가금의 보험가액

회사와 계약당시 협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부문4 : 말(馬)

제1조 (보험목적의 범위)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계약에서 정한 말(馬)의 수용장소에서 사육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말(馬)을 보험의 목적으로 합니다.
1. 종마(종모마, 종빈마)
 2. 경주마(육성마 포함)
 3. 일반마
 4.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말(馬)
- ② 회사는 말(馬)이 제1항에서 정한 보험목적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계약(보험계약 및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있거나, 과거병력, 발육부진 또는 발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목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망
 2. 긴급도축
 3. 불임
- ② 회사가 인정하는 제1항 제1호의 사망은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에 의하여 수의학적으로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맥박, 호흡, 그 외 일반증상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한 때로 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의 긴급도축의 범위는 “사육하는 장소에서 부상, 난산, 산욕마비, 산통, 경주마의 실명이 발생한 말(馬)을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 범위는 경추골절, 사지골절 및 탈구(탈골)에 한합니다.
- ⑤ 제1항 제3호의 불임은 임신 가능한 암컷말(종빈마)의 생식기관의 이상과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구적인 번식장애를 말합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일반조항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사료공급 및 보호, 피난처제공, 수의사의 검진, 소독 등 사고의 예방 및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당연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가축의 번식장애, 경제능력저하 또는 전신 쇠약, 성장지체·저하에 의해 도태시키는 경우
3. 개체표시인 귀표가 오손, 훼손, 멸실되는 등 목적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4. 외과적 치료행위로 인한 사망 손해. 다만, 보험목적의 생명유지를 위하여 질병, 질환 및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자격 있는 수의사가 확인하고 치료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5. 독극물의 투약에 의한 사망 손해
6. 정부, 공공기관,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술 또는 연구용으로 공여하여 발생된 손해. 다만, 회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7. 제2조(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사고로 회사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긴급 출하지시를 통보(구두, 유선 및 문서 등)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육 또는 치료하다 발생한 손해 및 자격 있는 수의사가 도살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이를 방치하여 발생한 손해
8. 보험목적이 도난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제4조 (계약 후 알릴의무)

일반조항 제15조(계약 후 알릴의무) 제1항에 추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외과적 수술을 하여야 할 경우
2. 5일 이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큰 부상을 입을 경우
3. 거세, 단미(斷尾) 등 외과적 수술을 할 경우
4. 품평회, 경진회, 박람회 등에 출전할 경우

제5조 (계약의 무효)

회사는 일반조항 제18조(계약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보험목적물의 일부가 무효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목적물만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손해액의 조사결정)

- ①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목적의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고기, 가축 등 이용물 처분액 및 보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보험가액은 계약체결시 계약자와 협의하여 평가한 보험가액 (이하 “협정보험가액”이라 합니다)으로 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제7조 (자기부담금)

회사는 일반조항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합니다. 다만, 이 약관 제1조(보험목적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경주마(보험가입 후 경주마로 용도 변경된 경우 포함)의 경우에는 30%를 자기부담금으로 합니다.

부문5 : 종모우(種牡牛)

제1조 (보험목적의 범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계약에서 정한 소(牛)의 수용장소에서 사육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종모우(씨수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며, 보험목적은 귀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1. 한우
2. 육우
3. 젃소

제2조 (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망
 2. 긴급도축
 3. 경제적도살
- ② 회사가 인정하는 제1항 제1호의 사망은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에 의하여 수의학적으로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맥박, 호흡, 그 외 일반증상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한 때로 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의 긴급도축의 범위는 “사육하는 장소에서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 고장증이 발생한 소(牛)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 범위는 경추골절, 사지골절 및 탈구(탈골)에 한합니다.
- ⑤ 제1항 제3호의 경제적도살은 종모우가 연속 6주 동안 정상적으로 정액을 생산하지 못하고, 자격있는 수의사에 의하여 종모우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정되었을 때로 합니다. 이 경우 정액생산은 6주 동안 일주일에 2번에 걸쳐 정액을 채취한 후 이를 근거로 경제적 도살여부를 판단합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일반조항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1. 사료공급 및 보호, 피난처제공, 수의사의 검진, 소독 등 사고의 예방 및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당연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가축의 번식장애, 경제능력저하 또는 전신 쇠약, 성장지체·저하에 의해 도태시키는 경우

3. 개체표시인 귀표가 오손, 훼손, 멸실되는 등 목적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4. 외과적 치료행위로 인한 사망 손해. 다만, 보험목적의 생명유지를 위하여 질병, 질환 및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자격 있는 수의사가 확인하고 치료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5. 독극물의 투약에 의한 사망 손해
6. 정부, 공공기관,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술 또는 연구용으로 공여하여 발생한 손해. 다만, 회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7. 이 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사고로 회사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긴급 출하지시를 통보(구두, 유선 및 문서 등)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육 또는 치료하다 발생한 손해 및 자격 있는 수의사가 도살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이를 방치하여 발생한 손해
8. 보험목적이 도난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제4조 (계약 후 알릴의무)

일반조항 제15조(계약 후 알릴의무) 제1항에 추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개체표시가 떨어지거나 오손, 훼손, 멸실된 경우
2. 거세, 제각, 단미 등 외과적 수술을 할 경우
3. 품평회, 경진회, 박람회, 소싸움대회, 소등타기대회 등에 출전할 경우

제5조 (계약의 무효)

회사는 일반조항 제18조(계약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보험목적물의 일부가 무효사유에 해당 할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만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손해액의 조사결정)

- ①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목적의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고기, 가축 등 이용물 처분액 및 보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보험가액은 계약체결시 계약자와 협의하여 평가한 보험가액(이하 "협정보험가액"이라 합니다)으로 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제7조 (자기부담금)

회사는 일반조항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합니다.

부문6 : 기타 가축(家畜)

제1조 (보험목적의 범위)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계약에서 정한 가축(이하 “가축”이라 합니다)과 가축의 수용장소에서 사육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가축은 모두 보험의 목적으로 합니다.
 1. 사슴
 - 가. 꽃사슴. 다만, 생후 만 2개월 이상 만 15세 미만
 - 나. 엘크. 다만, 생후 만 2개월 이상 만 13세 미만
 - 다. 레드디어. 다만, 생후 만 2개월 이상 만 13세 미만
 - 라. 기타사슴. 다만, 생후 만 12개월 이상 만 13세 미만이며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2. 양
 - 가. 산양(염소). 다만, 생후 만 2개월 이상 만 10세 미만
 - 나. 면양. 다만, 생후 만 2개월 이상 만 10세 미만
 3. 꿀벌
 4. 토끼
 5. 오소리
 6. 기타 회사가 정하는 가축
- ② 회사는 가축이 제1항에서 정한 보험목적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계약(보험계약 및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거나, 과거병력, 발육부진 또는 발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목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의거 제외된 가축 및 보험기간 중 가축증가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가축에 대하여는 보험목적에서 제외합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및 **실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등의 **풍재** 또는 **수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목적이 사망 또는 맥박, 호흡 그외 일반증상으로 수의학적으로 구할 수 없는 상태가 확실시 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방재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도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손해는 사고발생 때부터 120시간(5일)이내에 폐사되는 보험목적(가축)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1조(보험목적의 범위) 제1항 제3호는 아래와 같은 벌통이 제1항의 사고로 손상을 입은 경우에 한해 벌통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서양종(양봉)은 꿀벌이 있는 상태의 소비(巢脾)가 3매 이상 있는 벌통
2. 동양종(토종벌, 한봉)은 봉군(蜂群)이 있는 상태의 벌통

<용어풀이>

1. 소비(巢脾)라 함은 소광(巢光, comb frame: 벌집의 나무틀)에 철선을 건너매고 벌집의 기초가 되는 소초(巢礎)를 매선기로 붙여 지은 집으로 여왕벌이 알을 낳고 일벌이 새끼들을 기르며 꿀과 화분을 저장하는 6,600개의 소방을 가지고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2. 봉군(蜂群)은 여왕벌, 일벌, 수벌을 갖춘 꿀벌의 무리를 말합니다. 우리말로 “벌무리”라고도 합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일반조항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댐 또는 제방 등의 붕괴로 생긴 손해. 다만, 붕괴가 이 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위험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 옴으로써 생긴 손해. 다만,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시설물(벌통 포함)이 설해, 풍채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추위, 서리, 얼음으로 생긴 손해
4.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장치 또는 설비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이 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긴급피난시 피난처에서 사료공급, 보호, 환기, 수의사의 검진, 소독 등 사고의 예방 및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당연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6. 벌의 경우 CCD(Colony Collapse Disorder: 벌떼폐사장애), 농약, 밀원수(蜜原樹)의 황화현상(黃化現象), 공사장의 소음, 전자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꿀벌의 손해가 없는 벌통만의 손해
7. 보험목적이 도난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제4조 (손해액의 조사결정)

- ①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목적의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고기, 가축 등 이용물 처분액 및 보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보험가액은 계약체결시 계약자와 협의하여 평가한 보험가액(이하“협정보험가액”이라 합니다)으로 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제5조 (자기부담금)

회사는 일반조항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5%를 자기부담금으로 합니다. 다만, 이 약관 제1조(보험목적의 범위)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20%를 자기부담금으로 합니다.

제6조 (잔존보험가입금액)

- ① 회사가 이 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 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 ②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일반조항 추가약관]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추가약관

제1조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

회사는 위와 관련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

회사는 상기 제1조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

상기 제1조, 제2조, 제3조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축재해보험 특별약관

[일반조항 특별약관]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제1조 (보험의 목적)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아래의 가축에 대해서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1. 종빈우(種牝牛), 종모돈(種牡豚), 종빈돈(種牝豚), 자돈(仔豚 ; 포유돈, 이유돈), 종가금(種家禽), 유량검정젖소
2.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가축

제2조 (보험가액)

보통약관의 부문1(소), 부문2(돼지) 및 부문3(가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는 계약 체결 시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협의하여 평가하고 그 금액을 보험기간 중의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제3조 (보험가입금액)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가액)의 보험가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제4조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을 때에 같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다른 계약 또는 이 특별약관이 첨부되지 않은 다른 계약(이하 “다수보험계약”(보험계약 및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라 합니다)을 맺은 경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반드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이 계약이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고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멸
 2. 다수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 ③ 위 제2항 제1호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변경에 따른 정해진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해당 부문별 제 규정을 따릅니다.

[일반조항 특별약관]

공동인수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은 아래의 보험자들을 대리하여 저희 회사가 발행하며 각 보험자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타보험자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또한 공동보험자의 도산 등의 지급불능사유 발생시에도 각 보험자는 자사가 인수한 지분만을 보상합니다.

보험(공제)자명

인수 비율

[일반조항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3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 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5조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일반조항 특별약관]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1조 (보험료의 분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이하 “분납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나누어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기간이 1년이고 연간 계약자부담보험료(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보험료는 제외합니다)가 () 이상인 계약에만 해당됩니다.

제2조 (분납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납보험료는 아래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2회 분납 제1회 : 계약의 체결일(총 보험료의 ()% 해당액)
제2회 : 계약 체결후 5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 해당액)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분납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정해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2회 분납 제1회 : 계약의 체결일(총 보험료의 ()% 해당액)
제2회 : 년 월 일(총 보험료의 ()% 해당액)
- ③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1항, 제2항의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미납입보험료의 공제)

회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될 보험금이 이미 받은 보험료보다 많을 때에는 미납입 된 보험료 전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드립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일반조항 특별약관]

축사(畜舎) 특별약관

제1조 (보험목적의 범위)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보험목적은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사육과 관련된 건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목적은 아래의 물건을 포함합니다.
 1.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게시판, 네온싸인, 간판,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3.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가스설비, 급·배수설비, 냉·난방설비, 급이기, 통풍설비, 착유기, 원유냉각기, 분만틀, 가금사의 기계류(케이지, 부화기, 분류기 등) 등 건물의 주 용도에 적합한 부대시설 및 이와 비슷한 것

제2조 (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및 풍재 또는 수재, 설해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에 따른 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3.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입은 손해
 4. 설해에 따른 손해
 5. 화재 또는 풍수재, 설해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보험기간내의 5일 동안에 생긴 제1호 내지 제4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 ② 제1항에서 보상하고 있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보험의 목적에 대한 실제의 잔존물 제거비용[“잔존물 제거비용”이라 함은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및 차에 실는 비용을 말합니다]을 이 특별약관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화재 또는 풍수재, 설해 발생시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2. 보험의 목적이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풍재 또는 수재, 설해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4.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 설해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추위, 서리, 얼음으로 생긴 손해
6.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내온사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 만에 생긴 손해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제4조(손해방지의무)

회사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21조(손해방지의무)에 추가하여 아래의 사항을 적용합니다.

1. 회사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21조(손해방지의무)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하 “손해방지비용”이라 합니다)은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하 “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의 보험목적의 가액(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 특별약관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준하여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지급보험금에 제1호의 손해방지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지급합니다.

제5조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장소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보험목적물의 경년감가율은 한국감정원의 “건축물신축단가표”를 준용하며, 이 보험목적물이 지속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져 보험목적물의 가치증대가 인정된 경우 잔가율은 보온덮개·외파이프조인 축사구조물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그 외 기타 구조물의 경우에는 최대 70%까지로 수정하여 보험가액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6개월이내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아니한 때에는 잔가율이 30%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30%로 수정하여 평가합니다.

제6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의 80\% 해당액}}$$

② 동일한 계약의 보험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보험계약 및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험가입금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③ 상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단, 화재로 인한 손해는 제외합니다)에서 정한 풍수재 및 설해로 인한 손해일 경우에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빼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 (잔존보험가입금액)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해당 부문별 제 규정을 따릅니다.

[일반조항 특별약관]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축사구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 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마. 피보험자가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화재(폭발 포함)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 (의무보험과의 관계)

-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다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4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 ② 보험기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 (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를 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6조 (손해의 발생과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 (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 호출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8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지급)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의 분담)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12조 (조사)

-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부문1(소) 특별약관]

소(牛)도체결합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동안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소(牛)가 도축장에서 도축 되어 경매시까지 발견된 도체의 결함(결함은 축산물품질평가사가 판정한 "근출혈(ㅎ), 수종(ㄸ), 근염(ㅇ), 외상(入), 근육제거(ㄱ), 기타(ㄷ)"를 말합니다)이 경락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동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제1항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7호와 부문1(소)에서 보상하는 손해
2. 도축 경매 후 발견된 결함으로 인한 손해

제3조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에 아래와 같이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손해액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소(이하 "사고소(牛)"라 합니다)의 도체등급과 같은 등급의 전국평균 경락가격[등외등급 및 결함을 제외한 도체(이하 "정상도체"라 합니다)의 가격입니다]과 사고소(牛) 도체의 경락가격으로 계산한 1두가격의 차액으로 합니다.

보험가액 = 정상도체의 해당등급(사고소(牛) 등급)의 1두가격^{주1)}
 손해액 = 정상도체의 해당등급(사고소(牛) 등급) 1두가격^{주1)} - 사고소(牛)의 1두 경락가격

1. 1두가격^{주1)} = 사고 전월 전국지육경매평균가격(원/지육kg) × 사고소(牛)의 도체중(kg) 단, kg당 전월 전국지육경매평균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제시하는 가격을 따른다.
2. 도축 후 경매를 통하지 않고 폐기처분된 소(牛)의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통약관의 부문1(소) 제7조(손해액의 조사결정)를 따릅니다.

제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제3조(손해액의 조사결정)에서 정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5조(자기부담금)의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② 동일한 계약의 보험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보험계약 및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여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5조 (자기부담금)

회사는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합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24조(보험금의 지급) 제1항에 추가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도축일시, 생체중량(kg), 경매일시, 등급(육질·육량), 결함인, 도체중량(kg), 경매가격 등이 기재된 도축장 발행의 증명서

제7조 (보험료의 환급)

이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소(牛)가 도축된 이후 이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이 특약의 보험료의 환급은 없습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부문1(소)을 따릅니다.

[부문2(돼지) 특별약관]

돼지 질병위험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의 부문2(돼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 외에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목적이 다음 각 호 질병(이하 “질병”이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폐사하거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에 질병의 발생을 서면 통지한 후 30일 이내에 보험목적이 사망할 경우를 포함합니다) 중에 보험목적이 사망 또는 맥박, 호흡 그 외 일반증상으로 수의학적으로 구할 수 없는 상태가 확실시 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전염성위장염(Transmissible gastroenteritis ; TGE virus 감염증)
2. 돼지유행성설사병(Porcine epidemic diarrhea ; PED virus 감염증)
3. 로타바이러스감염증(Rota virus 감염증)

② 이 특별약관에 따른 질병에 대한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분변,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형광항체법 또는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연쇄반응) 진단법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임상학적 진단이 증거로 인정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회사는 국가,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사법기관 등의 결정여부에 관계없이 고의적인 도살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보상합니다.

1. 회사가 보험목적의 도살에 동의한 경우
2. 보험목적이 과도하게 고통스런 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질병으로 치유가 불가능하고 상태가 극도로 나쁠 때 회사가 선정한 자격 있는 수의사가 인도적인 면에서 도살이 필연적이라는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3. 회사는 제1호, 제2호의 경우에 필요하다면 회사가 선정한 수의사에게 부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결과로 발생하는 사망은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주된 원인이 이 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2. 외과적 치료행위. 다만, 보험목적의 생명유지를 위하여 질병 및 질환의 치료가 필요하였고 자격 있는 수의사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실행한 경우는 보상합니다.
3. 약물의 투약. 단, 질병 또는 질환의 치료나 예방의 필요성을 자격 있는 수의사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투약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여기서 “약물”이란 순수한 음식물이 아닌 보조식품이나 단백질, 비타민, 호르몬, 기타 약품을 말합니다.
4. 보험목적이 도난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제3조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통약관의 부문2(폐지)의 제4조(손해액의 조사결정)에 따라 산정하며, 이 특별약관의 손해보상의 최고한도금액(보험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text{모든두수} \times 2.5 \times \text{자돈가액}$$

제4조 (자기부담금)

회사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부담금은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또는 25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부문2(폐지)를 따릅니다.

[부문2(돼지) 특별약관]

돼지 축산휴지위험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기간 동안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명기된 구내에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영위하는 축산업이 중단 또는 휴지되었을 경우에 생긴 손해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손해가 발생한 때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을 소유한 구내의 가축에 대한 보통약관의 부문2(돼지)의 유효한 보험계약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지출보장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을 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의해 발생 또는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부문2(돼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 사용, 건축, 수리 또는 철거를 규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및 이에 준하는 명령
3. 리스, 허가, 계약, 주문 또는 발주 등의 정지, 소멸, 취소
4. 보험의 목적의 복구 또는 사업의 계속에 대한 방해
5.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재산의 손해
6. 관계당국에 의해 구내 출입금지기간이 14일 초과하는 경우. 단, 14일까지는 보상합니다.

제3조 (손해액의 계산)

피보험자가 축산휴지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액은 모돈(후보돈 제외)에 대해서만 아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모돈(임신돈, 분만돈) × 10 × 1두당 비육돈(100kg 기준)평균가격 × 이익률

제4조 (이익률의 조정)

영업에 있어서 특수한 사정의 영향이 있는 때 또는 영업추세가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손해사정에 있어서 이익률에 공정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이 특별약관 제7조(용어의 정의) 제7호 및 제3조(손해액의 계산)에서 정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손해의 경감)

피보험자는 축산휴지로 인한 손해를 아래의 방법으로 경감할 수 있을 때는 이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1. 보험의 목적의 전면적인 또는 부분적인 생산활동을 재개하거나 유지하는 것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에 기재된 장소 또는 기타 장소의 다른 재산을 사용하는 것

제7조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축산휴지”라 함은 보험의 목적의 손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전부 또는 일부의 축산업 중단을 말합니다.
2. “축산휴지손해”라 함은 보상위험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결과 축산업이 전부 또는 일부 중단되어 발생한 사업이익과 보상위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사업이익의 차감금액을 말합니다.
3. “사업이익”이라 함은 1두당 평균가격에서 경영비를 뺀 잔액을 말합니다.
4. “보험가입금액”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될 수 있는 최대금액을 말합니다.
5. “1두당 평균가격”이라 함은 보통약관 부문2(돼지) [별표 4]의 “돼지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가액 결정”에서 정한 비육돈 생체중량 100kg의 가격을 말합니다.
6. “경영비”라 함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의 비육돈 평균경영비를 말합니다.
7. “이익률”이라 함은 손해발생 시에 다음의 산식에 의해 얻어진 비율을 말합니다.

$$\text{이익률} = \frac{\text{1두당 비육돈(100kg 기준)의 평균가격} - \text{경영비}}{\text{1두당 비육돈(100kg 기준)의 평균가격}}$$

단, 이 기간 중에 이익률이 16.5% 미만일 경우 이익률은 16.5%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부문2(돼지)를 따릅니다.

[부문2(돼지), 부문3(가금) 특별약관]

전기적장치 위험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통약관의 부문2(돼지) 또는 부문3(가금)의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4호에도 불구하고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장치 또는 설비 중 그 전기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또는 변조되어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 의한 손해는 사고발생 때부터 24시간(1일)이내에 폐사되는 보험목적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의해 발생 또는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부문2(돼지) 또는 부문3(가금)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 자연열화의 손해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
3. 전기적장치 고장에 따라 사고발생 때부터 24시간이 지나 나타나는 가축의 폐사, 성장저하, 유산, 산란율저하 등 모든 직·간접손해
4. 제1조(보상하는 손해)제1항의 전기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 없이 정전, 단전(斷電) 등 외부적인 원인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한 손해

제3조 (자기부담금)

회사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부담금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부문2(돼지) 또는 부문3(가금)을 따릅니다.

[부문2(돼지), 부문3(가금) 특별약관]

폭염재해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전기적장치 위험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합니다)의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호에도 불구하고 “폭염(暴炎)” 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 의한 손해는 폭염특보 발령전 24시간(1일)전부터 해제후 24시간(1일) 이내에 폐사되는 보험목적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2항의 폭염특보는 보험목적의 수용장소(소재지)에 내려진 해당 지역별 폭염 특보를 적용합니다.

<용어정의>

「폭염(暴炎)」이란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내려지는 다음의 폭염특보를 말합니다.

1. 폭염주의보 :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가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 폭염경보 :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가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의해 발생 또는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폭염으로 인하여 전기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또는 변조되어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
2. 제1조(보상하는 손해)제2항에서 정한 보상기간의 범위 밖에서 발생한 가축의 폐사, 성장저하, 유산, 산란율저하 등 모든 직·간접손해
3.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발령 중인 폭염특보로 인한 손해

제3조 (자기부담금)

회사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부담금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부문2(돼지) 또는 부문3(가금)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부문4(말) 특별약관]

씨수말 번식첫해 선천성 불임 확장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의 부문4(말)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외에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목적이 보험기간 중 불임이라고 판단이 된 경우에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의해 발생 또는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씨수말 내·외부 생식기의 감염으로 일어난 불임
2. 씨암말의 성병으로부터 일어난 불임
3. 어떠한 이유로든지 교배시키지 않아서 일어난 불임
4. 씨수말의 외상, 질병, 전염병으로부터 유래된 불임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씨수말의 불임(Infertility) 또는 불임(Infertile)”이란 아래에 기재된 의미로 제한합니다. 또한 아래 제1호 내지 제2호 중의 어떠한 원인에 의해 보험목적물인 씨수말이 씨말목장에서 번식 첫해에 60% 또는 이 이상의 수태율을 획득하는데 실패할 경우를 의미합니다.
 1. 보험목적물인 씨수말의 선천적인 교배능력 부전
 2. 정액상의 선천적인 이상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씨암말의 불임(Barren)”이란 보험기간중에 임신마가 아닌 씨암말이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임신에 실패함을 의미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교배(Bred)”란 씨암말이 발정기에 있거나 배란되기 직전에 있을 때 씨수말이 씨암말에 승가하여 삽입 및 사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기회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건이나 면책사항에 부합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목장의 관리하에서 안전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제4조 (효력개시의 조건)

- ① 이 특별약관의 발효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1. 보험가입 이전에 보험가입 씨수말과 그의 정액은 씨수말이 정상적인 번식위험을 나타내는 어떠한 검사나 시험을 받아서는 안된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씨수말이 번식에 정상이 아니라는 의심을 가져서는 안된다.

- ② 보험가입 씨수말에 교배되는 씨암말의 수는 번식기의 개시 이전에 보험자와 합의 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75두를 초과하거나 20두 미만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씨암말은 회사의 동의가 없는 한 이 특별약관과 관련되는 번식기의 개시 전 2년 동안 불임이었거나 17세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 ③ 씨수말과 교배되는 씨암말은 수태를 어렵게 하는 생식기의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생식기의 이상은 아래의 사유로 한정합니다.
1. 난치성 만성 자궁 내막염, 교배후 수정자체를 어렵게 하는 생식기의 구조적 이상
 2. 배란 장애를 유발하는 난소의 질환 등 불가항력적인 불임원인
- ④ 보험가입 씨수말의 수태율 계산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최소한 두 번의 정상적인 발정주기에 보험가입 씨수말과 교배되어야 합니다.
- ⑤ 보험가입 씨수말과 교배된 씨암말의 임신을 고의로 중지시킬 때(예 : 쌍태임신)는 즉시 회사로 통지를 하여야 하며, 만약 그 씨암말이 다시 수태가 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그 씨암말을 수태율 계산에 포함시킬 권리를 갖습니다.
- ⑥ 이 특별약관과 관련되는 번식기의 바로 직전 2년간 씨암말이 불임이었거나, 17세 이상의 씨암말이거나, 성공적으로 교배되는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어떤 비정상적인 씨암말은 씨수말의 수태율 계산에 있어 제외되어야 합니다. 단 제9항과 관련하여 임신이라고 확정될 경우에는 수태율 계산에 포함됩니다.
- ⑦ 다음의 경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로 즉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1. 보험가입 씨수말이 성공적으로 교배를 할 수 없다거나 또는 성공적으로 임신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징후가 보이는 경우
 2. 씨수말이 위치한 인접목장에 씨수말의 교배계획과 관련하여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경우
- ⑧ 제7항과 관련된 통지 후 씨수말의 불임의 원인이나 치료 또는 관리 및 번식프로그램에 대하여 회사의 수의사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측의 수의사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에는 각측의 수의사는 다시 각 1명의 수의사를 더 선정하며, 그렇게 선정된 두 명의 수의사는 세 번째의 수의사를 정하여 총5명의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이 위원회에서 다수의 의견이 최종의 판정이 된다. 이 위원회의 비용은 회사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측이 각각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 ⑨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정한 수의사는 보험가입 씨수말에 의해 교배된 씨암말의 최종교배일 45일 내에 씨암말의 수태여부를 판정하고 이 판정으로부터 씨수말의 수태율이 계산되며 이 시일 내에 그러한 검사가 없을 경우 씨암말은 수태로 간주하여 씨수말의 수태율 계산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17일령(1차)전후나 28일령(2차)전후 임신진단 때 수태로 진단이 되었으나 최종검사(45일령 이전) 때 불임이라고 판정이 될 경우 수태율 계산에 포함합니다.
- ⑩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험목적인 씨수말의 수태율이 60% 미만으로 판정될 경우에 회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자격있는 수의사를 선정하여 씨수말과 교배한 씨암말 중에서 불임씨암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 재검사시 씨암말이 임신이라고 판정되면 씨수말의 수태율과 관련되므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정한 수의사와 공동검사 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측의 수의사들로 하여금 제8항에 언급된 위원회를 구성하게하여 다수결에 의한 최종 판결을 내리게 합니다.

- ⑪ 보험기간 중 최초 번식기에 보험목적인 씨수말의 수태율이 이 특별약관의 제반 조항에 따라 계산하여 60%미만 40%이상으로 나타나 제8항에 언급된 위원회의 다수결에 의해 제2차 번식기 동안 적어도 60%의 수태율이 달성될 것이라고 결정되는 것을 전제로 이 보험계약은 최초 번식기에 적용되었던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교배장에서 보험목적인 씨수말의 수태능력을 2차년도 번식기까지 자동연장합니다. 이 조항은 그 다음의 번식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⑫ 보험목적인 씨수말의 첫 번째 번식기에 대한 다른 계약(보험계약 및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한 다른 계약이 개시되면 이 보험계약은 소멸됩니다.
- ⑬ 보험기간 중에 제2항에 언급된 최소한의 씨암말 20두를 교배시키기 이전에 씨수말이 사망한다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며 회사는 납입된(선천성 불임확장 보장)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환급합니다. 그러나 씨수말이 제2항에 언급된 최소한의 씨암말 20두 이상을 교배하고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 당시의 수태율이 60%이상이면 회사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으며, 수태율이 60% 미만일 경우 이 계약은 무효가 되며 회사는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환급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의 체결 후 교배기 이전에 씨수말이 사망할 경우와 제11항과 관련하여 2차년도까지 보험기간이 자동연장되어 2차년도 이전에 씨수말이 사망할 경우에도 이 계약은 무효가 되며 회사는 보험료를 환급합니다.
- ⑭ 회사에 사고가 통지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 및 회사의 대리인이 씨수말 및 교배기록을 검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⑮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회사는 그 씨수말에 대한 분명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회사가 잔존물인 살아있는 씨수말에 대해 분명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계약은 무효가 되며 회사의 책임은 소멸합니다. 위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자 및 피보험자 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과 관련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의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번식기의 끝까지 보험가입 씨수말과 예정된 모든 씨암말의 유효성 또는 회사에 의해 승인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회사의 동의 하에 어떤 씨암말의 대체 등
 2. 보험가입 씨수말과 씨암말, 수의사증명서의 복사본을 포함한 관련 기록 등에 대한 제9항과 관련하여 회사의 수의사 접근 등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부문4(말)를 따릅니다.

[부문4(말) 특별약관]

말(馬)운송위험 확장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5조(계약후 알릴의무) 제2항 및 제16조(계약의 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목적인 말(馬)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이하 “운송”이라 합니다) 경우에는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14조(계약전 알릴의무) 등의 이유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운송 중에 보통약관의 부문4(말)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운송 차량의 덮개(차량에 부착된 덮개를 포함합니다) 또는 화물의 포장불완전으로 생긴 손해
2.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의 적재중량과 적재용량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으로써 생긴 손해.
3. 수탁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후 14일을 초과하여 발견된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부문4(말)를 따릅니다.

[부문4(말) 특별약관]

경주마 부적격 특별약관

제1조 (보험목적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적용하는 보험목적은 말(馬)의 수용장소에서 사육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말(馬)을 보험의 목적으로 합니다.

1. 경주마
2. 경주용으로 육성하는 육성마

제2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의 부문4(말) 제2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목적인 경주마가 건염, 인대염, 골절 혹은 경주중 실명으로 인한 경주마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경주마가 경주마 부적격 판정 이후 종모마 혹은 종빈마로 용도가 변동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 (경주마 부적격 판정)

이 특별약관의 건염, 인대염, 골절 혹은 경주중 실명으로 인한 경주마 부적격 여부의 판단은 한국마사회 마필보건소의 판정 결과를 따릅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부문4(말)를 따릅니다.

[부문4(말) 특별약관]

경주마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특별약관

제1조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경주마인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3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②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가 보험목적에 추가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부문4(말)를 따릅니다.

[부문6(기타 가축) 특별약관]

사망·긴급도축 확장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때에는 보통약관의 부문6(기타 가축)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목적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망
 2. 긴급도축
- ② 회사가 인정하는 제1항 제1호의 사망은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에 의하여 수의학적으로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맥박, 호흡, 그외 일반증상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한 때로 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의 긴급도축의 범위는 “사육하는 장소에서 부상, 난산, 산욕마비로 가축을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 범위는 경추골절, 사지골절 및 탈구(탈골)에 한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1. 사료공급 및 보호, 피난처제공, 수의사의 검진, 소독 등 사고의 예방 및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당연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가축의 번식장애, 경제능력저하 또는 전신 쇠약, 성장지체·저하에 의해 도태시키는 경우
3. 개체표시인 귀표가 오손, 훼손, 멸실되는 등 목적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4. 외과적 치료행위로 인한 사망 손해. 다만, 보험목적의 생명유지를 위하여 질병, 질환 및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자격 있는 수의사가 확인하고 치료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5. 독극물의 투약에 의한 사망 손해
6. 정부, 공공기관,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술 또는 연구용으로 공여하여 발생된 손해. 다만, 회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7. 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사고로 회사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긴급 출하지시를 통보(구두, 유선 및 문서 등)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육 또는 치료하다 발생된 손해 및 자격 있는 수의사가 도살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이를 방치하여 발생한 손해

8. 보험목적의 도난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제3조 (계약 후 알릴의무)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15조(계약 후 알릴의무) 제1항에 추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개체표시가 떨어지거나 오손, 훼손, 멸실되어 새로운 개체표시를 부착하는 경우
2. 거세, 제각, 단미 등 외과적 수술을 할 경우
3. 품평회, 경진회, 박람회 등에 출전할 경우

제4조 (적용상의 특칙)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때에는 보통약관의 부문6(기타 가축)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부문6(기타 가축)을 따릅니다.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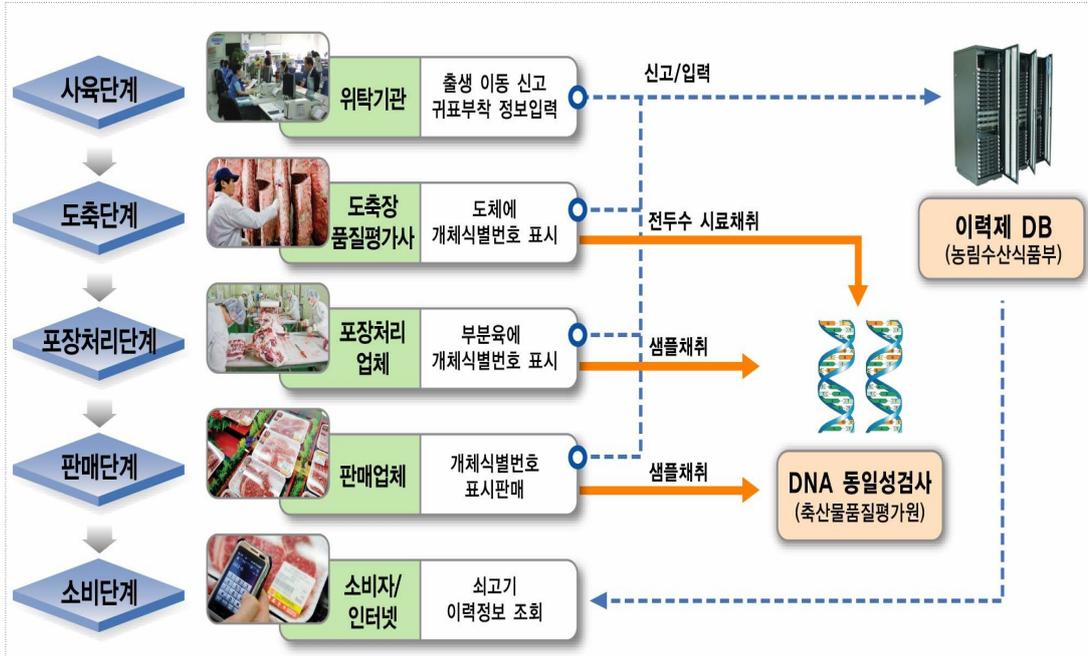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하는 가축전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종 가축전염병
<p>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팅병, 리프트 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캐슬병 및 고병원성 조류(鳥類)인 플루엔자</p>
제2종 가축전염병
<p>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傳染性動脈炎), 구역(狗疫),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p>
제3종 가축전염병
<p>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腐蛆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p>

부록7 가축 이력제 및 도축장 운영 체계도

□ 가축 이력제(牛) 운영



① 사육단계

□ 출생 등 신고 및 귀표부착

- 소의 소유자는 소가 출생하거나 거래(양도·양수·폐사·수출입 등) 한 경우 지역의 위탁기관에 5일 이내 신고('11. 6.22부터)
 - ‘소의 출생 등 신고서’를 서면, 구술 등의 방법으로 제출
 - 전국 시·군별로 지역축협, 한우협회 등 135개 위탁기관에서 업무수행
- 위탁기관은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시스템에 입력
- 신고한 농가를 위탁기관에서 방문하여 육우는 7일 이내 귀표 부착, 그러나 한우와 젃소는 종전대로 30일 이내 부착

② 도축단계

- 도축장에서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도체에 표시
 - 도축업자는 귀표 부착여부와 전산시스템에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도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도축금지
 - 귀표 미부착 및 개체식별이 곤란할 경우 검사관에게 미리 신고
 - 검사관의 위생검사 합격여부와 품질평가사에 의한 등급판정 결과 등 즉시 입력

③ 가공단계

-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해당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부분육 또는 그 포장지에 해당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
 - 포장처리실적을 처리한 날부터 5일 이내 신고하고, 판매·반출 실적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장부에 기록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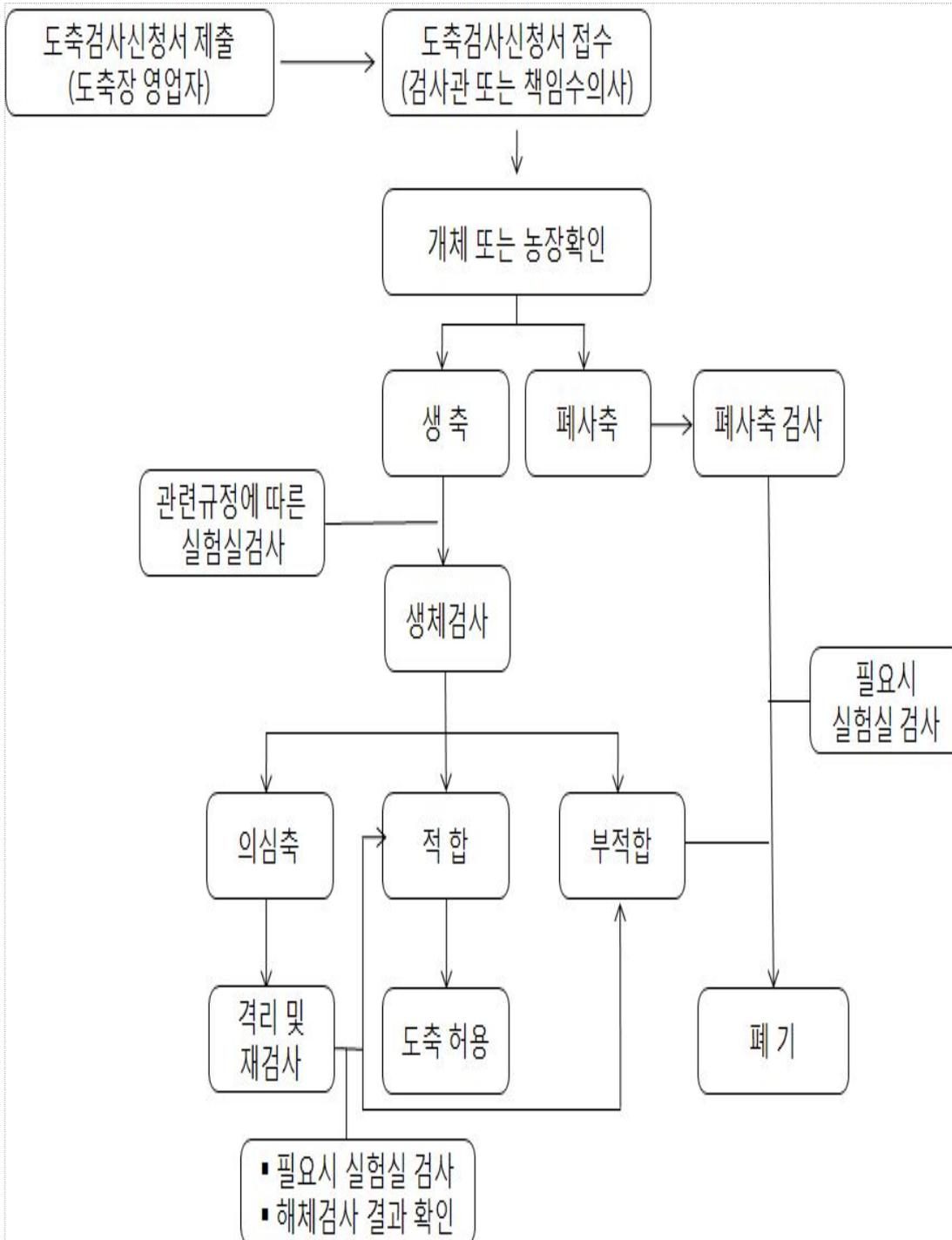
④ 판매단계

- 식육판매장에서 해당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 식육판매업자는 정육 또는 식육표시판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판매
 - 부분육 등 판매시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거래내역서 기록 보관

⑤ 소비단계

- 소비자는 휴대전화(6626+무선 인터넷키) 또는 인터넷, 스마트 폰 등을 통해 쇠고기의 이력정보 확인 가능
 - 사육자, 소의 종류, 출생일, 원산지, 등급 등 10여개 정보 공개

□ 도축장 운영 체계



부록8

2013년 시·도별 가축사육 현황(축종별)

(단위 : 천 두/수/통)

구분	소	돼지	말	닭	오리	평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	사슴	양	별	토끼	오소리
전국	3,483	10,181	30	167,743	13,287	404	12,851	19	15	1	83	48	260	1,795	189	5
서울	1	0	0	0	0	0	0	0	0	0	0	0	0	25	0	0
부산	3	7	1	43	0	0	0	0	0	0	1	0	0	11	0	0
대구	23	16	0	474	0	5	100	0	0	0	0	0	1	36	0	0
인천	25	37	0	1,343	0	0	440	0	0	0	2	1	1	9	0	0
광주	8	8	0	290	0	1	110	0	0	0	1	0	1	36	1	0
대전	6	1	0	95	0	0	0	0	0	0	0	0	1	29	0	0
울산	30	44	0	491	0	4	0	0	0	0	0	1	3	25	4	0
경기	461	1,812	4	34,824	833	95	3,064	4	5	0	6	9	11	172	60	0
강원	239	414	0	4,585	36	28	234	1	3	0	1	5	16	107	4	1
충북	243	657	0	12,256	1,805	12	2,220	0	3	0	3	4	34	176	18	0
충남	492	1,998	0	30,771	685	9	1,509	12	1	0	5	9	28	176	21	0
전북	386	1,167	1	30,108	3,339	38	1,526	1	1	1	30	3	31	170	17	1
전남	537	1,030	0	20,188	5,630	13	725	0	0	0	11	5	50	180	6	0
경북	667	1,274	1	21,168	178	65	1,758	0	0	0	4	4	42	358	52	1
경남	325	1,179	0	9,408	751	92	955	0	1	0	17	5	38	209	4	2
제주	38	538	20	1,700	30	42	100	0	1	0	0	1	1	62	2	0
세종	0	0	0	0	0	0	110	0	0	0	0	1	1	12	0	0

※ 소, 돼지, 닭, 오리는 2013년 통계청 자료 활용

※ 그 외 기타 축종은 농림축산식품부 2012년 기타가축통계자료 활용